

관리인 직무 편람



법원도서관

머 리 말

법원도서관은 도산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모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4편으로 구성된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를 발간 하였습니다.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는, 법원도서관이 2011년 10월 발간한 『감사 직무 편람』과 『관리인 직무 편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년 발간한 『개인파산관재인 업무편람』과 『회생위원 실무편람』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012년 4월 발간한 『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과 『회생위원 직무 편람』으로 구성됩니다.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들 및 감사, 관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꼭 필요한 각종 법률과 실무 관행,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경험을 정리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이번에 2011년 10월 발간된 『관리인 직무 편람』의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인 직무 편람(개정판)』은 2011년 10월 이후의 개정된 법 규정, 대법원 판결과 결정, 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방식의 변화까지 모두 반영한 것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쁜 업무 중에 개정 내용 반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들 및 관리인 여러분, 이 책이 나오기까지 세심한 실무 작업을 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1.

법원도서관장 김 찬 돈

머 리 말

올해는 이른바 ‘통합도산법’으로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법인회생사건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만큼 관리인 업무처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약 5년 전에 국내 유일의 관리인 실무지침서라 할 수 있는 『관리인 직무 편람』을 발간한 바 있지만, 그간 법인회생사건의 지속적 증가와 관리인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개정판 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의 원칙적인 모델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가 시장에서 연착륙하였고, 아울러 2014년부터 도산전자소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한편, 지난 2015. 7. 1.부터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제1회 관계인집회가 임의화되고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도입되었으며,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속행요건이 완화되는 등 절차 전반에 주목할만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완하고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관리인 불선임이나 구조조정임원 선임, 회생계획인가 이후 주주총회 개최, 회생절차 종결에 관한 관리인의 역할 등 새로운 실무운동방식에 따른 주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판이 회생절차 기업 관리인의 유용한 업무지침서로서, 법인회생절차가 기업회생을 위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자리매김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윤 준

머 리 말

법원도서관은 재판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재판자료
집 등으로 발간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는 감사 직무 편람, 개인파
산관재인 직무 편람, 관리인 직무 편람, 회생위원 직무 편람의 총 4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 및 감사, 파산
관재인, 관리위원, 회생위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꼭 필요한 각종 법률과 실무 관행, 실제 사례에서 얻은 경험 등을 정리
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도산법 분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요즘, 창조적이고 효
율적인 업무 수행의 길잡이이자 좋은 실무 연구 자료로서 이 분야에 관
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님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훌륭
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신 법관 및 감사, 파산관재인, 관리인, 회생위원
여러분, 또 이 책이 나오기까지 세심한 실무 작업을 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 10.

법원도서관장 강 영 호

머 리 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시련을 겪게 된 것을 계기로 기업회생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의 여파로 최근까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적인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기업회생절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생존 여부를 넘어 국익에 관련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구촌 경제 시대를 맞아 각국의 경제활동은 국경을 초월하여 연결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global standard에 맞는 기업회생제도의 확립과 실무의 운영은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합니다.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거하여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역할 역시 관리인의 몫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관리인은 난파의 위기에 처한 회생회사라는 배의 생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선장이며, 회생절차 전반의 디자이너이자 집행자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회사정리법 시대와 달리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을 계속 담당하면서 회생절차를 주도하게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를 통해 재정적 파탄에 빠졌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생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관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들과 관리위원들이 기업회생사건을 처리하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인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과 실무관행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관리인을 비롯하여 기업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지 대 운

목 차

제1편 회생절차의 이해

제1장 회생절차 일반	3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3
1. 회생절차의 목적	3
2. 회생절차와 워크아웃·파산절차의 비교	3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4
1. 개요	4
2. 채무자의 재산 확보	4
3. 회생계획을 통한 채무조정과 지배구조 변경	8
4.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10
5.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11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12
1. 회생절차의 흐름도	12
2. 회생절차의 개요	12
제2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18
제1절 개요	18
제2절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18
1. 회생채권의 의의	18
2. 회생담보권의 의의	19
3.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차등 취급	21

제3절 공익채권	22
1. 공익채권의 의의	22
2.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23
3.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	23
제4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	25
1.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의 가부	25
2. 인가된 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	26
제5절 조세 등 채권	27
1. 개요	27
2. 국세·지방세 등	27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	29
제6절 주주	30
1. 회생절차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30
2. 회생절차에서 주주의 지위	30
제7절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32
1. 개요	32
2. 회생계획안의 기재 및 결의 집회의 출석·진술	32
제3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33
제1절 법원	33
1. 관할	33
2. 합의부의 구성과 역할	33
제2절 관리위원회·관리위원	34
1. 개요	34
2. 주요 역할	34
제3절 조사위원	35
1. 개요	35
2. 주요 역할	35

제4절 채권자협의회	36
1. 개요	36
2. 주요 역할	37
제5절 인가 후 감사와 인가 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38
제4장 희생절차 개시결정	40
제1절 개요	40
제2절 희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41
1. 재산관리처분권 등의 관리인 귀속	41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	41
3. 계속적 공급계약(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	47
4. 그 밖에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된 사항	48
5. 기존 강제집행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49
6.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	51
7. 주주총회·이사회 권한의 제한	56
8. 공유관계	57
9. 환취권	58
제5장 부인권	59
제1절 개요	59
제2절 부인권의 종류	60
제3절 부인권의 행사	61
1. 행사방법	61
2. 유의사항	62
3. 행사의 시기적 제한	63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63
1. 원상회복	63
2. 상대방의 지위	64

제6장 상계의 제한	65
제1절 개요	65
제2절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	65
제3절 희생채권자·희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66
1. 상계권 행사의 시기상 제한	66
2. 부당한 상계권 행사의 금지	66
제7장 희생계획 인가결정	69
제1절 개요	69
제2절 희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70
1. 효력의 발생시기와 범위	70
2. 면책 및 담보권의 소멸	71
3. 권리의 변경	71
4.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71
5. 희생채권자표 등 기재	72
제8장 희생절차의 종결·폐지	73
제1절 희생절차 종결결정	73
제2절 희생절차 폐지결정	73
제3절 종결·폐지의 효과	74
1. 희생절차 종결의 효과	74
2. 희생절차 폐지의 효과	75
제9장 간이희생절차	77
제1절 간이희생절차의 도입	77
제2절 간이희생절차의 내용	77
1. 희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77
2. 간이희생절차에 관한 특칙	78

제2편 단계별·분야별 관리인의 역할

제1장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권한	81
제1절 개요	81
제2절 관리인의 선임	81
1.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 제3자 관리인	81
2. 관리인 불선임 결정	82
3. 임기·보수	82
4. 공동관리인·관리인대리	83
제3절 관리인의 지위·권한	84
1. 관리인의 지위	84
2.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	84
3. 소송행위의 당사자	85
4. 법원의 업무보조	85
제4절 사업경영 측면에서 관리인의 업무	85
제2장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대표자의 역할	88
제1절 개시신청서 제출 직후	88
1. 절차 진행	88
2. 대표자의 역할	88
제2절 보전처분	90
1. 절차 진행	90
2. 대표자의 역할	92
3. 대표자의 보전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93
제3절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	94
1.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	94
2. 중지명령 등이 발령된 경우 대표자의 역할	94

제4절 비용예납명령	95
1. 절차 진행	95
2. 대표자의 역할	96
제5절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96
1. 절차 진행	96
2. 대표자의 역할	97
제6절 절차비용 및 운영자금의 조달	98
1. 개요	98
2. 대표자가 검토할 사항	98
제7절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선임	99
1. 절차 진행	99
2. 대표자의 역할	99
제8절 전자소송의 준비	100
1. 개요	100
2. 대표자의 역할	100
제9절 개시신청의 취하	100
1. 개요	100
2. 대표자가 검토할 사항	101
제3장 회생절차 개시결과와 관리인의 역할	102
제1절 절차 진행	102
제2절 개시결정 당일 및 직후 관리인의 역할	102
1.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법원에 대한 조치	102
2. 인감신고서 등의 제출	103
3. 관리인 취임식 실시, 회생절차 전담직원의 배치·교육, 관리인 인감신고, 통장 개설	103
4. 송달업무의 보조	104

제3절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역할	105
1. 개시결정 등의 내용 숙지	105
2. 개시결정에 따른 법률효과 숙지	105
3. 채무자 재산의 확보	107
4. 채권자들에 대한 안내 철저	109
5. 자구노력 등의 이행	109
제4장 재산상황조사와 관리인의 역할	110
제1절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조사업무	110
1. 개요	110
2.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110
3. 청산가치의 산정	111
제2절 관리인의 역할	112
1. 조사위원의 재산상태 평가 시	112
2.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산정 시	112
3.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산정 시	113
4.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	113
제5장 채권 등 목록 제출·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115
제1절 절차 진행	115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115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주·지분권자의 신고	115
제2절 채권 등 목록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116
1.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분류 및 주주명부의 확인	116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목록의 기재사항	116
3. 목록 작성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	117
4. 관리인이 목록 제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	123

제3절 채권 등 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123
1.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123
2. 신고기간이 시작된 이후	124
제6장 채권조사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125
제1절 절차 진행	125
1. 개요	125
2. 조사방법	125
3. 이의내용의 통지	126
제2절 채권조사기간과 관리인의 역할	126
1. 조사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126
2. 시부인표 작성	127
제3절 특별조사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132
1. 시부인표 작성	132
2. 출석현황표 작성	132
3. 특별조사기일의 출석과 조사결과의 진술	132
제4절 채권조사기간·특별조사기일 이후 관리인의 역할	133
1.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제기	133
2. 이의통지 업무의 보조	133
3. 이의철회	133
제5절 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와 관리인의 역할	134
1. 채권조사확정재판	134
2. 이의의 소	135
제7장 보고 집회·대체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136
제1절 개요	136
제2절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137

1. 절차 진행	137
2.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137
3.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138
제3절 대체절차	138
1. 주요 사항의 통지	138
2. 관계인설명회	139
제8장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141
제1절 절차 진행	141
1. 회생계획과 회생계획안	141
2.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141
3. 회생계획안 작성에 관한 권고	142
제2절 관리인의 역할	142
1.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142
2. 회생계획안의 작성 요령	143
3. 회생계획안 작성단계별 유의사항	145
4. 제출기간의 준수	148
제9장 심리·결의 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149
제1절 절차 진행	149
1. 개요	149
2. 심리 집회	149
3. 결의 집회	150
제2절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152
1. 집회자료의 준비	152
2. 의결권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153
3. 공익채권자의 동의서 징구	154
4. 조세 등 징수권자의 동의서 징구	154

5. 회생계획안 설명과 동의채권자의 위임장 징구	154
6. 출석예정 채권자에 대한 안내	155
7. 법원에 대한 사전보고	156
제3절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156
1. 회생계획안의 보고 및 각종 의견진술	156
2. 집회 변경·연기·속행 시 가결기간의 고려	157
제4절 결의 집회의 속행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157
1. 속행기일 전까지	157
2. 속행기일 당일	158
제5절 회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관리인의 역할	159
1. 회생계획 확정본의 제출	159
2. 각종 등기촉탁신청 등	159
제10장 회생계획의 수행·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161
제1절 개요	161
1. 회생계획의 수행	161
2. 회생계획의 변경	161
제2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관리인의 역할	162
1. 사업계획의 수행	162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162
3. 회생채권 등의 변제	163
제3절 회생계획의 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163
1. 회생계획 변경사유의 검토	163
2. 집회의 준비	164
제11장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리인의 역할	165
제1절 개요	165
제2절 압류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	165

제3절 신규 자금대출	165
제4절 신주 발행 또는 사채 발행	166
제5절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167
제6절 M&A	167
제12장 M&A와 관리인의 역할	168
제1절 회생절차의 M&A	168
1. 개요	168
2. 시기에 따른 분류	168
3. 내용에 따른 분류	171
제2절 회생계획·회생계획변경에 의한 M&A와 관리인의 역할	172
1. M&A 추진시기의 검토	172
2. M&A 방식의 검토	173
3.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173
4.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174
5. M&A 절차진행에 따른 각종 허가신청	174
6. M&A 악용 방지	175
7. 회생계획안의 작성	176
제3절 인가 전 영업양도와 관리인의 역할	176
1. 요건과 절차의 숙지	176
2. 추진시기의 검토	177
3. 영업양도 계약 시 유의사항	177
4. 영업양도 시 담보권 등의 처리	178
제13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관리인의 역할	179
제1절 개요	179
제2절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179
1.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179

2. 수행 가능성의 판단 시 고려요소	180
3. 조기종결의 실무상 운영기준	181
4.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181
5. 조기종결 후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	182
제3절 관리인의 역할	182
1. 회생절차 종결신청	182
2.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	183

제14장 회생절차의 폐지와 관리인의 역할185

제1절 개요	185
제2절 관리인의 역할	185
1. 회생절차 폐지결정 전까지	185
2.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186

제3편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보고업무

제1장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189

제1절 개요	189
제2절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종류	189
1.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	189
2. 개시결정 이후인 경우	190
3. 허가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92
제3절 허가신청의 방법	193
1. 사전 허가신청의 원칙	193
2. 전자제출 허가신청의 원칙	193
제4절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94
1.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194
2. 관리인의 책임	194

제5절 허가사항의 항목별 설명	195
1. 부동산·자동차 등 등기·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195
2.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일정가액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	197
3. 재산 양수 관련	198
4. 금원 지출 관련	198
5. ()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매매·임대차 등 계약의 체결·의무부담행위	202
6.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제	202
7.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발행행위	203
8.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	204
9. 소송행위	204
10. 인사 및 보수결정	207
11. 권리의 포기	208
12. 희생담보권, 희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209
13.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209
14.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210
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210
16. 감사·신주발행·합병 등	210
17.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212
제6절 접대비 관련 허가신청 및 보고	213
1. 접대비 예산 편성 허가신청	213
2. 접대비 관리 및 사용방법	214
3.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	214
제7절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215
1. 급여 지급 허가신청	215
2. 직원 채용 허가신청	215
3.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	216
4.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	216

5.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허가신청 사항(정관변경, 출자전환, 임원선임 등)216

6.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217

제2장 관리인의 보고업무218

제1절 개요218

제2절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219

1. 보고서의 종류219

2. 보고서를 제출할 자219

3. 보고서의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219

4. 보고서의 제출방법220

5. 보고 방법220

제3절 각종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220

제4절 각종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221

1. 월간보고서221

2. 분기보고서223

3. 채무자 현황 및 연간 보고서224

제5절 허위보고의 경우224

제6절 관리인 평정에의 사용225

제4편 관리인의 책임과 법원의 감독

제1장 관리인의 민·형사책임229

제1절 개요229

제2절 손해배상책임229

제3절 형사책임230

제2장 법원의 감독	231
제1절 개요	231
제2절 관리인의 해임	231
제3절 법원선임 감사의 감사 실시	232
1. 감사의 업무수행	232
2. 감사의 보고업무	232
3. 관리인·이사 등과 감사의 상호 협조의무	233
제4절 외부감사인의 감사 실시	234
1. 개요	234
2. 관리인의 회계감사계약 체결 허가신청	234
3.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235
제5절 채권자협의회의 실시청구 등	236
부록 I. 각종 양식	237
[양식 1] 진행일정표	239
[양식 2]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240
[양식 3] 법률상관리인 인감 조제보고	242
[양식 4]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안내	245
[양식 5] 위임장	252
[양식 6]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	253
[양식 7]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총괄표	254
[양식 8]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255
[양식 9] 회생담보권자 배분 상세명세서	256
[양식 10] 회생채권자의 목록 총괄표	257
[양식 11] 회생채권자의 목록	258
[양식 12]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	259
[양식 13]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260
[양식 14] 벌금·조세 등의 목록 총괄표	261

[양식 15] 벌금·조세 등의 목록	262
[양식 16] 회생채권 등 신고서	263
[양식 17] 회생채권 신고내역서	264
[양식 18] 회생담보권 신고내역서	265
[양식 19] 주식·출자지분 신고내역서	266
[양식 20] 회생채권 등 신고 접수증	267
[양식 21] 채권 명의 변경 신고서	268
[양식 22] 시·부인의 일반기준	269
[양식 23]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 총괄표	272
[양식 24] 회생담보권 시·부인 명세서	273
[양식 25]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	274
[양식 26] 벌금·조세 등의 목록·신고 명세서	275
[양식 27] 주주·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명세서	276
[양식 28] 이의통지서	277
[양식 29] 관리인보고서	278
[양식 30]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	280
[양식 31] 위임장	281
[양식 32] 출석현황 및 의결표	282
[양식 33] 변경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출석현황 및 의결표	287
[양식 34] 회생채권 변제 허가신청서	288
[양식 35] 채권가압류결정 취소명령신청서	293
[양식 36] 급여 지급 허가신청서	296
[양식 37] 직원 채용 허가신청서	297
[양식 38]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서	298
[양식 39]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서	300
[양식 40] 정관의 변경 허가신청서	301

[양식 41]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 허가신청서	302
[양식 42] 임원퇴임 및 신규임원선임 허가신청서	305
[양식 43]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서	307
[양식 44] 주주총회 개최 허가신청서	309
[양식 45]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계약서	311
[양식 46] 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업무협약서	315
부록 II.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317
[회생실무준칙 제1호] 관리인 등의 선임·해임·감독 기준	319
[회생실무준칙 제4호]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329
[회생실무준칙 제5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의 실시 에 관한 준칙	334
[회생실무준칙 제6호]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	338
[회생실무준칙 제7호] 채무자의 평정기일	339
[회생실무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	340
[회생실무준칙 제9호] 자회사(子會社)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392
[회생실무준칙 제10호]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395
[회생실무준칙 제1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397
[회생실무준칙 제12호]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	409
[회생실무준칙 제14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413
[회생실무준칙 제15호] 간이조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준칙	416
[회생실무준칙 제16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에 관한 준칙	419

그림·표 차례

〈그림 1〉 회생절차 흐름도	13
〈표 1〉 조사위원 제1차 조사보고서 및 제2차 조사보고서의 보고내용	36
〈표 2〉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절차의 관계	55
〈표 3〉 부인권의 성립요건과 수익자 선의·악의의 입증책임	61
〈표 4〉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종류와 폐지사유	74
〈표 5〉 관리인이 유의할 사항(예시)	86
〈표 6〉 채무자 관리인에 대한 지침(예시)	87
〈표 7〉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기재사항	89
〈표 8〉 법원의 보전처분(예시)	91
〈표 9〉 조사위원 보수기준표	95
〈표 10〉 계속기업가치 산정	111
〈표 11〉 담보물 종류별 가치평가 방법	121
〈표 12〉 시부인의 일반적 유의사항	129
〈표 13〉 시부인의 개별 사례에 관한 유의사항	130
〈표 13-1〉 주요 사항 통지명령(예시)	138
〈표 14〉 회생계획안 작성단계별 유의사항	146
〈표 15〉 인가 후 M&A 일정표	169
〈표 16〉 조기종결 수행 가능성 고려요소	180
〈표 17〉 [표 8과 동일] 법원의 보전처분(예시)	189
〈표 18〉 관리인의 법원·관리위원회에 대한 허가신청업무	191
〈표 19〉 인가 후 지출수반행위의 법원허가 필요 기준액	197
〈표 20〉 접대비 예산편성 지침	214
〈표 21〉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방법	214
〈표 22〉 각종 보고서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220
〈표 23〉 관리인의 해임사유	231

제 1 편

회생절차의 이해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제1장 회생절차 일반

제2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제3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4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제5장 부인권

제6장 상계의 제한

제7장 회생계획 인가결정

제8장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제9장 간이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 일반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1. 회생절차의 목적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등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제1조, 제34조).¹⁾²⁾

2. 회생절차와 워크아웃·파산절차의 비교

회생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또는 관리인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 이하 관리인 및 법률상 관리인을 통틀어 ‘관리인’이라고 한다)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가 조정되는 등 절차 전반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고 법원의 관리·감독에 따라 진행된다.

1) 이 책에서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말하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준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을 말한다.

2) 회생절차는 법인(기업) 채무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36조 제2호). 개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실무상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보아 채무자가 관리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주식의 권리변경, 출자전환 등 법인과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책은 법인(기업) 회생절차 관리인의 직무에 관한 것이다.

회생절차는 ①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등 다수의 채권자들 주도로 사적인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워크아웃(work-out)’과 구별되고, ② 채무자의 사업을 재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라는 점에서,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와 구별된다.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1. 개요

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이라는 집단적 채무조정을 통하여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회생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확보, 회생계획을 통한 채무조정과 지배구조변경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건이 청산을 통한 퇴출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제성 판단을 위해 회생절차에서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여 양자를 비교한다.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관리인은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법원과 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2. 채무자의 재산 확보

가.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 필요성

채무자에게 재정적 파탄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채권자에게 알려지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

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등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하려 시도한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채권자가 보다 빠른 시기에 보다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채권자에게 유리하지만,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채권회수 시기, 변제율 등에 차등을 발생시켜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침해하고, 회생·파산절차와 같은 다수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집단적 절차보다 절차비용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또한 채무자가 개별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리의 신규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채무자는 더욱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거나 계속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회생의 기회를 잃고 만다.

회생절차는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과 채무자의 재산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채무자의 변제행위, 재산처분행위, 신규채무부담행위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나.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

(1) 회생절차 개시 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채납처분 등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법원의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금지된다(제44조, 제45조).

(2)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후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당연히 중지·금지된다(제58조). 또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를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제131조, 제132조).

다. 채무자 재산의 동결

(1) 회생절차 개시 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법원의 보전처분에 의하여 채무자의 ① 변제행위, ② 재산처분행위, ③ 어음할인, 용통어음발행, 신규대출 등 신규채무부담행위, ④ 임직원 채용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43조). 채무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원자재 등 적극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채무자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여 부채 등 소극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후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관리인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채무를 변제하려면 소액채권이거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제132조).

법원은 관리인이 재산처분, 재산양수, 자금차입 등의 차제, 소송제기, 화해·중재계약, 권리포기, 공익채권 승인 등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신규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61조).

또한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업·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야 한다(제200조).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62조).

라.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확보를 위한 절차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이사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재판,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권 행사, 상계권의 행사 제한 등이 있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지급정지 등의 위기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하고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제100조 내지 제113조).

이사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재판은 부실경영 등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액수를 회생절차 내에서 조사·확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절차이다. 기존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의 책임은 사임요구, 퇴직금채권의 포기, 민사소송제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물을 수도 있지만, 채무자에게는 신속한 재산회복이 필요하므로 회생절차에서 별도로 마련한 절차이다(제114조 내지 제117조).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권 행사는 채무자가 개시 전에 상대방과 사이에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개시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아직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관리인에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기존 거래관계의 유지가 채무자에게 불리할 경우 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해지함으로써 채무자를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다(제119조, 제121조).

상계권 행사의 제한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채

무자의 지급정지 등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등의 경우 상계를 금지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부당하게 조기에 회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채무자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사용한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미납하였어도 공급 상대방은 요금 미납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제122조),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등은 모두 채무자의 재산확보를 도와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회생계획을 통한 채무조정과 지배구조 변경

가. 회생계획에 의한 채무조정

회생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재정적 과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의 감축, 면제 등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채무조정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제252조).

회생계획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방법에는 감축, 면제, 변제기 유예에 의한 분할변제 등이 있는데, 통상 채권의 일부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출자전환의 방법이 사용된다.

회생계획은 다수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나. 회생계획에 의한 지배구조 변경

채무자가 청산단계에 있다면 회사의 주주는 채권자가 변제받은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분배받을 권리를 보유하므로(상법 제538조), 공정·형평의 원칙상 회생절차에서 주주는 채권자보다 불리하게 권리가 변경되어

야 한다(제217조).

채무자의 지배구조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 회생계획에는 주주의 권리변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제193조 제1항 제1호),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회생계획에서 채무변제 대신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출자전환의 방법을 사용하면 채권자는 회생계획 인가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채무자의 이어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2/3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제205조 제4항).

이와 같이 기존 주주의 주식이 병합·소각되고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하면서 채무자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것이다.

다. 회생계획의 작성원리

회생계획에는 채권자·주주의 권리변경, 채무변제자금의 조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93조 제1항).

우선 회생계획의 채권자·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하여는 ① 공정·형평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공정·형평의 원칙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제217조, 제243조 제1항 제2호). 청산절차의 변제순위는 담보권자, 일반채권자, 주주의 순이므로 회생절차에서도 이러한 순위가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변제방법은 담보권자, 일반채권자 순으로 우선하고, 주주는 보다 불리한 주식의 병합·소각을 감수하여야 한다.

평등의 원칙은 회생계획의 조건은 담보권자 사이, 일반채권자 사이, 또는 주주 사이 등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제218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가 청산할 때 개별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제243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자는 청산절차에서 배당받는 것보다 회생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에 구속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회생계획은 수행 가능하여야 한다(제231조 제3호, 제243조 제1항 제2호).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은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과 관련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영업활동, 비영업용자산의 매각, 신규차입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고 회생계획기간이 종료될 때에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상태로 존속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인이 다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회생계획의 변제율을 높이거나 변제시기를 앞당기는 경우 채무자가 그만큼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 회생계획은 수행 가능성이 없게 된다.

4.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가. 개요

채무자를 즉시 청산하여 보유재산을 환가·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가치의 총액(청산가치)이 채무자의 사업을 존속시켜 사업의 수익금이나 매각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가치의 총액(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분배라는 가치에 부합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반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된다(제286조 제2항).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회생계획을 통하여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액이 채권자에게 추가로 분배된다.

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의 산정방법

실무상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에 의하여 산정된다.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한다. 실무상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출된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실무상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2편 제4장 제1절 2. 계속기업가치의 산정과 3. 청산가치의 산정 참조.

다.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산정의 필요성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① 법원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고 폐지할 것인지, ② 법원이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것인지, ③ 회생계획안에서 향후 사업계획 및 변제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지, ④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하고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법원이 어떤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할 것인지 등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5.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한다.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개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

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관리인은 채무자·채권자·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전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이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재산관리처분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고(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된다(제78조).

관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막중하므로 법원은 관리인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관리인으로부터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인을 감독한다.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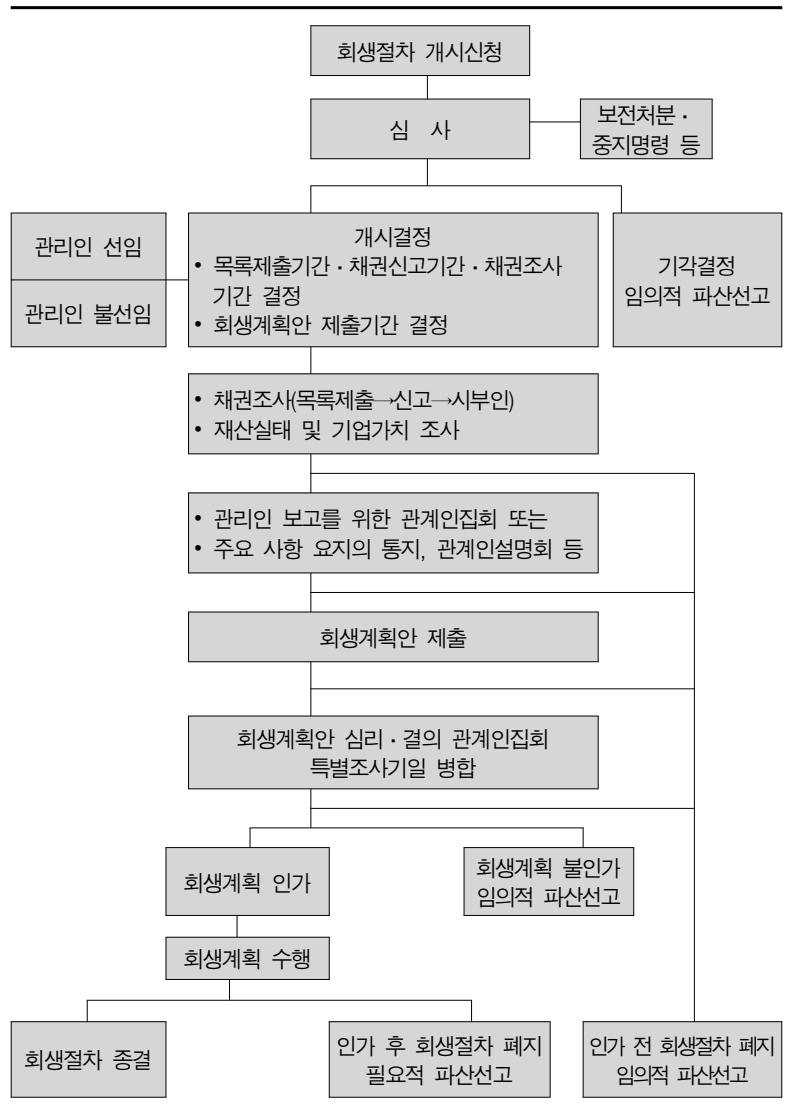
1. 회생절차의 흐름도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 폐지 또는 종결 등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종료되기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2. 회생절차의 개요

<그림 1>의 회생절차의 흐름도에 따라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회생절차 흐름도



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는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제2항).

나.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무분별한 재산처분을 막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흠어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이 있고(제43조),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제44조, 제45조).

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제49조), 개시결정의 주문, 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위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제51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제131조, 제141조 제2항).

라. 채권자목록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등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확정의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실무상 채권조사는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의 내용과 액수 등을 기재하고 그 기재 내용을 시인 또는 부인하는 내용의 시부인표를 채권조사기간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마. 채무자 재산의 조사·확보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착수하고(제89조),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제90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91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87조 제3항).

이러한 재산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관리인은 그 결과에 기초하여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을 평가하여 채권조사기간에 그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을 시인하게 된다. 나아가 재산평가의 결과는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성, 수행 가능성 및 청산가치보장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한편 관리인은 채무자에 의한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100조), 채무자의 임원 등이 위법행위를 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 확보를 피하게 된다(제114조 이하).

바.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정하여

야 하고(제50조 제1항 제4호), 관리인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20조 제1항).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221조). 한편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제222조).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다(제193조). 회생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제243조).

사. 회생계획의 심리·결의·인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이하 '심리 집회'라 한다)를 소집한다(제224조).

관계인집회에서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이하 '결의 집회'라 한다)를 소집한다(제232조).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이상,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조 의결권의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가결되고, 청산형 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4/5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자조, 주주의 조의 가결 조건은 위와 같다(제237조).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결의를 하기 전에, 회생절차·회생계

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회생계획이 공정·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할 것, 청산가치보장을 준수할 것 등의 인가요건을 미리 검토하므로, 보통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집회는 같은 기일에 진행하고, 결의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그 집회 당일 인가결정을 하고 있다.

아.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제257조 제1항).

회생계획 수행의 핵심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이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변경, 임원의 변경, 자본의 변경 등이 있다.

자.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종결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한다(제283조 제1항 본문).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83조 제1항 단서).

회생절차 종결은 회생계획의 성공적 종료를 의미하는 반면, 회생절차 폐지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를 계속할 경제성이 없어서 회생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와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로 구분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의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제288조).

제2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제1절 개요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채권자와 주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채권자는 다시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영업 또는 사업을 지속하면서 새로이 발생하는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자로 구분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따라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게 되는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채무자가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일반적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지만(제131조, 제141조 제2항),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된다(제180조).

한편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도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제2절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1. 회생채권의 의미

가. 개요

회생채권은 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³⁾

3) 회생채권은 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②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 ③ 회생절차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채권발생의 기본적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존재하면 되고, 개시 전에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여금채권에서 변제기가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여계약이 개시 전에 이미 체결되었고 대여행위가 있었다면 대여금채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정기금채권, 이자 없는 불확정기한부채권, 비금전채권, 외화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등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그 밖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제133조).

나.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인데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다.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시 후 관리인의 해제·해지권 행사로 생긴 것이나 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제121조 제1항).

그 외에도 어음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제123조),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지급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제124조), 상호계산 종료로 인한 상대방의 잔액청구권(제125조) 등은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임에도 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

2. 회생담보권의 의의

가. 개요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약금, ④ 회생절차 참가의 비용 등이다(제118조).

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제141조 제1항 본문). 즉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제141조 제1항 단서).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제141조 제4항).

예를 들면, 회생담보권자 갑이 가액 1억 원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5천만 원의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회생담보권자 을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7천만 원의 2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자 갑은 선순위자로서 5천만 원의 회생담보권을 가지게 되고, 회생담보권자 을은 1순위 배분 후의 잔존가치인 5천만 원(1억 원 - 5천만 원)의 회생담보권을 가지고 나머지 2천만 원(7천만 원 - 5천만 원)은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된다.

나.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제141조 제5항). 예를 들면, 회생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5천만 원, 담보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액이 1억 원인 경우,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은 피담보채권의 액수인 5천만 원이 된다.

한편 회생담보권의 내용이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정기금채권, 이자

없는 불확정기한부채권, 비금전채권, 외화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등일 경우에는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그 밖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일 경우에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제141조 제6항, 제133조 제2항).

다. 리스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을 사용하여 온 경우, 상대방인 리스회사의 리스료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다.

실무상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어 리스료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다면, 개시 전에 지급하지 않은 연체 리스료는 물론 개시 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도 회생담보권에 준하여 취급한다. 다만 리스계약은 이른바 금융리스계약, 운용리스계약, 렌탈계약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리스료채권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회생절차 내의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

3.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차등 취급

회생계획에서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지분권자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제217조). 이러한 차등은 변제율, 변제시기, 출자전환비율 등에서 회생담보권을 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지분권자의 조로 분류하여 조별로 결의하는 방법에 의한다(제236조 제1항). 다만 법원은 권리의 성질,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조의 분류를 다시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제236조 제3항).

제3절 공익채권

1. 공익채권의 의의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다.⁴⁾ 실무상 공익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즉 관리인이 개시 후 새로이 거래행위를 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채권이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각종 채권에 대하여도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일부 변제, 변제기 유예 등 제약이 따른다면 이러한 조건을 감수하고 채무자와 거래할 채권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거래가 가능하도록 고려한 것이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익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하면서도 그 외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었으므로 포괄적 규정의 해석에 따라 공익

4) 공익채권은 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② 회생절차 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③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다만 회생절차 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 ④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⑤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⑥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⑦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⑧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⑨ 이 책 제1편 제2장 제5절 제2의 가. 회생채권으로의 취급에서 공익채권으로 설명된 조세 등 채권, ⑩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⑪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⑫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⑬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⑭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등이다(제179조).

채권의 범위는 확장될 수 있다(제179조 제1항 제15호).

2.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임에도 형평의 원칙이나 사회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여 수시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제179조 제1항 제8호). 공급자가 채무자의 개시신청 전 요금미납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제122조 제1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제1편 제4장 제2절 3. 계속적 공급계약 참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위와 같은 채권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제179조 제1항 제12호).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부터 개시 전까지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채무자는 위와 같은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형성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임을 고려한 것이다.

3.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

가. 공익채권의 회생채권 신고

채권자가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신고하고 채권조사결과 관리

인이 회생채권으로 시인한 경우, 공익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는지 문제 된다.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공익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동의하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나. 수급인의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상대방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던 중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되는지 문제 된다.

판례는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구 회사정리법이 적용된 절차이고 현행 회생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같은 법 제208조 제7호에서 규정한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에 해당하게 되어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본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다. 이사, 감사 등의 보수채권

등기부상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사, 감사의 보수채권도 임금채권으로서 공익채권이 된다.

이사, 감사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

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제4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

1.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의 가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고(제131조, 제141조 제2항), 예외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31조, 제132조, 제141조 제2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는 중지된다(제58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고, 회생절차가 폐지결정 확정이나 종결결정으로 종료될 때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하다(제256조).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제180조 제1항, 제2항). 공익채권

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지도 않는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②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제180조 제3항).

2. 인가된 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미치고(제250조 제1항), 공익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제251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제252조).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면책·변경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의 면책·변경이 기재되더라도 그 기재는 회생계획과 별도로 발생한 권리관계를 보고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한편 회생계획에 기재된 공익채권의 면책·권리변경은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될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에는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공익채권이 다액일 경우 관리인은 공익채권자와 사이에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자금수급계획을 세움으로써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절 조세 등 채권

1.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희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한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 지방세가 대표적이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희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희생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같이 취급한다(이하 국세, 지방세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희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국세·지방세 등’이라고 한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희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하는데, 앞서 본 국세·지방세 등과는 다소 다르다.

이와 별개로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등은 징수편의를 위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지만 징수순위가 일반 희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고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 희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보면 된다.

2. 국세·지방세 등

가. 희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국세·지방세 등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희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희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하였으면 희생채권, 개시 후에 성립하였으면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희생채권, 공익채권의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세,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희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희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②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③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는 공익채권이 된다(제179조 제1항 제9호).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목록제출과 채권신고가 필요하며, 회생계획에 의하여 감면될 수 있고 신고 등의 누락으로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면 실권된다.

나. 회생절차에서의 특별한 취급

국세·지방세 등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회생절차에서 일반 회생채권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1) 체납처분 등의 중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이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하려면 발령 전에 징수권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제44조 제1항 제5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 인가가 있는 날까지,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③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중지되고, 필요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1년간 연장될 수 있다(제58조 제3항). 일반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연히 중지되는 점과 다르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인가일까지 중지되고,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에서 정한 유예기간까지만 중지된다.

(2) 채권조사·확정

일반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은 채권조사기간의 시부인, 채권조사확정 재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국세·지방세 등은 시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원래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확정이 이루어진다(제157조).

(3)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회생계획에서 국세·지방세 등에 대하여는 공정·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지방세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생담보권보다 우월하게 취급될 수 있다(제217조 제2항).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기 유예는 보통 10년의 기간을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을 뿐, 해당 채권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나(제195조), 국세·지방세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유예하거나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140조 제2항), 징수유예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40조 제3항).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국세·지방세 등은 조분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제191조 제2호, 제236조 제2항 단서).

(4) 기타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가 접수되면 징수권자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징수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 제3항).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개별적 변제금지 등에 있어서 일반 회생채권과 다르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은 신고누락되어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도 실권되지 않으며(제251조 단서),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제140조 제1항). 또한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조분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부여되지도 않는다(제191조 제3호, 제236조 제2항 단서).

제6절 주주

1. 회생절차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주주는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자본감소, 신주발행, 자본증가,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자본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관의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제55조),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당 부분 축소된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주주의 권한행사에 채무자의 비용지출이 수반된다면 사실상 관리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2. 회생절차에서 주주의 지위

가. 회생절차 참가 및 의결권 행사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을 변경할 경우,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46조).

주주가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50조 제1항).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므로 특히 문제 된다. 수시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신고한 주주와 의결권 행사 무렵의 주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그 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한다(제150조 제2항). 또한 당초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주식의 수가 적고 그 이후 주주변동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주주, 신고명의자와 달라진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제155조).

나. 주주의 권리변경

주주는 채무자가 청산절차에 들어갔다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갖는 자에 불과하므로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보다 열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제217조, 상법 제538조).

주주의 권리변경은 소각·병합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2/3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제205조 제3항, 제4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에 대하여도 인정되므로(제254조), 주주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권되는 것은 아니다.

제7절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1. 개요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란 채무자 이외의 자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회생계획안에 창설적으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M&A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나 변경회생계획안에서 인수자가 신주대금납입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의 인수자가 이에 해당한다.

2. 회생계획안의 기재 및 결의 집회의 출석·진술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명시하고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하고,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이 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를 명시하고 그 채무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제196조).

또한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그 뜻을 진술하여야 한다(제233조).

M&A 절차가 진행되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또는 변경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되면 인수자가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는다.

제3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1절 법원

1. 관할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전속하여 담당한다(제3조 제1항). 정관의 본점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만 회생사건을 전속하여 관할한다(제3조 제8항).

회생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경합적으로 관할이 존재한다(제3조 제6항). 예를 들면 인천, 수원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2. 합의부의 구성과 역할

합의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사건별로 이 중 1명이 주심판사 역할을 한다)으로 구성되어 각종 결정·허가사무, 관계인집회의 지휘, 관리인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판장이 집회·심문 등을 지휘하나, 실무상 심문절차, 현장검증은 재판장에 의하여 수명법관으로 지정된 주심판사가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회생절차에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보통 '참여관'이라고 한다)는 재판에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등기·등록의 촉탁 업무를 수행하며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주주·지분권자표를 작성한다. 법원서기 또는 법원서기보(보통 '실무관'이라고 한다)는 법관, 법

원사무관 등을 보조하여 문건접수, 기록조제, 우편송달업무 등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2절 관리위원회 · 관리위원

1. 개요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제16조). 관리위원은 법률, 회계, 경영, 경제 등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위촉된다. 관리위원회는 서울중앙·의정부·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등 회생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사건배당절차에 따라 당해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된 관리위원을 보통 주무 관리위원이라고 부른다.

2. 주요 역할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보전처분, 개시결정, 관리인·조사위원 선임, 회생절차 폐지결정 등 각종 절차에 대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주무 관리위원을 통하여 관리인의 채권목록 작성, 시부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집회자료 준비 등 관리인의 각종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그 외에 관리위원의 주된 업무는 관리인에 대한 각종 허가사무이다. 법원은 관리위원에게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제18조), 실무상 채무자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리위원의 허가로 전결되는 경우가 많다.

제3절 조사위원

1. 개요

조사위원은 실무상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결정으로 공인 회계사·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선임된다. 선임 당시로부터 최근 3년간 채무자의 외부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회계 법인은 실무상 조사위원에서 배제된다.

2. 주요 역할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실무상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한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제1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5일 전까지 제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차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실시되거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또한 조사위원은 그 외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를 명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시로 보고한다.

실무상 조사위원이 제1차 조사보고서와 제2차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조사결과 또는 의견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위원 제1차 조사보고서 및 제2차 조사보고서의 보고내용

구 분	조사결과 또는 의견
제1차 조사보고서	① 조사결과와 요약 및 조사위원의 의견 ② 채무자의 개요(조직·업무·재무 등의 현황) ③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④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⑤ 채무자의 재산상태 ⑥ 우발채무(보증채무)의 내역 ⑦ 부인대상 행위의 존부 및 범위 ⑧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산정 ⑨ 채무자 사업의 수익성 분석 및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산정 ⑩ 채무상환계획안 및 추정재무제표
제2차 조사보고서	①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여부 ㉠ 조사결과와 요약 ㉡ 청산배당액 ㉢ 변제액의 현재가치 ㉣ 청산배당액과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비교 ②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여부 ㉠ 조사결과와 요약 ㉡ 변제할 채무내역의 완전성 ㉢ 채무면제액 및 변제할 채무 ㉣ 변제자금의 조달 가능성

제4절 채권자협의회

1. 개요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실을 관리위원회가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소액채권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제 20조, 규칙 제34조). 실무상 큰 규모의 채무자는 6인 내지 10인, 작은 규모의 채무자는 4인 내지 5인의 채권자로 구성하되, 금융기관이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 담보채권

자, 주요 무담보채권자를 우선 포함시킨 다음 다액의 채권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채권자협의회는 구성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채권자를 지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으면 관리위원회가 대표채권자를 지정한다. 대표채권자는 채권자협의회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대표하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규칙 제35조).

2. 주요 역할

가.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제시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관리인·조사위원의 선임, 회생채권의 조기변제, 채무자의 감사선임, 영업·사업양도 등에 관한 매각주간사·실사법인·우선협상대상자 등의 선정, 회생절차 개시·폐지·종결 등 법규가 정한 사항이나 법원·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1조, 제50조, 제87조, 제132조, 제288조 등).

나. 자료의 제공 및 설명요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서류·결정서·감사보고서 등의 서류와 규칙상 인정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계획 폐지결정, 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대차대조표·조사보고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한다(제22조 제1항, 규칙 제39조).

또한 관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 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고, 채권자협의회가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22조 제2항, 제3항). 실무상 법원은 관리인이 분기보고서와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다. 채권자협의회 활동비용의 채무자 부담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21조 제3항). 이러한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취급한다(제179조 제1항 제13호).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법무법인·회계사·회계법인 그 밖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비용 및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협의회 또는 변호사 등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규칙 제42조), 그 외에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채권자협회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규칙 제43조).

라. 재산 및 영업상태 등에 대한 실사청구

채권자협의회는 ①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 실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제4호, 제259조).

마. 회생절차 종결 후 채무자의 감독

회생절차의 종결로 채권자협의회는 소멸한다.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사이에 회생절차 종결 후의 감독에 관하여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채권자들이 협의체의 형태로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할 수 있다.

제5절 인가 후 감사와 인가 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감사 선임을 위한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면접을 거쳐 감사를 선임한다. 실무상 후보자는

주로 채권자협의회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거나, 추천이 없을 경우 각종 경제단체의 경로를 통하여 법정관리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명단 중에서 선정한다. 법원은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마친 후 채권자협의회 의견 등을 들어 감사를 선임하게 된다.

감사의 임기는 보통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준칙 제4호 제6항). 채무자가 소규모업체인 경우에는 감사보수 지급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 1인이 여러 회사의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감사는 상법 제412조에 규정된 임무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명받은 사항을 조사·보고하고(준칙 제4호 제8항), 분기별로 감사의견서를 제출한다(준칙 제4호 제10항).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11년부터 인가 전 채무자 자금지출의 감독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을 선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CRO 후보자도 채권자협의회를 추천을 받아 면접을 실시하며, 채무자의 자금수지를 감독하거나 구조조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인가 후 감사와 유사하다.

제4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제1절 개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제49조 제1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이사 심문,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고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①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제42조)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출기간, ②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의 신고기간, ③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④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50조).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조사위원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고를 명한다. 또한 법원은 관리인에 대하여 법원·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하고,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고를 명한다.

제2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1. 재산관리처분권 등의 관리인 귀속

가. 업무수행권·재산관리처분권의 이전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제56조).

나. 관리인의 행위와 채무자 행위의 구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수행권·재산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관리인의 행위와 채무자의 행위는 엄격히 구분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다(제64조). 부동산,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무효이고, 다만 등기권리자가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의 본등기는 유효하다(제66조).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유효하다(제67조).

회생절차 개시의 공고 이후에는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제68조).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의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119조 본문).

‘쌍무계약’은 쌍방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

채무자와 그 상대방 모두가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채무자 또는 상대방 중 한쪽이라도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해제·해지와 이행의 선택권 행사시기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해제·해지와 이행 사이의 선택권을 보유한다. 이는 대가관계에 있는 미이행상태의 쌍방의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면서도 관리인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제·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상대방은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인에 대하여 선택권의 행사를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이 해제·해지권을 포기하고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제119조 제2항). 법원은 위 30일의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제3항).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19조 제1항 단서). 이는 관리인이 해제·해지

권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는데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상대방이 이를 신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 선택권 행사의 효과

관리인이 해제·해지권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121조). 즉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원상회복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된다.

반면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179조 제1항 제7호). 물론 관리인도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상대방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관리인이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24조 제4항).

또한 단체협약에 대하여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적용이 배제된다(제119조 제4항).

마.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의 구체적 모습

(1) 매매계약

①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관리인이 해제권을 선택하면, 관리인은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인도를 마친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일부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있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공

익채권자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은 회생채권자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매수인인 경우

관리인이 해제권을 선택하면, 관리인은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도 관리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매매목적물을 일부라도 인도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하고 현존하지 않는다면 그 가액상환을 공익채권자로서 구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은 회생채권자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관리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

(2) 임대차계약

①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상대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제124조 제4항). 이 경우 관리인이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려면 임차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임차권의 부담이 계속되는 상태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해지권을 선택하면, 상대방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목적물을 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다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한 경우, 관리인은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은 더 이상 임대목적물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은 임대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 전의 연체차임,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연체차임,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임차보증금의 지급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관리인에게 반환하면 된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임대차관계는 계속되고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연체차임은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연체차임은 공익채권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임차보증금의 지급이 있었다면 연체차임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3)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이유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19조 제4항).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되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에 구속된다.

한편 관리인은 사용자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정리하고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관리인은 정리하고 이전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근로자의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이 된다(제179조 제1항 제10호).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채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로복지공단의 채권 역시 공익채권이 된다.

한편 고용관계가 계속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채무자는 지연이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4) 도급계약

채무자가 수급인인 경우 보통은 채무자가 개시 전에 수주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므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채무자가 도급인인 경우에도 보통은 상대방 수급인으로부터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부품으로 사용하거나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므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채무자가 도급인이고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 대하여는 앞서 공익채권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제1편 제2장 제3절 3의 나. 수급인의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참조.

(5) 리스계약

① 리스계약의 의의와 종류

리스계약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된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물건 또는 시설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의 취득자금과 이자 및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가 고가의 공장기계를 리스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한편 운용리스는 리스이용자의 목적이 금융에 있지 아니하고 물건 자

체의 사용에 있다. 금융리스가 범용성과 전용 가능성이 희박한 물건을 대상으로 함에 대하여 운용리스는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범용성이 높은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가 컴퓨터, 복사기 등을 리스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② 채무자가 금융리스 이용자인 경우

금융리스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권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금융리스계약은 리스 이용자에 대하여 금융상의 편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료 채무는 계약성립과 동시에 전액 발생하고, 리스료 지급이 매기 일정액으로 약정되어도 그것은 리스이용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각기의 리스물건 사용과 각기의 리스료 지급과는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쌍무계약의 미이행상태가 아니라고 보아서 해제·해지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이 실무이다.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유보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리스료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리스회사의 리스료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한다.

③ 채무자가 운용리스 이용자인 경우

운용리스계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실무이다.

3. 계속적 공급계약(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

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제122조 제1항). 그 대신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된다(제179조 제1항 제8호).

예를 들어 채무자가 2010. 8. 1.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2010. 9. 1.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2010. 8. 1. 이전에 발생한 전기요금은 회생채권이고, 2010. 8. 1.부터 2010. 9. 1. 전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기요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공익채권으로 취급한다.

관리인이 2010. 8. 1. 이전에 발생한 전기요금을 조기 변제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제131조, 제132조), 2010. 8. 1.부터 2010. 9. 1.까지 발생한 전기요금은 공익채권이므로 관리인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지출은 법원·관리위원의 허가사항인 것이 실무이지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전기요금 등은 월간보고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보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제3편 제1장 제2절 2의 나. <표 18> 관리인의 법원·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신청업무 참조.

4. 그 밖에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된 사항

가. 도산해제·해지조항

도산해제·해지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이 발생한 것으로 정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의 발생을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을 말한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의 파산·회생절차 신청 시 리스계약에서 리스회사가 최고 없이 통지만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즉시 리스회사에 반환함과 동시에 규정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리스회사가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서 잔존 리스료 전액의 일괄 변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이다.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실무는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도산해지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나. 리스회사의 해지권 행사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금지되는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리스회사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법정해지권이 발생하였거나 리스계약상의 약정해지권이 발생하였다면, 보전처분 발령 이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도 리스회사는 이미 발생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후에 리스이용자인 채무자가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해지할 수 없다는 견해는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금지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리스회사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②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는 보전처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5. 기존 강제집행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가.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취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강제집행 등'이라고 한다)를 할 수 없고, 이미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는 당연히 중지된다(제58조 제1항, 제2항).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채납처분의 중지는 특별히 취급한다(제58조 제3항).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채납처분의 중지에 관하여는 제1편 제2장 제5절 2의 나. 회생절차에서의 특별한 취급 참조.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는 강제집행 등이 개시 당시 종료하지 않았을 때 의미를 갖는다. 개시 당시 이미 종료한 강제집행 등은 절차를 마친 것이므로 중지될 대상이 없게 된다. 강제집행의 종료시기는 유체동산·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원료를 신고하였을 때, 전부명령의 경우는 그 명령이 확정된 때이다.

회생절차 개시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채납처분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58조 제5항). 개시 당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중지의 의미가 없었다면 법원의 취소결정도 의미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제2편 제11장 제2절 압류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 참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절차가 중지·취소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대표이사,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취소되지 아니한다.

나. 중지된 강제집행 등 절차의 속행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 국세·지방세에 기한 채납처분 등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관리인과 국세·지방세 등의 징수권자에게만 신청권이 있고 일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제58조 제5항).

6.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 개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관계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즉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중단된 절차를 누가, 언제 수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이 필요한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기존 소송절차가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 소송절차와 회생절차 내의 간이·신속한 채권조사확정절차인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기간 내에 관리인 등이 행하는 시부인과 채권조사확정재판 등과의 관계가 문제 된다. 개시 당시 소송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개시 당시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도 문제 된다.

나. 개시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와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소송절차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어야 하므로, 이사회·주주총회 등의 무효·취소의 소 등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하지만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권한은 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무관한 소송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것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무관한 것에 따라 달리 취급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이 개시 당시 계속 중이었다면 즉시 수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이·신속한 절차인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거치고 그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계절차가 진행된다. 여기에서 기존 소송절차와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의 관계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다.항 참조.

한편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 예를 들어 공익채권, 환취권 등에 관한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절차 없이 이를 즉시 수계할 수 있다(제59조 제2항).

다. 기존 소송절차와 채권조사확정절차와의 관계

(1) 개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된 경우 또는 개시 당시 이미 중국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하면 실권된다. 따라서 기존 소송절차가 있었다라도 반드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채권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송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그에 대한 처리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그대로 확정된다. 따라서 개시 당시 계속되었던 소송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다.

한편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중국판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의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가 필요한지, ② 소송절차의 수계는 이의제기자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대상

채권자가 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개시 당시 회생채권자가 원고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원고로서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회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이다.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 이의가 제기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중단되었던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70조 제2항). 즉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 소송절차의 수계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자가 원고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같이 회생채권자가 피고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같은 청구취지로 반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인 경우

예를 들면, 회생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종국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진행 중이라거나 항소심·상고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서 즉 재심, 청구이의의 소, 상소로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만일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한다(제174조 제1항, 제2항). 제1심판결 선고 후 상소기간 만료일 사이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라면,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즉시 상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한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상소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상소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이의주장의 방법으로 하는 소송제기 또는 수계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74조 제3항).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제기 또는 수계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은 신고된 대로 확정된다. 소송제기 또는 수계가 되면 그 소송절차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역할을 한다.

즉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중국판결이 있는 경우, 위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한 후 그 이의자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제기나 수계신청이라는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이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이의대상 회생채권자 등이 수계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이의자에게 소송제기 또는 수계신청의 부담을 지운 이유는 집행권원 또는 중국판결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라. 채권자취소소송의 처리

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제113조, 제59조 제2항).

채권자취소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자와 수익자이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지만, 관리인이 회생

절차에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등 전체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권자를 수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표 2〉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절차의 관계

소송절차의 구분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개시 당시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채무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 - 관리인에게 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관리인이 수계할 수 없음
개시 당시 재산 관련 소송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	관리인 등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익하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절차 중단(제59조 제1항) - 관리인 등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표 등으로 이익제기한 후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제기 또는 소송절차 수계하는 방법으로 이익주장(제174조) - 소제기 또는 수계된 소송절차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역할
		집행권원 중국판결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절차 중단(제59조 제1항) - 관리인 등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표 등으로 이익제기(제161조, 제164조) - 이익대상 채권자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제172조) - 수계된 소송절차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역할
		집행권원 중국판결 없는 경우	
	관리인 등이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절차 중단(제59조 제1항) - 채권은 회생절차 내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 - 기존 소송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음 	
공익채권·환취권에 관한 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절차 중단(제59조 제1항) -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즉시 수계 가능(제113조, 제59조 제2항) 	
개시 당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절차 중단(제113조 제1항) -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즉시 수계 가능(제113조, 제59조 제2항)

7. 주주총회 · 이사회 권한의 제한

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주주총회 · 이사의 권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아니라면 주주총회는 중요한 조직법적 · 사단적 활동에 관한 사항인 자본감소, 신주 · 사채의 발행, 자본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정관변경 등에 대하여 결의할 권한을 가지고(상법 제329조의2, 제340조의2, 제360조의3, 제361조, 제374조 등), 이사 · 감사의 선임 · 해임권을 가진다(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409조, 제415조).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아니라면 이사회는 중요한 업무집행 사항인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금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등에 대하여 결의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93조).

나. 회생절차 개시 후의 주주총회 · 이사의 권한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됨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 이사의 권한은 상당 부분 제한된다.

(1) 주주총회 권한의 제한

주주총회의 권한 중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제62조),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목적물 · 대가 · 상대방 그 밖의 사항 등에 따라서 한다(제200조).

자본감소, 신주 · 사채발행, 자본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모두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가능하다(제55조 제1항). 정관변경은 회생계획에 정관변경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에는 회생계

획에 의하여 가능하고 법원의 허가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회생절차와 관계없는 영업목적의 변경, 본점의 이전, 공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제55조 제2항).

이사·감사의 선임·해임권은 회생계획 인가 시까지는 그대로 주주총회가 보유하지만, 회생계획 인가 시부터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선정될 자와 그 선임 등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제203조 제1항). 또한 채무자의 이사·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대표이사에 의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할 수 없다(제203조 제2항). 감사는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임기를 정하여 선임한다(제203조 제4항).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260조).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 일단 회생계획의 내용이 되면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그 수행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2) 이사회 권한의 제한

이사의 권한 중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금의 차입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제260조).

8. 공유관계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 채무자와 그 타인 사이에 그 재산권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69조 제1항). 이 경

우에 다른 공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69조 제2항).

9. 환취권

회생절차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0조).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소유권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점유권이나 사용대차·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목적물반환청구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실무상 관리인이 환취권을 승인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장 부인권

제1절 개요

채무자가 재정적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에게 호의적인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들로서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일수록 채무자와 결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거나 담보를 확보해 두려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많아진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를 보통 '사해행위'라고 한다)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와 같은 행위(이를 보통 '편파변제'라고 한다)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 또는 개별 채권자의 전략적, 이기적 행동을 무효화함으로써 회생의 발판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채권자취소권과 취지를 같이 하는 제도이지만, 부인권은 행사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대상행위, 요건, 행사의 방법 등이 채권자취소권보다 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 등은 채권자 일반에 대한 담보역할을 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변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인대상 행위가 된다.

제2절 부인권 종류

부인권의 유형은 ①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고의부인'(제100조 제1항 제1호), ②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 등(이하 '지급의 정지 등'으로 부른다)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위기부인'(제100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③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무상부인'(제100조 제1항 제4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기부인은 다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본지행위부인'과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비본지행위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채무자의 행위로 이익을 받는 자를 수익자라고 하는데, 고의부인, 위기부인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행위 당시 수익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즉, 선의인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익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다(제10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각 단서). 무상부인의 경우는 행위의 무상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일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여 보호되는 규정이 따로 없다.

수익자가 임원,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고, 본지위기부인의 위기시기를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1년 이내'(이와 달리 통상의 경우라면 60일 이내)로, 무상부인의 위기시기를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1년 이내'(이와 달리 통상의 경우라면 6월 이내)로 규정하여 부인권을 확대하고 있다(제101조).

부인권의 성립요건과 수익자 선의·악의의 입증책임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부인권의 성립요건과 수익자 선의·악의 입증책임

구분	근거규정	성립요건	수익자 선의·악의 입증책임
고의 부인	제100조 제1항 제1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수익자가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면 부인권 불성립
위 기 부 인	본 지 부 인	제100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후에 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관리인이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부인권 성립(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악의 추정)
	비 본 지 부 인	제100조 제1항 제3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1년 이내)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평등을 해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면 부인권 불성립 (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악의 추정)
무상 부인	제100조 제1항 제4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1년 이내)	수익자의 선의·악의 불문하고 부인권 성립

제3절 부인권의 행사

1. 행사방법

부인권은 관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한다(제105조 제1항). 부인의 청구는 간이하계 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약식절차인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

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여 정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제107조). 부인의 소보다는 부인의 청구가 인지대에서 유리하고 간이·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은 부인의 대상행위가 되는 채무자 행위의 상대방, 즉 수익자가 일반적이지만, ①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② 전득자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제외), ③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로부터 지위를 넘겨받은 전득자도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제110조).

한편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취소소송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된다(제113조 제1항). 이 경우 관리인이 채권자 등 전체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제113조 제2항).

2. 유의사항

채권조사기간 내에 관리인 또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나중에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확정된 채권의 내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그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였다면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저당권설정행위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됨을 이유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만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채권의 내용은 그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고 나중에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관례는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등 참조).

3. 행사의 시기적 제한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부인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행사할 수 없다(제112조).

또한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다(제111조).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1. 원상회복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제108조 제1항).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무상부인의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제108조 제2항).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부인권이 성립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2. 상대방의 지위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②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③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④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과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08조 제3항).

또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 즉 상대방이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을 이행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 또한 원상회복되고 상대방은 원상회복된 채권을 부인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추후보완신고할 수 있다(제109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원상회복시켜야지만 그 후에 채권자 자신의 채권을 회복할 수 있고, 회복한 채권의 추후보완신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편파변제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권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후에도 편파변제로 지급받은 금원을 관리인에게 상환하고 자신의 채권을 원상회복하여 추후보완신고할 수 있다.

제6장 상계의 제한

제1절 개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2조 내지 제499조). 수동채권, 즉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상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회생채권자가 100만 원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5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50만 원에 대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면, 회생채권자는 수동채권, 즉 자신이 부담하는 5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계권 행사로 쌍방 대등액인 50만 원의 채무가 소멸한다.

그런데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모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변제받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관리인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다.

제2절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관리인이 채무자의 채권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1조, 제131조).

수동채권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라면 보통 상계를 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하므로, 관리인이 먼저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다.

제3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1. 상계권 행사의 시기상 제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 가능하다(제144조 제1항). 이는 채무자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쌍방의 채권 액수가 신고기간까지 정해지도록 하여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관리인을 상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부당한 상계권 행사의 금지

가. 위기상태 이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채무부담으로 수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①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② 지급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다만 ㉠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 회생절차 개시 시점 및 파산선고 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제외)에는 상계

하지 못한다(제145조 제1호, 제2호).

즉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위기상태 이후에 채무자와 거래하여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동채권을 발생시킨 경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자신들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기상태 이후 발생한 수동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회생채권자가 100만 원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위기상태 이후 회생채권자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경우, 회생채권자는 100만 원의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10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이는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을 미리 변제받는 결과를 방지하고 채무자가 수동채권을 회수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위기상태 이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신규취득하여 자동채권으로 사용하는 경우

①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회생회사)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회생회사)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다만 ㉠ 그 취득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 회생절차 개시 시점 및 파산선고 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제외)에는 상계하지 못한다(제145조 제3호, 제4호).

즉 채무자(회생회사)의 위기상태 이후에 채무자(회생회사)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양수하는 방법 등으로 신규취득한 경우, 채무자(회생회사)의 채무자는 신규취득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갑이 채무자(회생회사)

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이 채무자(회생회사)의 위기상태 이후 제3자로부터 액면 100만 원의 회생채권을 10만 원에 염가로 취득한 경우, 갑이 액면 100만 원의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채무자(회생회사)에 대한 100만 원의 채무와 상계하지 못한다. 이는 채무자(회생회사)의 채무자가 염가로 회생채권을 취득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회생회사)가 가지는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7장 회생계획 인가결정

제1절 개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이나 그 기일에서 바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42조 제1항). 실무상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치기 전에 법원이 미리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감안하여 사전 검토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한다.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중 주로 문제 되는 것은 ①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③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④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각 채권자 동의 시는 예외) 등이다(제243조 제1항).

회생계획의 가결요건은 ①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②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예외적으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는 4/5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③ 주주의 조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이다(제237조). 위 각 조의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46조).

제2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1. 효력의 발생시기와 범위

가.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제246조).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인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다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인가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인가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미친다(제250조 제1항).

하지만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②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제250조 제2항). 예를 들면,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위하여 연대보증하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공익채권자, 환취권자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자가 변제기 유예에 동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인가결정의 효력에 따라 공익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재는 공익채권자와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있었음을 보고하는 의미를 가짐에 그친다.

2. 면책 및 담보권의 소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채무자의 재산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되지 않는다(제251조).

담보권 말소는 법원의 직권 말소촉탁에 의한다(제24조 제2항). 실무상으로는 관리인이 법원에 담보권 말소허가신청을 하고, 말소허가를 받은 다음 다시 법원에 말소촉탁신청을 하는 방법을 취한다. 회생계획에 담보권 존속규정을 두는 경우는 담보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권리의 변경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제252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효과, 기한유예의 효과, 출자전환의 효과 등이 발생한다.

주주에 대하여는 주식의 소각·병합 등 자본감소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주주의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거나 변경된다(제264조 제1항).

4.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당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256조 제1항).

이와 달리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실무상 회생계획에 징수유예 등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중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5. 회생채권자표 등 기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야 하고(제249조), 그 기재는 인가결정이 확정되는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55조 제1항).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 종결 후에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제8장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제1절 회생절차 종결결정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83조).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 기업과 같은 자본구성과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는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때를 의미한다.

제2절 회생절차 폐지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로부터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와 회생절차 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고, 각 폐지사유는 다음 면의 <표 4>와 같다.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때, 회생계획안이 법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되더라도 심리·결의에 부칠 것이 못되는 때,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때 등이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도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으나(제287조),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

인가 전 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임의적이지만(제6조 제2항), 인가 후의 폐지는 파산선고가 필요적이므로, 법원은 파산의 원인되는 사실

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표 4〉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종류와 폐지사유

구 분	근거규정	폐지사유
인가 전 폐지	제286조 제1항	①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되지 못한 때 ②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 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③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을 때에 그 서면결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제286조 제2항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제287조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
인가 후 폐지	제288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

제3절 종결 · 폐지의 효과

1.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가. 효력의 발생시기

회생절차 종결결정은 공고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효력발생과 동시에 확정된다(제13조).

나. 관리인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

회생절차 종결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돌아간다.

관리인이 당사자로서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당연 중단되고 채무자가 이를 수계한다. 다만 부인권의 행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권한이므로 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관리인의 임무종료로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는 종료되고 채무자가 수계할 수 없다.

다. 상법 등에 따른 주주총회·이사회의 권한 행사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채무자의 자본감소, 신주·사채 발행, 자본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조직변경, 해산,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 등이 상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는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과 다르다.

또한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이사·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는 이사·대표이사의 선임이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다르다.

라.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의 해소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금지되는 것과 다르다.

2. 회생절차 폐지의 효과

가. 효력의 발생시기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확정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제기가 가능하고(제290조),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폐지결정의 확정이 저지된 상태에서는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관리인의 지위도 유지된다.

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효과

회생절차 폐지확정으로 회생절차는 종료하므로, 관리인의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의 해소 등의 효력은 대부분 회생절차 종결의 효력과 같다.

회생절차 폐지 후에 건립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제6조 제6항). 또한 파산선고의 효력에 따라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제348조 제1항).

제9장 간이회생절차

제1절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지난 2014. 12. 30. 공포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였다(제293조의2 내지 제293조의8). 종래 재건형 도산절차는 대규모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정리절차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회사정리절차를 기본으로 하는 회생절차로 일원화되고 화의절차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위와 같은 비판을 수용하여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제2절 간이회생절차의 내용

1.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간이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로서,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는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제293조의3). 따라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간이회생절차의 특칙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된다.

2.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서(제293조의2 제2호),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금액은 30억 원이다(시행령 제15조의3).

절차적 측면에서 간이회생절차가 회생절차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를 규정한 점이다.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도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행하면 된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가결 요건을 모두 유지하면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및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을 완화하였다.

제 2 편

단계별 · 분야별 관리인의 역할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제1장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 · 권한
- 제2장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대표자의 역할
- 제3장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의 역할
- 제4장 재산상황조사와 관리인의 역할
- 제5장 채권 등 목록 제출 · 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 제6장 채권조사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 제7장 보고 집회 · 대체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 제8장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제9장 심리 · 결의 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 제10장 회생계획의 수행 · 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 제11장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리인의 역할
- 제12장 M&A와 관리인의 역할
- 제13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관리인의 역할
- 제14장 회생절차의 폐지와 관리인의 역할

제1장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권한

제1절 개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회피하던 경향에서 탈피하여 재정적 파탄의 초기 단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노하우를 살려 회생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절 관리인의 선임

1.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 제3자 관리인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하되,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대표자(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만 ①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의 이사 등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② 채권자협의회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제74조 제1항, 제2항).

실무상 대표자심문이나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기존 경영자의 자금유용, 재산은닉 등이 드러나 개시결정과 동시에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고,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등에 의해 기존 경영자의 자금유용, 재산은닉 등이 밝혀져 회생절차 진행 도중에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한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 제3자 관리인의 지위는 차이가 없다. 다만 제3자 관리인은 기존 경영자나 직원들이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반발하여 업무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보다 더 큰 포용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2. 관리인 불선임 결정

채무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규칙 제51조가 정하는 자(재정적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의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 영업력 및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절차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기 회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등)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제74조 제3항, 제4항).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해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실무상 ‘법률상 관리인’으로 칭하고 있다.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채무자의 대표자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변경되면 그와 같이 변경된 대표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3. 임기·보수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경우 실무상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는 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3자 관리인의 경우 임기를 정하여 선임하는데, 통상 회생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 때까지)로 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2년의 임기를 새로 정하되, 채무자의 결산기, 실적평가에 필요한 기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관리인의 보수는 법원이 동종업종의 보수실태, 기존의 보수체계와 채무자의 재정상태, 관리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실무상 종전 보수보다는 낮게 책정한다(제30조, 준칙 제1호 제5항). 법률상 관리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수결정을 하지 않는데, 법률상 관리인은 자신의 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비절감, 고통분담 등의 차원에서 정관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자진하여 보수를 삭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① 관리인이 그의 경영 수완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예정한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때, ② 관리인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당해 관리인의 최초 취임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된 때, ③ 관리인이 능동적으로 신규 자본을 모색·유입하거나 다른 우량기업과 인수·합병을 이룩함으로써 채무자 회생에 현저한 기여를 한 때에 관리인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특별보상금의 액수는 채무자의 규모와 재정상황, 기여 등을 종합하여 3억 원을 한도로 정하되, 이에 갈음하여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 수 있다(제30조, 준칙 제1호 제5항).

4. 공동관리인·관리인대리

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단독으로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하여야 한다(제75조 제1항).

관리인은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관리인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인대리를 선임

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관리인대리는 관리인 대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76조).

제3절 관리인의 지위·권한

1. 관리인의 지위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회생절차 내의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관리인이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82조).

또한 관리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제56조).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제89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제257조).

관리인의 권한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관리인이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관리인과 채무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고(제61조 제2항),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도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제62조). 또한 실무상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차제 등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은 사전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1조 제1항). 만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고(제61조 제3항, 제62조 제5항),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제648조 제1항).

3. 소송행위의 당사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제78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는데,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그 소송의 원·피고가 되고(제59조 제1항, 제2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것은 우선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절차를 거치게 된다.

4. 법원의 업무보조

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규칙 제8조).

관리인의 업무보조는 주로 송달·통지업무, 신고서 접수업무, 집회 시의 출석현황 확인업무 등이다.

제4절 사업경영 측면에서 관리인의 업무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채무자의 조직장악, 운영자금의 조달, 책임경영, 투명경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에게 유의사항, 관리지침 등을 고지하는데, 관리인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표 5〉 관리인이 유의할 사항(예시)

1.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니라 전체 이해관계인 집단을 관리 조정하여야 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주주나 회사의 임직원,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아니 되며 모든 이해관계인의 형평과 공정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전적으로 관리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자기의 경영 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힘써야 하고 그 경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법원은 채무자의 경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3.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 등에 의한 권한침해나 부당한 간섭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임원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서도 아니 됩니다.
4.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보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법률상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자의 영입이나 타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표 6〉 채무자 관리인에 대한 지침(예시)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이 결정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밀 실사를 개시하겠다는 취지일 뿐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는 앞으로 실시될 실사 결과와 채무자 자체의 자구인지 및 자구노력, 채권자의 양보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임직원은 향후 법원 및 관리인이 회생절차 과정에서 취할 구조조정 등 제반 조치에 따르고 회사의 회생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임을 이 법원에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구의지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고 공허한 다짐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관리인은 공적인 수탁자로서 회생절차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자구의지가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아래 열거하는 기본적 사항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가. 채무자 내부에 구조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
 - 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등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개인의 부정한 이익에 탐닉하여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할 것
 - 다. 채무자의 조직과 사업 현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그 객관적인 능률성과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에 반영할 것
 - 라. 채무자의 회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채무자 전반에 걸쳐 실시할 것
 - 마. 채무자의 재무 현황과 사업 전망을 엄정하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할 것
4. 관리인의 노력과 적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자구노력이 미흡한 결과로 나타날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관리인은 이와 같은 법원의 방침을 회사 내부에 널리 알려 임직원들로 하여금 향후 회생절차의 방향을 이해하게 함과 아울러 회사 재건의 의지를 다지는 새로운 계기로 삼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대표자의 역할

제1절 개시신청서 제출 직후

1. 절차 진행

실무상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접수 후 보전처분을 고지받으면서 처음으로 주심판사와 주무 관리위원을 대면하게 된다.

법원은 보전처분 이전이라도 신청서에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보정을 명하기도 한다.

관리위원회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기 시작한다.

2. 대표자의 역할

가. 채무자의 시급한 현안 전달

대표자는 채무자에게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이를 주심판사와 주무 관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예를 들면, 영업용자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임박하였다거나, 채무자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 직전이라거나, 채무자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사정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주요 채권자와 협의 하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매각주간사, 인수자 등을 선정하여 M&A를 추진하고 있었다면, 기존 M&A 절차를 승인하여 회생절차에서 계속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에 이를 전달하여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대한 협조

채무자는 주무 관리위원에게 회사의 규모에 따라 주요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의 명단, 주소, 주무담당자 및 그 연락처를 알려주어 관리위

원회가 신속하게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파산과의 연락처 숙지 및 채무자의 연락처 전달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연락할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파산과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알아두고, 파산과에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라. 채권자 명단의 신속한 제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에게 개시결정문을 송달하여 채권신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개시 전이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신청 직후 채권자의 명단과 주소, 이메일, 팩스번호 등을 기재한 일람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마. 신청서 내용의 신속한 보정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아래 <표 7>과 같다. 채무자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신속히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7>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기재사항

주요사항	상세내용
① 채무자의 업무 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상업등기부 등본,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채무자의 사업경력서), 본점·지점·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채무자의 조직도, 회사인 채무자의 경우 사원명부·주주명부·주요 임원의 이력서 -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단체협약서·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출자 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②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한다. 또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회계감사인인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의 것을 제출한다)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주요사항	상세내용
②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주소·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모사전송기번호 등을 다액채권자의 순으로 기재한다) - 채무자명부(이름·주소, 채무의 종류·금액을 기재한다) -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한다) -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각종 수익성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표·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수출실적표·L/C 내도현황표·수주잔고일람표
④ 경제성에 관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산정표 - 향후 사업계획서·추정손익계산서·수주계획표·추정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⑤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

제2절 보전처분

1. 절차 진행

가. 법원의 사전 연락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1~3일 내에 보전처분을 발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없음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남용한 의심이 드는 경우 등에는 대표자심문 등 추

가적인 조사를 한 후 발령하기도 한다.

채무자가 신청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신속히 보전처분을 발령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법원은 미리 전화 등으로 대표자나 신청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출석 일시와 장소를 알려준다.

나. 보전처분의 고지

주심판사가 대표자에게 보전처분을 고지하고, 주무 관리위원회도 참석하여 보전처분의 내용·효과, 대표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보전처분은 ① 변제금지, ② 처분금지, ③ 차제금지, ④ 임직원 채용금지 등으로 구성되고, 처분금지 대상물건의 기준액수는 채무자의 매출상태에 따라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으로 정해진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표 8〉 법원의 보전처분(예시)

<p>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 내지 4.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0. 0. 0.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2.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인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3. 명목 여하를 막론한 차제(어음할인 포함)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

2. 대표자의 역할

가. 보전처분 고지 당일

대표자는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여 보전처분을 고지받고 파산과에서 등본을 수령하여야 한다. 주요 임원진, 경리담당자가 함께 출석하기도 한다.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법원사무관등이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을 관장하는 관공서에 보전처분의 등기·등록을 촉탁하여 등기·등록이 되어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또는 보전처분 신청서에 그 목적물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법원에 알려야 한다. 보전처분의 대상은 부동산, 차량, 선박, 상호,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다. 채무자의 것이어야 하고, 대표자 개인의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보전처분 내용·효과의 숙지

채무자는 변제·처분·차재·임직원 채용행위를 할 수 없다.

변제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행위를 금지할 뿐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저지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위 금액 이하로 나누어 처분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허용되는데, 통상의 물품납품계약에 따라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행위는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지만, 물건을 염가에 처분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재금지 보전처분은 단순한 금전차용뿐만 아니라 융통어음의 발행, 어음할인 등도 금지한다.

다. 사전 허가신청

채무자는 변제·처분·차재·임직원 채용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은 사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급박한 사정이 있어 서면신청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법원에 구두신청을 하면서 추후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야 한다.

허가대상인지 아닌지 의문이 들 때는 미리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일단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나중에 허가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 허가신청을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대표자의 보전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가. 관리인 선임 결격사유

대표자의 보전처분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아서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보전처분에 위반한 채무자의 행위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무효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고, 부인권 대상행위가 되어 원상회복될 수 있다.

대표자 개인은 보전처분 위반행위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는데(제179조 제1항 제12호), 대표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보전처분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3절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

1.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파산 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44조, 제45조).

중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진행되고 있는 특정 절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중지를 명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강제집행의 중지와 새로운 강제집행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다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개별집행이 예상되는 때에 유용하다.

2. 중지명령 등이 발령된 경우 대표자의 역할

가. 중지명령

중지명령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중지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법원이 그 이후의 집행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절차가 중지된다. 단지 중지명령이 발령된 것만으로는 중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중지명령 정본의 제출을 간과하지 않도록 한다.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중지명령 정본을 제출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미 이루어진 집행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유체동산·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한 때나 배당절차가 끝난 때,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된 때에 강제집행이 종료된다.

나.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46조 제2항). 따라서 우편송달될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일자에 파산 과정에서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는 것이 좋다.

또한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제46조 제1항),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에 채권자의 명단, 주소가 누락되었다면 이를 조속히 보완하여 제출하고, 채권자가 다수여서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때에는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비용예납명령

1. 절차 진행

법원은 실무상 조사위원 기준보수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후 절차비용 등을 더한 금액의 예납을 명한다. 조사위원 보수기준은 통상 조사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 9>와 같이 정하여진다(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제42조 제1호).

<표 9> 조사위원 보수기준표

자산총액	기준보수	자산총액	기준보수
50억 원 미만	1,500만 원	1,000억 원 ~ 3,000억 원	5,700만 원
50억 원 ~ 80억 원	1,800만 원	3,000억 원 ~ 5,000억 원	7,700만 원
80억 원 ~ 120억 원	2,700만 원	5,000억 원 ~ 7,000억 원	9,200만 원
120억 원 ~ 200억 원	3,200만 원	7,000억 원 ~ 1조 원	10,000만 원
200억 원 ~ 300억 원	3,900만 원	1조 원 ~ 2조 원	11,000만 원
300억 원 ~ 500억 원	4,500만 원	2조 원 이상	12,000만 원
500억 원 ~ 1,000억 원	5,000만 원		(1조 원당 1,200만 원씩 추가)

2. 대표자의 역할

채무자는 정해진 납부기한에 비용을 납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면 법원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비용을 제3자로부터 빌려서 납부하는 것은 차체에 해당하므로 보전처분의 효력에 따라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절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1. 절차 진행

가. 대표자 심문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실무상 보전처분 고지와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의 일시·장소를 통지하기도 하고 별도로 전화 또는 팩스로 통지하기도 한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시 채무자의 경리담당자,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 주거래은행, 주요채권자, 대주주 등을 함께 심문하기도 한다.

실무상 주심판사가 심문사항이 기재된 파일을 이메일로 대표자 또는 신청대리인에게 미리 송부한다.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으로서 심문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고 주무 관리위원도 참석한다. 심문기일이 현장검증기일과 함께 지정된 경우에는 검증 장소에서 심문을 진행하기도 한다.

심문사항은 ① 대표자 등의 인적 사항, ② 채무자의 개요, ③ 계열회사관계, ④ 자본 및 자산과 부채, ⑤ 영업 및 운전자금조달, ⑥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요건, ⑦ 자구노력, ⑧ 회생계획 수립방안·변제조건 등으로 구성된다.

나. 현장검증

법원은 본점 또는 공장, 사업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도 한다. 주로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으로서 진행하고 주무 관리위원이 참석한다.

공장검증 시 공장의 가동현황, 설비자재의 유무 및 관리현황, 작업환경, 생산공정, 종업원의 작업태도, 재고자산, 복지후생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근로자대표 등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

2. 대표자의 역할

가. 대표자 심문 시

대표자는 주심판사로부터 송부받은 심문사항 파일에 답변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주심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답변사항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도표, 그림 등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도 좋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나 보정서에 이미 기재한 내용이더라도 심문 결과가 기재된 심문조서는 별개의 증거자료가 되므로 다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대리인을 통하여 답변사항이 작성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심판사가 답변사항을 검토한 다음 필요하면 추가 심문사항을 대표자 또는 신청대리인에게 파일로 송부하기도 한다.

대표자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일시·장소에 출석하여야 하고, 경리담당자, 대주주, 주요임원진 등이 함께 출석할 수도 있다.

나. 현장검증 시

채무자는 현장검증기일 전에 파산과에 약도,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당일 법원이 쉽게 현장검증 장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현장검증기일에는 공장의 가동상태, 근로자 등의 태도, 장부의 보관·기재상태 등을 보게 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준비하여

야 한다.

대표자는 회사 현황을 소개하는 간단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다.

제6절 절차비용 및 운영자금의 조달

1. 개요

채무자는 법원의 비용예납명령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업행위를 통한 자금 마련이 곤란할 경우에 신규자금 차입, 비영업용 자산 매각, 가압류·압류된 매출채권의 회수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부채를 증가시키거나 채권자의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2. 대표자가 검토할 사항

보전처분 이후 차재는 금지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대표자 개인자금을 채무자가 빌리는 경우, 대표자가 제3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시 채무자가 빌리는 경우도 채무자의 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과도한 고율의 사채를 빌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회생에 악영향을 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보전처분 이후에는 비영업용자산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각할 수 있다. 비영업용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아 담보권이 소멸되어야 사실상 거래가 성사될 것이므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추심명령은 법원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중지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중지된 가압류 등에 대하여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제4항, 제45조 제3항). 중지된 가압류 등에 대하여만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적이 없다면 이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강제집행의 취소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루어지고, 취소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강제집행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절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선임

1. 절차 진행

회생절차에 대한 채권자의 능동적 참여는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한 채권자협의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에게 구조조정담당임원을 선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법원이 추천하고, 보수는 채무자의 규모와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며, 임기는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날 또는 회생계획 인가 후 감사가 선임된 날까지로 한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채무자는 구조조정담당임원 후보자와 업무, 보수, 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 후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대표자의 역할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조언, 채무자의 자금수지상황에 대한 점검,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금수지상황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자는 구조조정담당임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다.

제8절 전자소송의 준비

1. 개요

회생사건은 신청인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전자기록화하고 있고, 신청서가 종이로 제출되었더라도 관리인은 회생사건의 절차관계인으로서 전자소송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리인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게 된다.

2. 대표자의 역할

대표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이용방법을 숙지한 다음,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고 소속사용자를 지정하는 등으로 전자적 제출과 송달을 비롯한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서류의 전자적 제출방식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첨부방식, 빈칸채우기 방식, 첨부 + CSV 파일방식이 있는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해당 신청서 제출방식에 맞추어 제출한다.

전자적 송달은 절차관계인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되,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자송달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송달문서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9절 개시신청의 취하

1. 개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제48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신청 취

하가 불가능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이라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가 가능하다(제48조 제2항).

2. 대표자가 검토할 사항

대표자는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조사위원 보수 등 다액의 절차비용이 소요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바로 채무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평가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장래 매출을 전제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다수 채권자가 동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대표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개시신청 취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사기회생죄를 범한 경우, 예를 들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643조 제2항, 제1항).

제3장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의 역할

제1절 절차 진행

법원은 미리 대표자 또는 신청대리인에게 개시결정 일시에 맞추어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또는 대체조치의 이행기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함께 정한다. 실무상 조사위원·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기한도 정하고 있으므로, 개시결정 당일에 사건의 진행일정표(양식 1)가 정하여진다.

법원은 개시결정 당일 관리인에게 선임증을 수여하고(관리인 불선임 결정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됨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시결정의 의미 및 향후절차, 관리인 유의사항, 관리지침 등에 관하여 안내한다.

통상 개시결정 당일 조사위원이 함께 선임되므로, 관리인은 조사위원으로부터 장차 행해질 채무자 재산상태의 조사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을 안내받는다.

제2절 개시결정 당일 및 직후 관리인의 역할

1.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법원에 대한 조치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강제집행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강제집행을 당연히 중지시키는 법정사실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절차가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지만, 집행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집행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다.

집행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음을 간과하고 집행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또는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인감신고서 등의 제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므로, 관리인은 촉탁에 필요한 인감신고서, 관리인 개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양식 2).

3. 관리인 취임식 실시, 회생절차 전담직원의 배치·교육, 관리인 인감신고, 통장 개설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한 법원의 절차를 마친 다음 채무자 회사에서 취임식을 한다. 이러한 절차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단순히 기존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법원이 선임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관리함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

회생계획 인가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회생계획 수행에 여러 해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가능하면 회생절차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각종 허가신청업무, 보고업무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인감과 관련하여서는 관리인이 기존 대표자의 인감을 거래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즉시 새로운 관리인 인감을 조제하여 앞으로의 거래행위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인감을 불필요하게 많이 조제하면 관리에 어려

움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은 채무자의 거래규모 등에 따라 가능하면 즉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개시결정 이후의 모든 수입 및 지출내역이 그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인은 관리인 취임식, 관리인 인감조제, 신규 예금계좌 개설 등을 마친 다음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양식 3).

4. 송달업무의 보조

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규칙 제8조), 관리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명단 및 주소일람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송달을 위해 이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법원이 관리인으로부터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적힌 봉투를 미리 교부받아 송달을 실시하기도 한다. 기일의 통지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거나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고지하거나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 등 간이한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67조, 민사소송규칙 제45조 제1항), 채권자 명단에는 업무담당자의 이메일·팩스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개시결정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 외에도 관리인 명의로 작성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안내서 1부(양식 4)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서 2부(양식 16), 접수증 1부(양식 20), 위임장 2부(양식 5)를 송달서류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관리인은 이러한 문건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인 명의로의 위와 같은 각종 서류양식은 채무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채권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신고서와 위임장을 2부씩 송달하는 이유는 법원이 채권신고 접수 시 채권자로부터 신고서 부분 1부를 더 받아서 채무자에게 채무자 보관용으

로 전달하기 위함이고, 접수증 1부를 송달하는 이유는 법원이 채권신고 접수 시 채권자가 지참하여 온 접수증에 확인증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관계인집회 당일 회생채권자 등이 지참한 접수증을 통하여 출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역할

1. 개시결정 등의 내용 숙지

개시결정의 결정서에는 채권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함께 기재되므로, 관리인은 위 기간을 명심하여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종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 보고업무에 대한 결정서에는 관리인이 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법원에 보고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제3편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보고업무 참조.

2. 개시결정에 따른 법률효과 숙지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기존 거래관계와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권 행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권 행사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관리인은 해제·해지권 행사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해지권

을 포기한 것으로 확정되므로 기간을 지켜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만일 위 기간 내에 선택권 행사가 곤란하면 미리 법원에 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다(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는 실무상 법원(관리위원)의 허가사항이다(제61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실무상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계약이행(유지) 선택보고’라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계약이행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사항이 된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제1편 제4장 제2절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 참조.

나. 기존 소송관계의 처리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중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소송은 일단 회생절차 내의 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대상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기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의대상 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 즉 재심, 상소, 청구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계속 중인 소송절차가 있다면 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이의의 주장이나 수계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174조 제4항),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제1편 제4장 제2절 6.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 참조.

다. 회생채권의 변제금지과 예외적 조기변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회생채권의 변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131조). 다만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제132조 제2항).

회생채권의 조기변제는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관리인은 적절한 경영판단을 통해 특정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회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변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채무자 재산의 확보**가. 부인권 행사 여부 검토**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채무자의 행위 중에 무상행위 등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여 부인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대표자의 과거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부인권 행사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이 경우 관리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관리인 해임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또는 부인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지급 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으므로(제111조, 제112조), 부인권 행사의 시기적 제한도 유의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고채권이 부인권 행사로 소멸될 것이라면,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전에 미리 부인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해당 채권을 시인하고 다른 채권자들도 이의하지 아니하

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면 그 후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부인대상이라면 관리인은 시부인 단계에서 해당 담보권을 부인하여야 한다.

또한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 권리를 보전함으로써 장차 부인권 행사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조사확정재판 신청 여부 검토

과거 이사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책임재산이 있는지 조사하여 조사확정재판 전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받아둬으로써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정 후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어야 한다(제114조).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자기 또는 동료의 과거 행위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것이라 주저될 수도 있지만, 조사위원 조사결과 기존 이사 등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리인은 즉시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의 제기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의 시간·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인이 해당 이사로부터 위법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받거나 퇴직금의 포기를 유도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제받은 등의 방법을 택하고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리인은 미리 채권자들의 양해를 얻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에 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임원이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가공매출 및 가공재고의 계상, 채무의 과소계상, 대손금의 미계상, 자산평가익의 과대계상 등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세법상 과세표준을 과대 신고하거나 결손금을 축소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채권자들에 대한 안내 철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인은 채권자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권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회생채권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빠짐없이 회생절차 개시일자, 채권 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을 우편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채권자들이 그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5. 자구노력 등의 이행

관리인은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소통을 통하여 핵심 인력의 보존, 사기 진작, 비리 근절 등 조직장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명심하여 투명경영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관리인은 사업경영에도 유의하여 채무자의 매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의 절감에도 힘써야 한다.

구조조정을 통한 채무자의 매출액, 영업이익의 회복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평가는 회생계획안 자금조달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상황조사와 관리인의 역할

제1절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조사업무

1. 개요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고(제90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91조),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②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 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④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92조).

조사위원은 위와 같은 조사사항 외에도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산정한 조사결과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제1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7조).

실무상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개시결정일부터 2~3월 내의 같은 일자까지로 정하여지고, 조사위원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관리인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2.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계속기업가치의 산정과 관련하여, 조사위원은 보통 10년의 회생절차기간 동안 추정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고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여 총영업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운전자금투자 및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 등을 차감하여 운영

업현금흐름을 산정한 다음, 이를 채무자 회생의 위험을 반영한 적정할인율로 할인하여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한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보통 10년간 추정기간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와 그 이후 잔존가치의 현재가치로 구성된다. 계속기업가치는 이와 같이 산정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비영업용자산의 처분대금'을 합하여 산정된다.

계속기업가치 산정 시 조사위원은 시장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 관련 분야 산업분석 및 향후 시장전망, 해당 기업의 과거 5년간 영업실적, 업종·영업의 특수성,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구계획 등을 고려한다.

〈표 10〉 계속기업가치 산정

① 총영업현금흐름 = 영업이익 - 법인세 등 + 감가상각비 +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자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② 순영업현금흐름 = 총영업현금흐름 - 유형고정자산투자 - 운전자금투자 - 기타 영업 관련 투자
③ 계속기업가치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잔존가치의 현재 가치) + 비영업무용자산의 처분대금

3. 청산가치의 산정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청산대차대조표는 채무자가 제시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 회계담당자의 진술청취,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대한 조회 등의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조사위원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역별·용도별 낙찰가율(해당 지역의 동일 용도의 최근 수개월간 평균 낙찰가율)을, 기계장치·공기구에 대하여는 최근 수년간 취득금액 대비 평균 매각가율을 각 적용하고,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선급비용, 재고자산, 무형자산, 보증금, 자회사 투자

자산 등에 대하여는 자산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회수 또는 청산비용, 현실적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한다.

제2절 관리인의 역할

1. 조사위원의 재산상태 평가 시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면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은 채무자 등에게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서류·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제88조, 제7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보고·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649조 제3호, 제4호). 또한 관리인이나 채무자의 대표자가 부당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 평가가 불가능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

관리인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이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경우에는 개시결정 후 신속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사위원이 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산정 시

조사위원이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에 관리인은 토지나 건물 등의 유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한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법원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고, 그 외의 유형자산, 매출채권·재고자산 등 유동자산에 대하여도 청산에 따른 손실과 비용이 적정하게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산정 시

관리인은 조사위원이 산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적정할인율과 고정성장률이 적정한지, 비영업용자산의 처분대금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신규자금 차입의 규모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인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적 수탁자임을 명심하고, 매출의 회복시기나 회복률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은지, 추정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과다하지 않은지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하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최근 사업실적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연 조사위원의 향후 매출액 예측이 합리적인지, 채무자가 제시하는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자산·부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권자협의회를 위한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채권자협의회가 당해 회계법인을 통해 조사위원의 자산·부채 평가 및 향후 매출추정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도 한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변제시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재무상태, 영업상태를 과장하여 제시하기 쉽다. 그러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실적보다 과장된 것이라면 그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될 수 있고(제231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은 특히 주의를 요한다(제6조 제1항, 제288조).

4.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

관리인은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표제만 바꾸어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내용이 채무자의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여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관리인이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와 다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제5장 채권 등 목록 제출 · 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제1절 절차 진행

1.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관리인은 개시결정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147조 제1항). 관리인은 일단 제출된 목록을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제147조 제4항).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 출자지분은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제151조).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하면 실권되고, 주주는 실권되지는 않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2.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주 · 지분권자의 신고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는 개시결정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 · 주식의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관리인이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인이 직원을 통하여 법원의 신고서 접수업무를 보조한다.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제152조 제1항),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53조). 이를 추후보완신고라고 한다.

이미 신고를 마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

경하는 경우(예를 들면, 채권액수를 늘리거나 회생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후보완신고와 마찬가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제152조 제4항).

만일 신고를 마친 채권이 양도되거나 상속되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제154조, 규칙 제58조, 제55조, 제56조)양식 21].

제2절 채권 등 목록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1.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분류 및 주주명부의 확인

관리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그중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하여만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세채권도 회생채권의 하나가 되므로 누락하지 말아야 하고,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등기·등록, 채권양도 통지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주에 대하여는 주주명부를 통하여 주주의 인적 사항과 보유주식 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과 주주에 대하여는 제1편 제2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참조.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목록의 기재사항

회생채권자의 목록에는 ①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②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③ 의결권의 액수, ④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제147조 제2항 제1호).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는 ① 회생담보권자의 성명과 주소, ② 회생담

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③ 의결권의 액수가 기재되어야 한다(제147조 제2항 제2호).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에는 ① 주주·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가 기재되어야 한다(제147조 제2항 제3호).

실무상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은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양식 6], ②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총괄표[양식 7], ③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양식 8], ④ 회생담보권자 배분 상세명세서[양식 9], ⑤ 회생채권자의 목록 총괄표[양식 10], ⑥ 회생채권자의 목록[양식 11], ⑦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양식 12], ⑧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양식 13], ⑨ 벌금·조세 등의 목록 총괄표[양식 14], ⑩ 벌금·조세 등의 목록[양식 15] 등으로 구성된다. 미확정구상채무 또는 미확정보증채무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의 내용, 기간, 액수 등이 기재된 상세명세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3. 목록 작성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그 기재 내용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제166조 제2호), 관리인은 권리의 존부와 귀속 및 내용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회생채권자가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목록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원인을 목록 자체로 특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다른 자료를 보완하거나 대조하여서야 비로소 특정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인이 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목록 기재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관리인은 의결권 액수의 평가에 관하여도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만일 관리인이 의결권의 액수를 과도하게 평가하여 기재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기재대로 의결권이 확정되고(제166조), 추후 목록에 기재된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제187조).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목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는 미리 법원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양식 6]

회생담보권, 회생채권(담보권 중 회생채권 인정액 포함)의 건수, 금액 등을 기재하고,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벌금·조세 등 채권, 주식·출자지분의 수와 금액도 기재한다.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는 이어서 첨부될 각각의 목록총괄표와 건수, 금액 등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총괄표[양식 7]

‘목록번호’란은 회생담보권자 순서에 맞추어 담보권 1, 담보권 2 등으로 표시한다. 회생담보권자별로 채권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담보권 1-1, 담보권 1-2, 담보권 1-3, 담보권 2-1, 담보권 2-2 등으로 순서에 맞추어 표시하고, 회생담보권자별로 액수의 소계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담보권자’란은 채권자 명의를 정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가나다(대표이사 홍길동)’, 개인의 경우는 ‘홍길동(가나다 유통)’,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서초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서초지사)’ 등으로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홍길동 외 1명’으로 표시하여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었는지 파악하기 쉽게 하고 채권조사과정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담보권 종류 및 목적물’란에는 담보권의 종류와 목적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담보권의 종류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등록질 등을 기재하거나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리스채권(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된 경우), 질권, 유치권 등을 기재하고, 채권최고액(근저당권, 근질권의 경우), 설정순위, 설정일자도 함께 기재한다. 목적물은 등기부·등록부에 목적물로 기재된 토지·건물의 표시를 옮기되, 목적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토지 ○○ 외 ○필지’, ‘건물 ○○ 외 ○동’, ‘공장기계 ○○ 외 ○점’ 등으로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가치평가 및 배분’란에는 담보물의 (총)평가액, 선순위배분액, 당 배분액, 배분 후 잔액을 차례로 표시한다. ‘가치평가 및 배분’란은 먼저 회생담보권자 배분 상세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채권내용’란에는 주채무, 보증채무, 대여채무 등 채권의 내용을 기재하되, 원금, 이자의 구분이 가능하면 이를 나누어 기재한다.

‘담보권 인정액’란은 채권내용란의 원금, 이자 등에 맞추어 액수를 기재한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제141조 제4항), ‘담보권 인정액’란에는 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기재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 인정액’란에 기재하면서 ‘비고’란에 ‘담보권 초과채권은 회생채권(채권○-○)으로 인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날 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이 되므로(제141조 제1항 단서), 개시 후이자를 담보권 인정액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결권 인정액’란은 일반적으로는 담보권 인정액의 액수를 그대로 기재한다. 하지만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도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불확정 기한부 채권, 조건부 채권 등은 개시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이 부여되므로(제141조 제6항, 제133조 제2항), 평가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리인이 임의로 의결권을 산정하기보다는 일응 의결권의 액을 ‘0’이라고 기재하고 나중에 결의 집회에서 법원의 의결권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회생채권 인정액’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액수를 기재한다. 예를 들면, 담보물의 총평가액이 20억 원, 1순위 저당권의 배분액이 15억 원, 2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0억 원인 경우, 2순위 저당권에 대한 담보권 인정액은 5억 원(총 평가액 20억 원 - 1순위 저당권 배분액 15억 원)이고 나머지 5억 원은 ‘회생채권 인정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양식 8)

회생담보권자 목록에는 담보권자의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가능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담보권의 내용·원인도 그 기재만으로 특정이 가능하도록 기재하여야 하는데, 보통 발생일자, 계약내용 등을 기재하는 방법을 취한다. 담보권의 목적·가액도 감정 결과 등에 맞추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담보권의 경우에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확정일자, 원고·피고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피고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비고란에는 담보권 초과채권의 회생채권 인정액 내역, 해당 담보권에 대하여 보증인, 보증서발급기관(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는 경우 그 명칭, 보증내용 등을 기재하면 된다.

마. 회생담보권자 배분 상세명세서(담보물 배분표)(양식 9)

회생담보권자 배분 상세명세서는 해당 담보물의 담보설정현황을 순위별로 정리하고 담보물의 가치평가액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별로 담보권을 배분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이다. 일반적으로 담보물 배분표라고 부른다.

회생담보권자 배분 상세명세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담보물 종류별 가치평가방법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담보물 종류별 가치평가 방법

담보물의 종류	가치평가방법
부동산 (토지·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재감정이 필요하고, 1년 이내라도 담보물 가격변동이 뚜렷한 경우에는 재감정이 필요하다. 공매·경매절차가 최근 진행되었다면 그 감정평가결과를 원용하는 경우도 있다. - 공장저당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산 (기계, 기구, 자동차 등)	-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받는 것이 좋지만, 동종 동산의 중고매매상,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2곳 이상의 가치평가액의 평균치로 산정하기도 한다.
주식	-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은 개시결정일 기준 주가(종가)를 적용하고, 비상장주식은 조사위원이 평가한 가치로 하되, 만일 주식 발행 회사의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경우에는 주식이액이 없다고 본다.
출자증권	- 출자증권 발행기관이 확인한 개시결정일 기준 출자좌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담보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시결정일 기준 인출·회수 가능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진성어음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가치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의료보험공단 예치금은 개시결정일 기준 인출 가능금액으로 산정한다.
예금	- 개시결정일 기준 인출 가능한 잔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담보물 가치평가를 마친 다음, 담보권별로 설정금액, 배분액, 배분잔액을 산정한다. 설정금액은 해당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이고, 배분액은 1순위 담보권에 대하여는 담보물의 가치를 상한으로 하여 1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이 되고, 2순위 담보권에 대하여는 1순위 배분액을 공제한 나머지 담보물의 가치를 상한으로 하여 2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이 된다. 그 이하 3순위, 4순위가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순위 담보권에 배분되고 남은 담보물의 가치를 순차로 배분해 나가면 된다.

해당 담보권이 공동담보인 경우에는 공동담보관계에 있는 담보권의 담보물 가치와 해당 담보권의 담보물 가치에 따라 분할배분하는 것이 실무이다.

바. 회생채권자의 목록 총괄표, 회생채권자의 목록[양식 10, 11]

회생채권자의 목록 총괄표, 회생채권자의 목록의 작성방법은 담보권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면 회생담보권자 목록 총괄표,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작성방법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사.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양식 12, 13]

채무자가 제시하는 주주명부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비교란에는 대표이사,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 해당사항, 임원사항 등을 기재한다.

아. 벌금·조세 등의 목록 총괄표, 벌금·조세 등의 목록[양식 14, 15]

벌금·조세 등의 목록 총괄표에는 벌금 또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기재한다.

채무별로 부과일, 납기일 등을 명시하여 회생채권, 공익채권의 구분이 명확하도록 한다.

전기·수도·가스요금은 벌금·조세 등 목록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

고, 일반 상거래채권이므로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4. 관리인이 목록 제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

관리인이 목록 제출 후 오기, 누락을 발견하거나 추가,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제147조 제4항).

관리인이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목록 변경·정정을 하지 않더라도,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자신이 목록에 기재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함으로써 채권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채권자는 추후보완신고를 통하여 누락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제3절 채권 등 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1.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실무상 법원은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업무 보조를 받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안내서 1부(양식 4),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서 2부(양식 16), 접수증 1부(양식 20), 위임장 2부(양식 5)를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에게 송부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에게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신고기간을 알려서 실권되지 않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경우에는 그 뜻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규칙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관리인이 이러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신고절차를 안내할 때에는 채권자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전화, 팩스 등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자에게 신고기간과 신고누락 시의 실권에 대하여 알림으로써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관리인에게 채권신고절차에 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무실에 신고서 양식을 비치하거나 채무자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것이 좋다.

2. 신고기간이 시작된 이후

신고접수는 법원의 업무이지만, 채권자가 다수인 대부분 사건에서 실무상 관리인이 채무자의 직원을 법원에 출석시켜 신고서 접수 실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관리인은 신고접수 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는지,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누락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채권자에게 즉시 보정하도록 권유하고, 바로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늦어도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까지는 보정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외국 소재 법인인데 우리나라 대리인을 통하여 채권신고하는 경우에는 특히 위임장이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목록에 이미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자가 채권의 실제 액수가 목록에 기재된 액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채권신고를 하려는 경우, 예를 들면 목록에 대여채무 1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회생채권자는 200만 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면 회생채권자가 전체 액수인 200만 원 전부를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00만 원이 이미 목록에 기재되어 신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나머지 100만 원만을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러할 경우에는 회생채권자의 신고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목록 기재 채권과 신고채권의 구분도 쉽지 않게 된다.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채권 전부를 신고하게 하고 이미 목록에 기재된 부분은 신고로 실효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명하다.

제6장 채권조사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제1절 절차 진행

1. 개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진 '채권조사기간'에 조사되고(제161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기일을 열어 '특별조사기일'에 조사된다(제162조, 제164조). 특별조사기일은 실무상 심리 집회·결의 집회와 병합하여 같은 날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권리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담보권의 목적과 가액 등이다.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과 벌금·과태료 등은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불복하여야 하므로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대상은 아니다(제157조).

2. 조사방법

채권조사기간의 조사방법은 실무상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내역과 관리인이 그 채권을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의 내용을 기재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표'(보통 '시부인표'라고 부른다)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도 채권조사기간 내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무상 회생채권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별조사기일의 조사방법은 관리인이 신고기간 후에 접수된 신고내역과 시부인내역을 기재한 '추후보완신고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식·출

자지분의 시부인표를 미리 작성·제출하였다가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희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위 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신고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채권조사기간 말일 사이에 신고된 채권도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하여야 하고, 채권조사기간의 시부인표에 반영할 수는 없다.

3. 이의내용의 통지

조사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해당 채권자에게 이의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통지서(양식 28)의 형식으로 통지하거나 특별조사기일 당일에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등의 권리보호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달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기회를 보장한다(제169조).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희생채권이나 희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한 희생절차 내의 간이·신속한 절차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 송달일부터 1달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171조).

제2절 채권조사기간과 관리인의 역할

1. 조사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관리인은 채권조사 전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있는지 검토하고 해제·해지권 또는 계약이행의 선택권을 행사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에 따라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성격이 이행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되는지,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희생채권이 되는지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실무상 법원은 관리인의 해제·해지권 선택을 법원(관리위원)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제61조 제1항 제4호, 제18조).

또한 관리인은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지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부인 대상 행위로부터 발행한 채권을 시인하면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고 나중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회생담보권은 담보권 목적의 가액에 한하여 인정되고 초과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므로(제141조 제1항, 제4항), 미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담보권 목적의 가액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부인표 작성

가. 작성시기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관리인이 위 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채권을 모두 시인한 결과가 된다. 주심판사 또는 주무 관리위원에게 시부인표 초안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파산과 등을 통하여 정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검토시간이 필요하면 미리 법원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연장결정을 받아야 한다.

나. 시부인의 일반적 기준

실무상 주심판사 또는 주무 관리위원이 시부인의 일반기준을 제시하고 관리인이 이를 참조하여 시부인 업무를 수행한다. 시부인의 일반기준에 대하여는 [양식 22] 참조.

시부인을 거쳐 확정된 채권자표는 시부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제168조), 관리인은 시부인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률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고,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시부인표 초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관리위원의 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인은 시부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나중에 이의를 철회할 수도 있으므로, 확신이 가지 않을 때에는 일응 부인할 필요도 있다.

다. 시부인표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시부인표는 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 총괄표, ② 회생담보권 시부인 명세서, ③ 회생담보권자 배분 상세명세서, ④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 ⑤ 조세채권 등 목록·신고 명세서, ⑥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명세서 등으로 구성된다.

시부인 총괄표, 시부인 명세서의 신고번호·목록번호의 기재, 회생채권자 등 당사자의 표시, 담보권의 종류 및 목적물의 표시, 회생담보권자 배분 상세명세서의 가치평가 및 배분의 방법은 채권 등 목록의 작성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목록 작성방법의 해당 부분을 참고한다. 채권목록의 작성방법과 다른 점은, 시부인표는 목록에 기재된 사항 외에 채권신고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까지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하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모두에 대하여 시부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목록에 기재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에 대하여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우선하므로, 회생담보권 시부인 명세서,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의 '신고번호'란과 '목록번호'란에 그 해당번호를 모두 기재한 다음 '비고'란에 '20○○. ○○. ○○.자 신고, 목록 실효'라고 기재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은 따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제151조),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시부인 대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목록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회생담보권 시부인 명세서,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에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 또는 신고된 채권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여 시부인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신고서에 개시 후 이자를 연 이율(○○%)로 표시한 경우에도 누락하지 말고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시부인 시 유의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 12>, <표 13>과 같다.

〈표 12〉 시부인의 일반적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채권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신고의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 채권액수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채권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 채권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응 부인하여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는 회생담보권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제141조 제1항 단서),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더라도 개시 후의 이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의결권은 부인하여야 한다(제191조 제3호, 제118조 제2호).
외화채권	채권이 외화로 신고된 경우에는 외화로 시부인하되, 괄호 안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고(제137조), 시인된 채권액 합계란에 ‘원화 환산 후 소계’라고 하여 원화채권과 환산한 외화채권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며, 시부인표 앞이나 주석으로 원화환산율을 기재한다. 원화환산율은 개시결정 전일에 주채권은행이 최종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사용한다.
보증, 담보제공으로 인한 채무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물상보증 포함)에 관하여는 보증일 또는 담보제공일과 그 수익자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부인권 대상 행위인지 여부가 시부인표상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소송 계속 중인 채권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수소법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다. 시부인 사유에도 단순히 ‘소송 계속 중임으로 부인’이라고 기재하기보다는 구체적 시부인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액 중 일부만 다투어지고 있다면 다툼이 없는 부분은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부인하여야 한다.

〈표 13〉 시부인의 개별 사례에 관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주채권자와 장래 구상권자의 채권	<p>① 주채권자가 전액 채권신고하고 장래 구상권자도 신고한 경우에는 주채권자의 채권만 시인하고 장래 구상권자의 신고는 부인하여야 한다(제126조 제3항 단서). 예를 들면 갑(보증보험회사)이 채무자가 을(채무자의 거래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을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갑이 장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구상권자로 채권신고하더라도, 관리인은 을의 채권만을 시인하고 갑의 채권은 부인하여야 한다.</p> <p>② 장래 구상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주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더라도,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권자는 여전히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126조 제2항). 위 사례에서 갑(보증보험회사)이 개시 후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을(채무자의 거래처)에게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그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을은 개시 당시 채권 전액을 가지고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p>③ 장래 구상권자가 개시 후에 주채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여 주채권자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주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126조 제4항). 위 사례에서 갑(보증보험회사)이 개시 후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을(채무자의 거래처)에게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을의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p>
미확정구상채권의 의결권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	<p>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이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보증기관이 가지는 장래 구상권은 보증사고 발생 전에는 미확정상태의 우발채무이다. 이러한 경우 관리인은 채권의 액수는 그대로 시인하되, 의결권은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인하여야 하고, 시부인 당시 현실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결권을 전부 부인하고 결의 집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p> <p>채권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미확정구상채권 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p>

제6장 채권조사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구 분	유의사항
신고서에 채권자가 '홍길동 외 ○명'으로 기재된 경우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채권자 특징이 가능할 경우에는 채권자 성명·명칭을 모두 정확히 기재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일응 부인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목록에 채권자 대표이사의 개인 채권으로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채권자 회사가 같은 채권을 신고한 경우	채권자 명의를 목록 기재채권과 신고채권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목록 기재 채권이 채권신고로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 회사 채권이 옳다면 목록에 기재된 대표이사 개인 채권에 대하여 부인한다. 부인사유는 '채권자 회사 명의로 채권신고하여 신고번호○○로 시인하였으므로 목록 기재 채권은 부인' 정도로 표시하면 된다.
보전처분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은 거래로 인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할 경우	시부인사유에 '공익채권으로 부인'으로 기재하고 비교란에 법원의 허가일 등을 기재한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 특별히 취급한다. 소액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물 배분표 작성 시 회생담보권보다 우선위로 담보가치가 배분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상거래대금 변제를 위해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어음수취인이 어음을 유통시킨 후 어음원본 제시 없이 채권신고한 경우	'어음원본 미제시'를 사유로 하여 부인하고, 추후 어음원본 제시하면 이의철회하여 시인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제3절 특별조사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1. 시부인표 작성

특별조사기일의 시부인표는 늦어도 기일의 3~5일 전에 시부인을 마치고 기일에서 배포하기 위한 인쇄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인쇄작업 이후 기일 전에 접수된 추후보완신고에 대하여는 특별조사기일에 구두로 시부인하였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2. 출석현황표 작성

실무상 관리인은 기일 전에 미리 특별조사기일의 출석현황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특별조사기일이 심리 집회·결의 집회와 병합되어 진행될 때에는 결의 집회를 위한 '출석현황 및 의결표'양식 32가 특별조사기일의 출석현황표의 역할까지 하는데, 위 의결표에는 관리인이 부인하여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을 채권은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인된 채권에 대하여 특별조사기일의 출석현황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특별조사기일의 출석과 조사결과의 진술

특별조사기일은 관리인의 조사결과 진술, 당해 채권자의 의견진술,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관리인은 특별조사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제165조). 채무자의 대표자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므로(제164조 제1항),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미리 대표자에게 기일을 안내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다른 사건의 특별조사기일을 참관하거나 기일조서 양식을 구하여 미리 진행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제4절 채권조사기간·특별조사기일 이후 관리인의 역할

1. 집행권원·중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제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중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기간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이다.

관리인은 이의대상 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중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이의제기하여야 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의대상 채권에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소심 계속 중인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하여는 제1편 제4장 제2절 6.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 참조.

2. 이의통지 업무의 보조

이의통지서는 시부인 내용이 포함되고 이의대상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관리인이 법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이의통지서 초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다[양식 28].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이의통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이의철회

관리인은 채권조사에서 이의하였던 것을 나중에 철회할 수 있다.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였는데 나중에 확인된 경우, 어음채권신고자가 어음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인하였는데 나중에 어음원본을 제시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진행과정에서 이의사유가 법률상 무의미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화해가 성립한 경우 등이다.

이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의 대상인 권리가 확정될 때까지이다. 이의대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1월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서 이의상태로 그대로 확정되거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출소기간(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이 도과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확정되는 등으로 이의의 대상인 권리가 확정되면, 관리인은 더 이상 이의를 철회할 수 없다.

실무상 이의철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양식 43), 관리인은 법원이 해당 채권자에게 이의철회통지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5절 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와 관리인의 역할

1.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대상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170조 제2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절차 내의 간이·신속한 절차이지만 진행방법은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므로, 관리인은 필요한 주장과 증거제출을 하여야 하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대리를 선임하여 관리인대리가 심문절차에 응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직원이 관리인대리의 자격도 없이 관리인을 대리하여 심문절차에 응할 수는 없다.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에서도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규칙 제66조 제2항), 관리인은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한 공적 수탁자임을 고려하여 조정, 화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관리인이 이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의를 철회하고 신청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2.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그 결정서 송달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171조 제1항).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가 회생법원에 제기하면 되는데, 파산부가 있는 법원에서도 민사부가 이의의 소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인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1월 이내의 출소기간이 도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집회·대체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제1절 개요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②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④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제92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위 사항을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은 위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98조 제1항). 이를 실무상 '보고 집회'라 한다.

법원은 보고 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① 주요 사항의 통지, ②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③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리인은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98조 제2항). 이를 실무상 '대체절차'라 한다.

관리인이 대체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위 보고사항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제98조 제3항).

제2절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1. 절차 진행

보고 집회는 보통 ①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의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② 조사위원이 조사경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내용 및 보증책임의 발생 가능성,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지배주주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및 범위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하며, ③ 출석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관리인 및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때로는 보고 집회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제186조).

2.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관리인은 집회 전까지 법원에 집회자료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상 집회자료는 ①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요약본 등이 포함된 관리인보고서, ② 출석현황표, ③ 예상질문과 답변 등으로 구성된다. 관리인보고서는 집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포할 만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보고 집회는 회생절차의 진행경과와 채무자의 현 상태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하는 자리이므로, 다른 회생회사의 자료를 기계적으로 참고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집회자료를 작성하기보다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궁금해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관리인은 집회에 출석하여 위 보고사항의 요지 등을 낭독하고,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질문에 답변한다.

관리인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출석예정자 수만큼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이 좋다.

관리인은 미리 기일조서 양식을 구하여 절차진행 순서나 진술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른 사건의 집회를 참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3절 대체절차

1. 주요 사항의 통지

주요 사항의 통지로 보고 집회를 대체할 경우에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통지의 시기와 방법, 통지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법원이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전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표 13-1〉 주요 사항 통지명령(예시)

관리인은 2000. 0. 0.까지 조사위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다음 사항의 요지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주주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1. 통지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항의 요지

2. 통지방법

가. 직접 교부하는 방법

나. 보통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내는 방법

다.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는 방법(단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

관리인은 통지방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법원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통지방법을 달리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의로 통지를 생략하거나 일부 회생채권자 등에게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통지는 법 제9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항의 요지를 기재한 관리인 보고서 또는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요약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주요 사업내용,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자산·부채,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와 계속할 때의 가치,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시부인 총괄내역,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사업 현황 및 전망, M&A·영업양도 또는 주요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내용 등을 통지한다.

관리인은 주요 사항의 통지절차를 이행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되, 늦어도 통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는 통지절차를 이행한 시기, 통지한 내용, 통지 현황, 통지하지 못한 상대방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주요 사항 통지서, 주요 사항 통지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별첨 준칙 제 16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에 관한 준칙’ 중 별지 1, 2 참조.

2. 관계인설명회

관계인설명회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법 제92조 제1항이 정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설명의 내용과 상대방은 주요 사항의 통지절차에서와 같다.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시기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설명회의 일시와 장소, 설명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 및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조직되

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설명회는 관리인이 주관한다. 관리인은 설명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영상녹화, 속기록의 작성·보존 등 설명회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설명회를 개최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는 설명회를 개최한 일시·장소, 사전 통지 현황 및 통지하지 못한 희생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 현황과 사유, 설명회 출석 현황, 설명한 내용, 진행 순서에 따른 설명회 진행 경과, 희생채권자 등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관계인설명회 통지문, 관계인설명회 개최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별첨 준칙 제16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에 관한 준칙' 중 별지 3, 4 참조.

제8장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제1절 절차 진행

1. 회생계획과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이란 일반적으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하며,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이다.

‘회생계획안’은 위와 같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의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기 이전의 것을 ‘회생계획안’, 가결된 이후의 것을 ‘회생계획’이라고 한다.

2.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정한다(제50조 제1항 제4호).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부터 4개월 이하여야 하는데, 통상 조사보고서 제출일 후 1개월 내외로 정해진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는데, 채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3. 회생계획안 작성에 관한 권고

법원은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수정 및 변경하는 작업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수정 작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들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관리인이 모두 해결하도록 할 경우, 사후에 수정할 사항이 다수 발견되면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제2절 관리인의 역할

1.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실무상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외에도 ① 회생계획안 요약, ② 채권자 그룹별 변제할 채권액의 현가율 비교표(채권자 그룹별 현가변제율과 청산 시 배당률의 비교), ③ 관할 세무서·관할 지방자치단체 현황(관서명·주소·전화번호·팩스·담당자 등), ④ 조세채권 현황(조세징수관청·조세채권의 내용·조세채권액·주소·전화번호·팩스·담당자 등), ⑤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현황(근로자 측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팩스 등), ⑥ 사업계획·자금수지 대비표(제1차 조사보고서의 추정과 대비한 회생계획안의 연도별 매출액·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이익·자금의 유출입·매각계획 등을 대비), ⑦ 주식지분 변동표(회생계획안의 주식 소각·병합·출자전환 등을 완료한 후의 주식지분) 등을 함께 제출한다. 또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때에는 당초의 회생계획안과 회생계획 수정안을 비교한 수정비교표도 함께 제출한다.

대부분 사건에서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안에 별도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제221조), 실제로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이러한 경우 관리인은 당해 회생계획안 제출자와의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회생계획안을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회생계획안으로 병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회생계획안의 작성 요령

가. 작성주체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회생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관리인이 스스로 또는 채무자의 인력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채무자의 규모, 이해관계인의 수 등에 따라서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회계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불가피하게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외부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에 대하여 미리 재판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위원은 추후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조사위원을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 작성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

회생계획안은 제243조 제1항에 따른 아래의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관리인은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이에 맞는지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인가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회생사건실무(상)·(하)’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 ①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②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 ③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할 것
- ④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것
- ⑤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 ⑥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 ⑦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다. 작성방법

통상 주무 관리위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작성양식에 관한 파일을 받아 이를 기초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회생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회생사건실무(상)' 중 해당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여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안의 핵심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등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서 산출된 손익계산과 자금수지에 기초하여야 한다. 만약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영업환경이나 채무자의 사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 회생에 실패한 회사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채무자의 향후 사업계획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작성 시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던 점도 주요 원인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채권자거나 채권자협의회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인가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들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실무상 법원은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에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자금수지계획표에 기초하여 그 범위 안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5일 전까지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및 수행 가능성 여부에 관한 제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관리인은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을 협박하거나 기망한 경우, 의결권 행사나 그 위임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을 공여한 경우 등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생계획이 인가될 수 없다(제243조 제1항 제3호).

마. 법원의 사전 검토

회생계획안이 상당 부분 작성된 후에 채권의 성질에 따른 분류(대여채무, 보증채무, 상거래채무 등)와 변제방법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우므로, 관리인은 본격적인 계획안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대체적인 채권자 분류와 변제방법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늦어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1주일 전에는 완성된 회생계획안 초안을 주무 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 관리위원과 주심판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건에 따라서는 관리인이 주심판사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기도 한다.

3. 회생계획안 작성단계별 유의사항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작성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채권액의 확정, 자금조달계획의 수립,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식의 감자 및 출자 전환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각 단계별 유의사항은 <표 14>와 같다.

〈표 14〉 회생계획안 작성단계별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채권액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채권 등을 확인하고,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 명의변경·이의철회·소멸된 채권 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채권액을 정확히 확정하여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업상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한다.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 제출 후 회생계획안 수립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제 영업상황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조사위원이 수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거나 영업용 자산을 비영업용 자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 매각시기와 회수예상가능액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영업용 자산매각에 따른 영업력 감소, 대체 영업자산의 확보비용(임차보증금, 차임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담보채권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무리하게 조기매각을 계획하면 추후 저가매각이나 변제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의 위험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담보채권자에게 매각을 위임하고 그때부터는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기도 한다. - 부동산의 청산가치를 매각예상가액으로 하면 너무 보수적일 수 있으므로 감정가 등 매매시장의 거래가를 고려하여 실제 매각가능한 금액으로 정하되, 매각 시의 세금이나 매각부대비용의 공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신규자금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계획 수행 중 신규자금 차입은 채무자의 신용도를 고려할 때 쉽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시기, 예컨대 10차연도에 적정차입금의 규모(실무상 이자보상비율 3 이내)로 신규차입을 고려한다. -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회생기간 종료 무렵에는 담보권이 소멸한 부동산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담보를 이용한 신규자금 차입을 고려할 수 있다.

구 분	유의사항
자금운용 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 변제 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조세 등 채무, 공익채무,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회생채권 대역채무 등의 순서로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미확정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제예상액을 자금수지에 반영한다.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개별 채권자별로 준수되어야 하므로, 각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별로 현가변제율, 청산배당률을 산정하여 비교한다. - 공익채권에 대하여 지급시기 유예를 예정한 자금수지를 계획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자의 동의를 늦어도 심리 집회·결의 집회까지 징구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의 자금수지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 조세채권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자의 의견조회만 거치면 되지만,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제140조 제2항, 제3항).
감자 및 출자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지배인 등의 책임 있는 행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2/3 이상 감자하여야 한다(제205조 제4항). - 회생계획에서 기존 주식의 감자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을 계획한 경우,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기존 주주의 순으로 차등이 생길수록 기존 주식의 감자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실무상 부채초과로 주식이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감자·출자전환 후의 예상 지분율,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의 현가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감자 비율을 조정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자·출자전환·주식재병합 이후의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을 가지는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현가변제율보다 낮아야 한다. - 출자전환이 인가일 무렵인 경우는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고려하여 법인세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출기간의 준수

관리인은 반드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간) 안에 관리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생절차 폐지사유가 되고(제286조 제1항 제1호), 관리인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개월(중소기업은 1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제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재판부에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서면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의 연장결정 신청을 하도록 한다. 다만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면, 굳이 제출기간을 연장할 필요 없이 일단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뒤 추후 회생계획안의 수정을 통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재판부와 미리 협의를 통해 일단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제9장 심리·결의 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제1절 절차 진행

1. 개요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를 소집하고,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이 수정의 필요 없이 결의에 부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한다. 통상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심리 집회 또는 '제2회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결의 집회 또는 '제3회 관계인집회'라고도 한다.

대부분 사건에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특별조사기일, 심리 집회와 결의 집회를 같은 날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다. 관계인집회의 기일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일지정결정문을 송달하고 소환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약 1개월 뒤로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2. 심리 집회

심리 집회는 ①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요지 및 변제계획 설명, ② 조사위원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과 청산가치보장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와 의견 진술, ③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가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법원은 심리 집회 이전에 미리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심리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수정에 대한 허가를 고지한다.

심리대상이 되는 회생계획안의 인가요건은 ①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할 것,

③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등이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영업 관련 면허유지가 불가능하여 장래 매출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는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고, 회생계획의 회생채권 현가변제율이 회생담보권의 현가변제율보다 높은 때에는 회생계획이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이며,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각 채권자의 현가변제율이 파산 시의 배당률보다 낮은 때에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이다.

3. 결의 집회

가. 진행순서

결의 집회는 ① 결의를 위한 조분류, ②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의 결정, ③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결의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 집회 당일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나. 조분류와 의결권

법원은 조분류와 의결권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조분류의 방식과 의결권 부여의 기준을 설명하고 관리인,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으로부터 의견 또는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듣는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조별로 나누어 행하고, 모든 조에서 가결되었을 때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된다. 대부분 사건에서 조는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주주조의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조분류를 세분화하기도 한다.

의결권에 대한 이의는, 실무상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이나 특별조사기일에 채권의 내용과 의결권을 모두 부인한 채권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한 채권에 대하여 의결권 이의를 구두로 진술

하는 방법으로, 채권조사기간이나 특별조사기일에 채권내용은 시인하면서도 의결권에 대하여만 이의하여 채권내용이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는 집회자료로서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양식 30]를 미리 준비하여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진술한다.

다. 결의절차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주주조 의결권 총수(실제 결의에 참가한 의결권 기준)의 1/2 이상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제237조). 다만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의결권이 없다(제146조 제3항).

결의방법은 조별로 의결권자 개개인을 호명하여 출석 및 찬부를 확인하고, 이를 미리 준비해 둔 출석현황 및 의결표에 기재하는 방법을 대체로 사용하고 있다.

결의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즉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집계한 다음 집계결과를 공포하고, 가결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라. 회생계획 인부결정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법원은 심리·결의 집회 전에 미리 회생계획안의 적법성,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준수 여부, 수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인가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집회 당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선고한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거나 회생계획안 변경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이때 관리인이 속행기일 지정신청을 한다.

실무상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속행기일 지정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1/3 이상, 주주조 의결권 총수(실제 결의에 참가한 의결권 기준)의 1/3 이상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제238조). 채무자가 부채초과 상태인 경우에 주주는 의결권이 없음을 마찬가지이다.

속행기일 지정신청이 없거나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결의가 부결되면 법원은 일단 집회를 종료한 후 나중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거나, 결의절차에서 1개 조 이상이라도 가결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반대조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제244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을 실무상 '강제인가'라고 부른다.

속행집회에서 관리인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제234조).

제2절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1. 집회자료의 준비

심리·결의 집회가 같은 날 진행되는 경우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의 요지, 관리인보고서[양식 29], 출석현황 및 의결표[양식 32],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양식 30], 예상동의율표, 예상질문 및 답변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상 관리인은 위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한 다음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의 요지, 관리인보고서,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 출석현황 및 의결표, 예상동의율표 각 10부, 예상질문 및 답변 5부를 인쇄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관리인보고서,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는 집회에 참석한 이해관계

인들에게 배포할 만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특별조사기일이 병합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시부인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한 다음 10부를 인쇄하여 제출하고, 집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포할 만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관리인보고서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요령 있게 설명하기 위한 보조자료이고,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는 채권조사기간에 액수가 확정되고 의결권만 부인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 집회 당일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다.

출석현황 및 의결표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별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여 미리 관리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자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의결표에 의결권의 액수를 기재할 때는 시부인표의 시부인내역, 시부인 이후 채권소멸, 양도, 이의철회 등의 변동사항,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의 이의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 의결권 액수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출석현황 및 의결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변동사항을 알려 집회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은 결의 집회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파산과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의결권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이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경우 보증기관의 공사 관련 보증채무는 우발채무로서 미확정구상채무가 되므로, 관리인은 시부인단계에서 채권액 자체는 시인하더라도 의결권은 부인하는 것이 실무이다.

관리인은 결의 집회 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통계수치를 받아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법원은 통계수치를 참고하여 보증기관 미확정구상채무의 의결권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익채권자의 동의서 징구

회생계획안에서 공익채권에 대한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맞추어 자금수지를 계획한 경우, 관리인은 심리·결의 집회 기일 전까지 공익채권자로부터 지급시기 유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관리인이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하면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과 별도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4. 조세 등 징수권자의 동의서 징구

회생계획안에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으로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자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40조 제3항).

이처럼 징수권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회생계획안 배제사유에 해당하고(제231조 제1호),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를 인가할 수 없으므로(제243조 제1항 제1호), 관리인은 징수권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회생계획안 설명과 동의채권자의 위임장 징구

관리인은 심리·결의 집회 전에 미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계획안을 제시하여 채권자들을 설득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임장은 관리인 명의로 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의 직원 명의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위임장 청구 시 위임장에 날인이 누락되었는지, 날인된 인장이 인감과 불일치하거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는지를 미리 살펴 이러한 흠결사항을 보정함으로써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실무상 심리 및 결의 집회와 그 속행기일에서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는 내용의 위임장을 사용한다(양식 31). 서면결의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이 아닌 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서만으로는 적법한 위임장이 작성되었다거나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에 따라서는 심리 집회에서 주주나 소액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의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칠게 항의하여 집회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관리인은 여러 정황을 살펴 그와 같은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집회 전에 미리 주주나 특정 채권자집단(예를 들어 CP를 보유한 개인채권자들)의 대표들에게 회생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함과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상호 소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집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출석예정 채권자에 대한 안내

채권자의 직원이 의결권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는 경우에는 위임장의 기재내용상 의결권의 행사 범위(회생계획안 결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아니면 속행기일지정 결의에 한정하여 위임받았는지, 당해 기일의 권한 위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속행기일의 권한 위임까지 포함되는지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권자의 직원이 채권자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권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회생채권 등 신고접수증은 집회 당일 이해관계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 관리인은 채권자에게 신고접수증을 지참하

여 집회에 출석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7. 법원에 대한 사전보고

관리인은 집회 전에 주심판사, 주무 관리위원에게 이해관계인의 예상 출석인원, 이해관계인의 예상 진술내용, 회생계획안의 가결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보고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법원은 미리 회생계획안의 수정 필요성, 집회기일의 연기·변경, 회생계획 인가, 관계인집회의 속행, 회생절차 폐지,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한 회생계획 인가 등 절차 진행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제3절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1. 회생계획안의 보고 및 각종 의견진술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수정하려면 심리 집회 전에 미리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228조), 실무상 법원은 심리 집회에서 수정허가를 고지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수정허가 고지가 끝나면 관리인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보고서에 기재된 회생계획안의 요지 및 변제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관리인은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권리 유형과 성격에 따라 대여채무, 구상채무,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임원보수채무, 특수관계인채무, 미확정구상채무, 조세채무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기존 주주의 감자 및 채권의 출자전환을 설명하고,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지만 자금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익채권의 변제일정을 함께 설명한다.

결의 집회가 시작되면 관리인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과 확정된 채권 중 '확정된 회생채권 등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

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절차를 진행하여 집계결과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하면, 관리인은 인가·폐지, 속행기일지정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

2. 집회 변경·연기·속행 시 가결기간의 고려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결의 집회의 첫 기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법원이 계획안제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늘이더라도 1월을 넘지 못한다(제239조 제1항, 제2항). 또한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법원이 그 기간을 늘이더라도 6월을 넘지 못한다(제239조 제3항). 회생계획안이 위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제286조 제1항 제2호, 제3호).

따라서 관리인은 결의 집회의 변경·연기·속행이 예상된다면 미리 주심판사, 주무 관리위원과 다음 집회기일 및 향후 절차진행 방향을 상의하여야 한다.

제4절 결의 집회의 속행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1. 속행기일 전까지

가. 회생계획 변경안의 작성·제출

회생계획안의 변경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제234조),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변경 시 채권의 변제율·변제시기, 주식의 소각비율·병합비율 등을 당초의 회생계획안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한편 관리인이 채권의 변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수행 가능한 범위 내이어야 하므로,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무상 조사위원이 회생계획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에 관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변경에 대하여 집회 전에 미리 검토를 마쳐야 하고, 조사위원도 청산가치보장과 수행 가능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집회 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리인은 미리 회생계획 변경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집회자료의 준비·제출

속행기일의 진행은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는 원래의 결의 집회와 다르지 않다. 조의 분류, 의결권에 대한 결정이 결의절차 전에 다시 진행된다.

관리인은 회생계획 변경안, 회생계획 변경안의 요지, 관리인보고서를 미리 인쇄하여 집회 참석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 '출석현황 및 의결표'도 제출하여야 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추후보완신고는 심리 집회의 기일까지만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 집회의 속행기일에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2. 속행기일 당일

관리인이 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면,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변경신청을 한다는 진술을 하고 회생계획 변경안의 요지 및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안 변경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변경 없이 원래의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그대로 다시 결의에 부치더라도, 법원은 결의절차에 앞서 조의 분류, 의결권의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므로 관리인은 그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속행기일의 결의절차에서 부결된 경우 실무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속행

기일의 재속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5절 회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관리인의 역할

1. 회생계획 확정본의 제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일이다(제13조 제2항, 제245조 제1항). 위 기간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인가결정은 확정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실무상 관리인은 회생계획 확정본을 법원에 제출한다.

2. 각종 등기촉탁신청 등

회생계획에서 정관의 변경, 자본 변동의 효력발생시기를 인가결정일 무렵으로 정한 경우 관리인은 조속히 정관의 변경이나 자본의 변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법원에 등기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양식 40, 41).

회생계획에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유입할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 인가로 기존 이사·대표이사의 해임절차와 신규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감사의 선임절차가 진행된다. 관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선임 및 해임등기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양식 42).

한편 회생계획에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유입하면서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50일 이내(법원의 허가를 얻어 30일 연장 가능)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 이사·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한 경우 관리인은 인가 후 즉시 감사 및 출자전환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

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256조). 따라서 관리인은 위 절차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청법원이나 집행법원에 기존에 이루어진 절차의 말소촉탁을 신청한다.

제10장 회생계획의 수행·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제1절 개요

1.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이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제257조 제1항). 관리인의 회생계획 수행업무는 주로 ① 사업계획의 수행, ②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③ 회생채권 등의 변제, ④ 필요한 경우 M&A 추진 등이다. 그 밖에 회생계획 인가 직후 정관 변경 등기, 자본 변경등기, 주주총회의 개최, 임원선임·해임등기 등의 후속조치를 관리인이 수행하는 것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포함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은 법원, 관리위원회, 법원선임 감사, 외부감사기관, 채권자협의회 등을 통하여 감독된다.

2. 회생계획의 변경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제282조 제1항).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변경된 회생계획안의 인가절차가 필요하다(제282조 제2항). 이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 심리, 결의,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회생계획 인가절차와 다르지 않다.

실무상 인가 후 M&A가 성사되어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일괄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하려고 할 때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제2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관리인의 역할

1. 사업계획의 수행

관리인은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영업실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등 각종 항목별로 회생계획의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의 수행 정도를 법원이 파악하기 쉽도록 관리인은 각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평정기일에 참석하여야 한다.

임금인상과 관련하여서는 관리인이 ① 최근 3년간 회생계획상의 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이익 달성 정도, ② 최근 5년간 직급별 임금인상률, ③ 과거 상여금 지급률, ④ 인상 전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등의 자료를 보고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기본급과 연동되는 상여금 등의 상승분까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관리인은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자산매각대금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자산매각 시 향후 자산의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 있는지, 현재의 자산매각대금의 이자수입은 얼마인지, 자금수지계획상 매각이 늦어지더라도 변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시기에는 매각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당연히 실효되지만, 자산매각 시에는 등기부의 형식적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직접 말소촉탁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관리인이 직접 해당 신청법원이나 집행법원에 말소촉탁신청서와

함께 인가결정등본 및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3. 회생채권 등의 변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실무상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에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기일이 연말로 계획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리인은 변제자원 확보를 위해 월별 자금수지가 회생계획대로 달성되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회생채권 등을 조기 변제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기 변제 할인율을 적용하되, 일부 채권에 대해서만 조기 변제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인가 전처럼 조기 변제를 위해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의견 조회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지만,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기 변제허가신청 전에 채권자협의회와 협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3절 회생계획의 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1. 회생계획 변경사유의 검토

회생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인가결정이 있는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라야 한다.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기 전에 변경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및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란 회생계획 인가 당시 그러한 사정이 예상되었다면 당연히 현재와는 다른 회생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라는 사태의 출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가 후 경제상황의 급변, 법령의 개폐와 같은 일반적인 사정변경, 합병계획의 상대방 회사에 대한 합병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예정대로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 관련 기업의 부도, 주력 공장의 소실, 종업원의 장기 파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변경할 필요’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회생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회생계획을 변경하면 그러한 사태를 회피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종전 회생계획의 인가는 처음부터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후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단순히 경영부진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생계획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집회의 준비

회생계획 변경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종전의 회생계획 인가절차처럼 회생계획안 제출, 심리, 결의, 인가를 거쳐야 하므로(제282조 제2항), 관리인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집회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제282조 제4항), 변경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출석현황 및 의결표에는 개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별로 원회생계획에 찬성하였는지를 표시하는 란을 따로 둔다(양식 33).

제11장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리인의 역할

제1절 개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경우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운영자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자금의 마련 방법은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회생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에서는 회생절차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자금조달 방법을 설명한다.

제2절 압류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채무자의 자금조달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등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 매출채권이나 금융기관 예금반환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관리인은 회생을 위하여 가압류, 압류 등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회생법원에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양식 35).

다른 강제집행과 달리 체납처분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체납처분의 취소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신규 자금대출

채무자가 금융기관이나 거래처 또는 개인으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이 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후 발령되는 보전처분의 내용 중 하나가 법원의 허가 없이는 금전 차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회생절

차 개시결정을 할 때에도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신규 자금을 차입하도록 결정하고 있으므로, 보전처분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금을 신규로 차입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어음할인 방식에 의한 자금차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익채권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므로(제180조 제7항),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양식 39).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담보여력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신규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

관리인이나 대표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사실상 채무자 운영에 사용하고 나중에 채무자의 영업수익으로 변제하는 식의 자금조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절 신주 발행 또는 사채 발행

일반 기업의 경우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이 신주나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무상 회생계획 인가 후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M&A를 위해 기존에 발행된 주식을 소각하면서 인수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무자가 신주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므로(제206조, 제209조), 신주나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다면 회생계획을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매각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계속을 염두에 둔다면 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결국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은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가운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를 매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설비 매각으로 인하여 가동능력에 지장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체납처분의 취소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회생계획 인가 직후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할 예정임에도 보유 자금이나 영업이익으로는 매각 시까지 위 자산에 체납처분된 조세 등을 변제할 수 없다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압류취소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절 M&A

통상 M&A를 통해 자금이 조달될 경우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어 종전 기업주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입장에서는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본으로 전환되어 채무구조가 건실하게 되고 신규 투자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회생기업의 영업 중 당해 회사로는 크게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으나 가동이 중단되어 버리면 가치가 급락할 우려가 있는 영업 부분을 양도함으로써 회생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2장 M&A와 관리인의 역할

제1절 회생절차의 M&A

1. 개요

회생절차의 M&A는 그 시행시기에 따라 ①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②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에 진행되는 M&A, ③ 회생계획 인가 후에 진행되는 M&A로 나눌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 ①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 ② 영업양도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감소, 신주발행 등은 회생절차에 의하여야 하고(제55조 제1항),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등은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대가·상대방 등을 정하여야 하므로(제200조), 자본감소와 신주발행, 영업양도를 수반하는 M&A는 회생계획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생계획 인가 후의 M&A 또한 변경회생계획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실무준칙 제1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은 회생계획 인가 후에 진행되는 M&A를 원칙적인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전, 회생계획 인가 전에 진행된 M&A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고,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을 대표적인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영업양도 등 다른 유형의 M&A에서도 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시기에 따른 분류

가. 회생계획 인가 후에 진행되는 M&A

회생절차에서 M&A는 통상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주의 권리가 확정되고 공익채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 명확해진

상태에서 회생계획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채무자의 신용하락 등으로 인하여 회생계획 인가 당시의 예측과는 달리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하더라도 독자생존 방식으로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변제하고 사업을 극대화하기 어려워서 외부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회생계획 수행의 일환으로 M&A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한 것으로서, 인가 후 M&A 절차를 통하여 책임 있는 경영주를 확보한 후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가 후 M&A의 통상적인 진행절차는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인가 후 M&A 일정표

구 분	소요 기간	상세일정
주간사 선정	2주	주간사 선정 필요성 검토 → 선정기준 마련 → 용역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주간사 내정 →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 → 주간사 용역계약 체결, 법원의 허가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6주	회계법인 등을 통한 채무자의 자체 실사 및 평가 → M&A 전략 수립, 잠재적 투자자 물색 → 기업매각공고, 인수요청서 접수 및 평가 → 회사설명자료 발송 → 실사를 위한 자료실 준비 → 인수의향서 제출자의 간이실사
인수자 선정	2주	선정기준 마련 → 구속력 있는 인수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행보증금 납입 및 양해각서(MOU)의 체결 → 법원의 허가
회생계획변경과정 준비과정	10주	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의 조정 → 계약금 납입 및 본계약 체결 → 법원의 허가 → 채무재조정을 위한 채권자와의 협상 → 변경회생계획안 제출 → 인수대금 완납 →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 →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회생절차 종결	7주	인수기획단 파견 → 임원진 개편 → 감사·유상증자·출자전환 등 절차 이행 → 회생채무 변제 → 담보권 말소 → 회생절차 종결

나.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추진된 M&A 절차를 회생절차에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M&A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추진된 M&A를 회생절차에서 승인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가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공정성과 적정성에 관하여 의심이 들지 않으면 그대로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절차를 승계할 수 있고, 의심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에게 새로운 인수예정자 선정을 위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절차를 회생절차에서 승인하게 되면 인수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신용하락에 의한 사업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다.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에 진행되는 M&A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에 실시하는 M&A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후의 M&A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이는 회생절차의 진행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므로 신속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권·채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회생계획 인가 후의 M&A와 다르다.

회생계획 인가 전 M&A는 매각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매각주간사를 선정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인수예정자 선정을 가급적 관리인의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실무상 조사위원이 채무자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게 산정되었을 경우 비로소 M&A 절차의 추진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M&A의 실사가 늦은 만큼 그 절차를 신속

히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원은 인가 전 M&A에 있어 과거 영업양도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내용에 따른 분류

가.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M&A 유형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은 채무자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여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경영주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경영구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주식의 감자를 시행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제264조 제2항),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M&A에 비하여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영업양도방식

채무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를 해체하지 않고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거래선, 영업상의 비밀, 노하우 등도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되고,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

채무자에게 양도 가능한 사업부와 양도 곤란한 사업부가 혼재하고 있

어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을 택할 경우 양도 곤란 사업부로 인하여 인수금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때, 채무자에게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을 택할 경우 대규모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조세부담의 가능성이 있어 인수자의 입장에서 인수에 따른 부담이 큰 때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회생절차에 의한 영업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불필요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261조 제2항).

다만 영업양도방식은 자산 및 부채를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특정승계절차이므로,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에 비하여 양도절차가 복잡하고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등이 부과되며 잔존자산 처분이 필요할 경우 회생절차를 바로 종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제2절 회생계획·회생계획변경에 의한 M&A와 관리인의 역할

1. M&A 추진시기의 검토

채무자의 M&A를 추진할 주체는 관리인이다. 관리인은 매각주간사 선정 및 인수계약 등의 당사자로서 M&A의 시작부터 완결까지 모든 절차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M&A가 채무자의 회생에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M&A에 소극적으로 임하여서는 안 된다.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된 경우 관리인은 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을 우려하여 M&A에 소극적일 수 있다. 하지만 관리인은 인수희망자가 관리인에게 구체적 인수계획을 제시하거나 회생계획의 수행이 불명확해지는 시기에는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M&A는 채무자가 시장에서 인수가치가 있을 때에 성사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쳐 채무자의 영업능력이 하락한 상태에서는 M&A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하

다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M&A를 추진하여, 공개매각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또는 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할 수도 있다.

기존 경영자 이외의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경우보다 M&A 절차 추진의무가 강화되어 있다. 즉 제3자 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가능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도 장차 M&A를 추진할 것을 고려하여 회생계획 인가 후 M&A 가치를 높여 두는 것이 좋다.

2. M&A 방식의 검토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과 영업양도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관리인은 채무자의 영업상태, 재무상태 등에 따라 가장 유리한 M&A 방식을 채택하고, 매각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M&A는 채무자 외에도 매수인, 회생채권자, 주주 등 많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좌우되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복잡한 법률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매각주간사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투명성이 유지되도록 원칙과 기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매각주간사, 우선협상대상자, 인수예정자 선정 시 최종 용역제안서나 인수제안서를 제출받기 전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법원과 협의하여 미리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4.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관리인은 ① 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②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③ 채무자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영업·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57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예를 들어 정보 및 자료를 인수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채무자의 영업이나 사업의 유지·계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M&A가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할 의사가 있는 회사의 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실무준칙 제12호 'M&A 관련 홈페이지의 관리 요령'에 따라 채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① 채무자의 개요, ② 자본과 관련된 사항, ③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요 자산, 특허권 등, ④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관한 사항, ⑤ 채권자협의회 또는 채권단, ⑥ M&A 접촉 안내 등의 자료를 공시하여야 하고, 각 분기마다 공시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갱신하여야 한다.

법원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생회사의 M&A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공고 → 회생회사 M&A 안내), 채무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M&A 절차진행에 따른 각종 허가신청

관리인은 M&A 추진, 매각주간사 선정기준안 마련, 매각주간사 용역계약체결, M&A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마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MOU 체결, M&A 본계약 체결 등 각종 절차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인은 용역제안

서를 제출받기 전에 법원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두는데, 일반적으로 매각주간사 선정기준은 ① M&A 수행 및 자문실적, ② 업무수행능력, ③ M&A의 성공 가능성, ④ 용역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항목별로 일정 점수는 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관리인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선정기준을 통하여 공모에 응한 후보자 중에서 매각주간사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유상증자 및 인수대금의 규모, 인수대금의 조달확실성, 인수대금 중 부채 부분의 조달조건, 인수 후 경영능력, 컨소시엄의 경우 주인수자의 재무건전성, 고용승계 여부 등을 고려한다. M&A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책임 있는 경영주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구도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M&A 악용 방지

회생절차 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해약을 끼친 채무자의 경영자나 그 특수관계인 등이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회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회생계획에 정해진 영업양수 등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고(제231조의2), 회생계획 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제243조의2).

관리인은 인수희망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 주주, 주주였던 자 및 이와 관련 있는 자인지 여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인수예정자 선정 전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각주간사는 인수희망자가 위와 같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구 사주와 관련 있는 자 등인 경우에는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만일 인수희망자가 구 사주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7.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에서 M&A가 성립되면 관리인이 이를 토대로 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된다. 채무자의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조사기간의 만료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제223조 제1항), 이러한 사전계획안을 통하여 회생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인가 후 M&A에서는 채무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의 변경과 이를 위한 변경회생계획안 결의절차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변경회생계획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M&A 추진 경위, 인수계약의 내용, 기존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 또는 사채 발행, 회생채무의 감면과 인수대금에 의한 일괄 변제, 관리인의 종결신청의 무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3절 인가 전 영업양도와 관리인의 역할

1. 요건과 절차의 숙지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지만(제62조 제4항), 만일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한다면 위 상법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법원은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 시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제62조 제3항).

양도대상이 되는 영업이 채무자의 사업에 중요하지 아니한 일부이고 그 영업의 계속이 지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손실을 발생시켜 인가 전이라

도 시급히 정리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만으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시기의 검토

관리인은 ① 채무자가 영위하고 있는 복수의 영업 중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실적이 양호한 영업만을 남겨두고 이것에 경영을 집중하면서 그 이외의营业을 매각하는 경우, ② 채무자가 營業을 계속하기보다는 營業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채무자는 해산·청산하는 쪽이 보다 많은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營業을 전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인가 전 영업양도를 검토할 수 있다. 회생계획 인가 전의 영업양도는 통상 그 신청 전후에 양수인 후보자가 존재하거나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3. 영업양도 계약 시 유의사항

관리인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營業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여야 한다(제62조 제1항).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위와 같은 행위는 무효이다(제62조 제5항, 제61조 제3항). 관리인은 營業 또는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매각주간사, 채무자의 재산 및 營業상태를 심사할 법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규칙 제49조).

관리인은 양수인 물색이나 營業양도 허가신청 시 ① 양수인 후보자의 선정방법·절차가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② 입찰조건에 가액을 하락시키는 부당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인가 전 營業양도 허가 시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제62조 제3항), 이를 위해서 관리인이 營業양도 추진 시 미리 주요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영업양도 시 담보권 등의 처리

회생절차에서 인가 전에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자와 교섭을 통하여 담보권의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사용할 금액과 담보권의 소멸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포함시켜 법원으로부터 영업양도의 허가를 받고,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담보권을 변제함과 동시에 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도대상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영업양도 허가가 있는 후 관리인이 그 취소를 신청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제13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관리인의 역할

제1절 개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83조 제1항).

관리인이 회생계획을 모두 수행하거나 M&A 성공으로 변제계획을 일시에 수행하였을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회생계획을 모두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그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조기에 종결결정을 할 수 있다.

제2절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1.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대부분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진입하면 신규자금 차입 및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 현저한 곤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빨리 시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다른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의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의 하나가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이다. 과거에는 M&A를 통해 제3자가 채무자 회사를 인수하고 회생채무를 일시에 변제한 경우 외에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예가 많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하여 1~2차연도 변제만을 수행한 채무자에 대하여도 나머지 회생계획 수행에 장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생절

차 종결결정을 통해 시장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인도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를 잘 숙지하여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수행 가능성의 판단 시 고려요소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함에 있어 채무자가 변제를 개시하였는지 여부와 장차 나머지 회생계획의 수행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요소는 <표 16>과 같다.

<표 16> 조기종결 수행 가능성 고려요소

구분	고려요소
긍정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 수준을 대폭 초과 달성하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상당한 정도로 초과 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경상이익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부정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노사쟁의, 기타 채무자 내부의 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간섭 등이 계속되어 채무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조기종결의 실무상 운영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실무준칙 제14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은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재정적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의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 영업력 및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절차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기 회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로서 위 표의 부정요소가 없는 경우, ② 채무자가 위 표의 긍정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갖추면서 부정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③ 채무자가 최근 3년간의 회생절차 수행실적에 비추어 위 표의 부정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준칙 제4조).

다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서는 위 준칙상의 종결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회사에 대하여는 나머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회생절차를 종결하면 종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 수행하던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회사로 복귀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통상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주식회사인 채무자는 증자, 사채발행, 합병 등 회사의 조직법적 행위도 일반 상법에 따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변제를 지체하면 당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5. 조기종결 후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면 채무자가 더 이상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재산의 처분이나 영업의 양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회생 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 완료 시까지 채무자의 행위를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실제로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신뢰하지 못하여 회생절차 종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있다.

회생절차 종결 후 회사는 상법의 일반 규정에 의한 감독을 받게 되지만, 회사가 채권자들의 양보로 회생에 성공하여 시장에 복귀한 만큼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전에 관리인으로 하여금 나머지 변제업무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독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독방안은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 지는데, 통상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가 종결 후 회사의 감독을 위한 채권자협의체 구성 및 회사 감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협의체가 당해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를 감독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협의체 구성이나 협약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인으로부터 종결 후에도 감사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회생채무 변제 완료 시까지 회사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겠다는 취지의 약속서를 청구함으로써, 채권자들이 회사의 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회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또한 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를 새로 감사로 선임한 후 종결결정을 하기도 한다.

제3절 관리인의 역할

1. 회생절차 종결신청

가. 조기종결의 신청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실태를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채무자

가 조기종결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법원에 적극적으로 조기종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나. 채권자협의체의 구성과 보고 등

채권자협의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관리인이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방안 마련을 법원으로부터 권고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협의회와 사이에 채권자협의체의 내부 구성, 운영,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협의체 구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종결 후에도 회생채무 변제완료 시까지 채권자들에게 감사를 통해 회사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겠다는 취지의 약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

가.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회생절차 종결로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하므로, 관리인은 지체 없이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하여야 한다(제84조). 관리인이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제648조 제2항).

나. 퇴직금·특별보상금의 지급

회생절차 종결은 회생절차의 성공적 종료를 의미하므로 실무상 관리인에게 퇴직금,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는 채무자의 임원퇴직금규정, 관리인의 재직기간, 관리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특별보상금은 ① 관리인의 경영수완에 의하여 회생계획이 예정한 경영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때, ② 관리인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당해 관리인의 최초 취임 당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개선된 때, ③

관리인이 능동적으로 신규자본을 모색·유입하거나 다른 우량기업과 인수·합병을 이룩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기여를 한 때에 채무자의 규모와 재정상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될 수 있다(준칙 제1호 제5항).

관리인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임원퇴직금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퇴직금 산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법원의 퇴직금 산정에 도움이 된다.

다. 조기종결 후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

주식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생계획에서도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한 경우라면, 관리인은 종결 후부터는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회생계획에 정해진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변함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회생절차 종결 후에 변제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를 시도할 수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제14장 회생절차의 폐지와 관리인의 역할

제1절 개요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회생절차가 종료하므로, 회생절차 종료로 인하여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하는 것은 회생절차 종결결정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다만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회생절차 종결결정과 달리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리인은 폐지결정의 확정 시까지 관리인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관리인의 역할

1. 회생절차 폐지결정 전까지

가.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법원이 인가 전 폐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은 보통 ①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제1차 조사보고서나 수정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현금유지능력이 결여되고 신규자금 차입에 실패하여 조사위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제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산정이나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에 대한 조사위원 평가 이후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여 법원이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와 관리인의 의견을 모두 검토한 다음 인가 전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 인가 후의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실무상 관리인은 법원에 폐지요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인이 제출하는 자료는 ① 채무자의 개요,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내용, ②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현재까지의 경과, ③ 최근 5개년 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회생계획상의 추정과 대비), ④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회생계획 수행 현황과 향후 수행 가능성에 관한 의견(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규모와 변제계획, 회생채권 등의 변제 실적과 미변제채무의 현황, 회생계획 수행차질의 원인), ⑤ 공익채권 현황, ⑥ 현재의 주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현황(채권자명, 담당부서, 전화·팩스번호, 담당자) 등에 관한 것이다.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면 법원은 필요적으로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법원이 파산절차의 비용에 납명령을 하면 관리인은 그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회생절차는 종료한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바로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의 취하, 즉시항고장 각하결정, 항고기가 결정의 확정 등이 있을 때까지는 관리인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관리인의 임무도 종료한다. 관리인은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제84조, 제648조 제2항).

제 3 편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 · 보고업무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제1장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

제2장 관리인의 보고업무

제1장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

제1절 개요

법원은 통상 개시결정과 함께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다. 관리인은 허가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허가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개시결정 직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 결제 때마다 법원의 허가 사항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종류

1.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명한다. 통상 발령되는 보전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7〉 [표 8과 동일] 법원의 보전처분(예시)

- | |
|---|
| <p>1.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① 2010. 0. 0.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p> <p>②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금 〇〇원(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제외함.</p> <p>③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를 하는 행위.</p> <p>④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는 행위.</p> <p>2.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
|---|

위와 같은 보전처분 결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보전처분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전처분 결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전처분 결정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허용된 금액 이상의 채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전처분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모두 재판부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일정한 행위가 관리위원의 위임사항에 해당하는 개시결정 후 허가사항과 구별된다.

2. 개시결정 이후인 경우

가. 허가를 요하는 행위에 관한 결정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제61조 제1항). 또한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61조 제2항).

실무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표 18>과 같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정하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들은 대체로 채무자의 중요 결정사항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지출이 수반되는 법률행위 등이다.

나. 재판부 허가사항, 관리위원 위임사항의 구별

법원은 위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 중에서 채무자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허가사무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18조). 실무상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통

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를 주무 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정하면서 관리위원회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결정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8>과 같은데, 개시결정 당시 발령되는 허가사무의 위임결정문을 보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관리위원회에 위임되지 않은 허가사항에 관한 허가신청서도 주무 관리위원회의 공람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주의한다.

<표 18> 관리인의 법원·관리위원회에 대한 허가신청업무

구분	허가 대상 행위의 표시	재판부 허가사항	관리위원회 위임사항
가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	
나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금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
다	금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		○
	제3자의 영업의 양수	○	
라	항목당 금 ()원 이상의 금원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원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제외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지출은 제외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	
마	금 ()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
바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제	○	

제3편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 · 보고업무

구분	허가 대상 행위의 표시	재판부 허가사항	관리위원 위임사항
사	어음 · 수표계좌의 설정, 어음 · 수표용지의 수령 및 발행행위		○
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 해지)		○
자	소송행위. 다만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 · 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		○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 소송탈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	○	
차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	
카	권리의 포기	○	
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익의 철회	○	
파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하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	
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너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	
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신청	○	

3. 허가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인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허가사항의 2개 항목 이상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어느 항에 따른 허가사항인지를 특정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허가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여부, 재판부 허가사항인지, 관리위원 위임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판부 또는 관리위원에게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절 허가신청의 방법

1. 사전 허가신청의 원칙

재판부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 및 허가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의할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행위의 경우 가급적 그 기한의 1주일 전에, 늦어도 3일 전에는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질상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 보고나 대면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에서 주로 문제 되는데, 항소 제기 기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과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그 기한으로부터 가급적 1주일 전에, 늦어도 3일 전에는 허가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특히 회생채권 조기변제(제132조)나 신규자금 차입(제179조 제1항 제5호)과 같이 허가 이전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 대상 행위에 관하여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자제출 허가신청의 원칙

가. 개요

2014. 4. 28. 회생파산 전자소송이 시행되면서 허가는 관리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허가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한 다음 허가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리인이 대면 또는 전화에 의하여 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항상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허가결재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허가받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방식

허가신청의 방식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허가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취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류를 시정한 허가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한다.

만약 당초 허가받은 사항과 달리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관리인은 월간보고서에 기재된 '허가사항 지출내역'에서 주(註)를 달아 그 원인을 상세히 기재하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그 차액을 향후 지출할 예정이라면 이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감사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법원의 허가대상 행위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행한 행위는 무효로 된다(제61조 제3항 본문).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2. 관리인의 책임

만약 위와 같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해임사유가 될 수 있고(제83조 제2항 제2호), 관리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제648조 제1항).

제5절 허가사항의 항목별 설명

1. 부동산·자동차 등 등기·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가. 설명

재판부 허가사항이다.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용익물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임대를 하는 등의 모든 처분행위를 말한다.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아닌 재산'의 처분행위의 경우에는 시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허가사항에 해당함에 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의 처분행위는 그 시가에 상관없이 모두 허가사항에 해당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 유의사항

실제 발생했던 허가 위반 사례로, 관리인이 운영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시도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계좌로 받았다가, 계좌 개설은행의 지급거절로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법원의 허가사항 위반으로서 관리인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실무상 회생계획에서 자산을 매각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매각예정자산이 반드시 회생계획에서 예정된 시기나 가격으로 매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의 자금수지계획, 향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규모가 큰 부동산의 매각은 거래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공매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규모가 작은 부동산이나 개인 주택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회생절차 개시 직후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정매매가격의 파악을 위해 재감정도 고려하여

야 한다.

매각절차(공매 또는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고, 실제 매각 추진 후 계약 단계에서도 매수인의 선정, 매각가격, 대금수령 및 채권변제에 대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에 주의한다. 공매절차에서 유찰된 경우에도 재공매를 통해 매각을 할 계획이라면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 주식과 같이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 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미리 허가받은 매도금액에 구애되어 매각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업무용 자산 중 아파트 5세대 공개 매각
- 아파트 공개 매각 실시 결과보고 및 재 공개 매각
- 부동산 일반 매각 및 회생담보권 변제(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 노후 렌트카 매각
- 차량 폐차
- 아파트 임차보증금 회수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고 회생계획인가 이후 토지잔대금(정산금)을 납부한 다음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회사 앞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주는 경우
 - 해저통신국 유희공간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
 - 회사 소유 상가의 임대

2.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일정가액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

가. 설명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만 원⁵⁾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이 일정한 시가 이상이면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그 시가와 상관없이 허가가 불필요하다. 다만 허가가 불필요하였던 처분행위에 관하여도 매월(월간보고서)마다 그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통상적인 가격으로 ()만 원 이상의 의류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반품 받은 의류를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거나, 의류 제조용 기계 설비를 처분하는 경우는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준 금액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실무상 채무자의 금원 지출을 수반하는 행위 중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회생실무준칙 제6호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을 제정하여 실무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이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아래 <표 19>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19> 인가 후 지출수반행위의 법원허가 필요 기준액

연간 매출액(원)	기준액(원)
100억 이하	5,000,000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10,000,000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20,000,000
1,000억 초과 ~ 5,000억 이하	30,000,000
5,000억 초과	50,000,000

나.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해진 공사현장 기자재, 컴퓨터 등의 매각
- 건설회사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현금 또는 예금의 담보 제공

3. 재산 양수 관련

가. 금 ()만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단, 제3자의 영업의 양수는 제외)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실무상 기준금액은 채무자의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자재 구매
- 분리막 구입
- 장비 구매
- 채권의 양수

나. 제3자의 영업의 양수

재관부 허가사항이다. 영업양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임을 고려한 것이다.

4. 금원 지출 관련

가. 항목당 ()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지출(회생채권·회생담보권 변제 제외)

(1) 설명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를 제외하고는, 항목당 기준금액 이상의 금원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 위임사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금액을 정하는 방법은 제3항 재산양수 관련의 설명과 같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액수를 묻지 않고 재판부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변제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금지출에 관한 허가사항의 대부분을 관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으면서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 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지출은 허가가 불필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월(월간보고서)마다 그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항목당 기준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를 분할하여 항목당 지출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것처럼 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금원 지출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하여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금원지출 허가 신청서에는 세금계산서(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또는 대금청구서로 대체)를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3)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 원자재 구매 및 대금 지급
- 리스료 납부
- 개발 금형비 대금 지급
- 통신회선 사용료 지급

나.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변제

(1) 설명

회생계획의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그 액수를 묻지 않고 모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유의사항

실무상 관리인들이 채권자들의 독촉에 못 이겨 회생계획 인가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생채권을 변제하거나 공익채권 변제허가만을 받은 후 회생채권을 공익채권과 함께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이를 변제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미리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제132조). 회생채권에 대한 인가 전 변제는 금액을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그 허가를 할 때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무상 관리인이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경우는 법원이 별도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을 변제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인들이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이미 회생계획에 그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바, 주의를 요한다.

변제자금이 부족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의를 요한다. 회생계획에는 변제자금이 부족할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체로는 회생담보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재원으로 회생채권을 안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의 내역,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의 연체이자의 적용 여부, 미변제 사유 및 향후의 대책 등을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3) 사례

회생채권 조기변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정액 이하의 소액 상거래채권을 모두 변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과 같이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않고서는 건설회사인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재해보상금과 같이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상거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들을 공급하는 해외업체라서 회생채권의 미변제를 이유로 거래가 중단되면 단기간 안에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 조세 회생채권 인가 전 조기 변제
- 소액 회생채권 인가 전 조기 변제
- 전대차계약 재계약 및 회생채권 변제
- 회생채권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변제

6) 회생계획에는 변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회생담보권을 우선 변제한 후 남은 자금으로 회생채권을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전체에 대하여 안분하여 변제한 사례가 실제 발생한 적이 있었다.

5. ()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매매·임대차 등 계약의 체결·의무 부담행위

가. 설명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기준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는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임차를 가리키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위 제1항에 정해진 재판부 허가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상 채무자의 영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예컨대, 해운회사의 선박임차 또는 용선계약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재판부, 관리위원과 협의를 거쳐 재판부 허가사항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나.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본사 사무실 임차계약 체결(임차)
- 창고 임차계약 체결(임차)
- 선불시스템 서버장비 관련 유지보수 업무 위임계약 체결(위임)
- IDC 보안 서비스 업무 위임계약 체결(위임)
- 서울-부산 간 인터넷 백본망 용량증설을 위한 장비구매계약 체결(매매)
- 수도권 기지국 회선 21개소 구축공사계약 체결(도급)
- 퇴직자 충원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고용)
- 정비고 신축공사 계약 체결(도급)
- 차량 위수탁 계약 체결
-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6.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가. 설명

재판부 허가사항이다. 채무자의 기존 재산으로는 영업을 계속하기 어

려울 경우 운영자금 등을 차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자금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유의사항

신규자금을 차입하거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는 재판부 허가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아 자금을 빌려야 한다.

실무상 허가 없이 관리인, 대표이사 개인이나 그 밖의 채무자 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허가 없이 차재를 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인 제3자 등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그것이 차재에 해당하는지, 매매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어음할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 관리위원에게 문의하여 허가대상 행위인지를 구별하도록 한다.

다.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른 회사에서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는 행위
- 친척 또는 친구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행위

7.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발행행위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어음·수표 계좌를 설정하고, 어음·수표 용지를 수령하는 행위, 어음·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라는 특성상 실제로 어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8.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

가. 설명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해제 또는 해지가 아니라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는 재판부에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이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였는데, 확답을 하는 데 기간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연장결정을 받아야 한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제1편 제4장 제2절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과 제2편 제3장 제3절 2. 개시결정에 따른 법률효과 숙지 참조.

나.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생절차 개시 이전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회생절차 개시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건이 불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9. 소송행위

가. 설명

실무상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법원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미수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하되, 다만 매 3개월(분기보고서)마다 그 가압류·가처분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압류·가처분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허가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은 재판부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나.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 제기
- 사용료 청구의 소 제기
- 렌터카 사용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
- 소송 상대방과 화해
- 임의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다. 유의사항

관리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다.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⁷⁾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소의 제기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각종 소를 제기하는 것과 그 소송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모두 사전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소송대리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성공보수약정을 포함하는데, 그 성공보수금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과 구두로 협의를 한 후, 법원에 미리 성공보수금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대리인의 선임 허가신청-성공보수금 과다를 이유로 한 불허가-성공보수금 약정을 수정한 소송대리인 선임 재허가신청’이라는 불필요한 절차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7) 다만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되지만, 매 3개월(분기보고서)마다 그 가압류·가처분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정에 대한 권고를 받은 경우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로부터 조정에 대한 권고를 받은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의 판단에 비추어 그 조정 내용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조정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관리인은 조정을 권유한 담당 재판부에 대하여 다음 기일까지 그 조정 내용에 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오겠다고 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 그에 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수용 여부를 정하겠다고 진술하여야 한다.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은 재판부 허가사항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먼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그 결정 내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의기간 안에 이의 포기 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의기간을 경과시켜 버린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 이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이의를 하여야 한다.

결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으면 이에 대해 이의를 하든, 이의를 하지 않든 그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해진 이의기간이 2주인 경우 적어도 이의기간 만료 1주 전에는 재판부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실무상 이의기간 경과 직전에서야 비로소 허가신청을 함으로써 재판부에게 판단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평가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4) 상소제기

관리인이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소를 제기하거나, 혹은 재판부의 허가 없이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위 (3)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상소의 제기 여부 결정 역시 재판부 허가사항이므로, 상소제기기간의 말일로부터 최소한 1주일 전에 재판부에 항소제기 여부의 결정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0. 인사 및 보수결정

가. 과장급 이상(임원 제외)의 인사 및 보수결정

관리위원 허가사항이다.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직원 승진 인사
- 승진, 호봉승급
-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나.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1) 설명

재판부 허가사항이다.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에는 비등기임원의 경우도 포함한다. 임원의 인사 중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은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 후에 하는 사항이다.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제203조 제5항). 따라서 채무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사와 대표이사의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무상 회생계획에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이사 또는 대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무렵 법원과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재선임 여부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관리인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선임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수의 변동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라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통상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도 회생계획에 정하고 있다.

(2)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임원 해임 및 선임 인사
- 기술본부장 보직 인사
- 영업본부장 사임으로 인하여 상무이사인 영업본부장 신규 선임
- 임원 퇴직금 지급

11. 권리의 포기

가. 유의사항

채관부 허가사항이다. 채무자의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관리인이 소송 절차 외에서도 합의를 통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경우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체된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되 기한을 나누어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연체된 채권을 일시에 변제받기로 하되 당초 원리금 중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기로 하는 경우 등은 모두 권리의 포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미리 채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송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 임의조정, 강제조정 등의 내용에 조급이라도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 채무자 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강제조정한 경우
- 피고가 명의대여자 책임을 강하게 다투고 있어 이의신청 시 100% 승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강제조정을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상고하여도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상고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처로부터 8억 원을 받지 못하여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였으며, 이에 매출처는 균등분할상환계획과 함께 이미 발생한 이자의 면제를 요청함에 따라, 매출처의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채권 원금 8억 원을 분할하여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자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경우

1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재판부 허가사항이다.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에 담보물의 범위 및 가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가 추후 채권자의 담보권에 관한 증빙서류 추가 확인 및 추가감정 등을 통해 담보물 가치를 확정된 후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에 채권 증빙 서류 부족 등을 이유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가 채권 증빙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여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13.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재판부의 허가사항이다.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리스 조건 변경 재계약

14.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재판부의 허가사항이다.

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재판부의 허가사항이다. 희망퇴직의 경우를 포함한다.

16. 감자·신주발행·합병 등

재판부 허가사항이다.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조직변경이나 계속,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행위이다(제55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지사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도 시행할 수 없는바, 이를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 감소
-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및 자본금 변경
- 회생계획 인가 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 회생계획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나.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자의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주로 회생계획이 인가된 직후에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지며, 구조조정이나 사업부문의 변동 등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경우

도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한 필요도 없이 퇴직하였거나 퇴직할 임원이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남아 채무자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1) 설명

신규투자, 관청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이나 벌금의 납부 등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허가사무는 관리위원에게 위임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허가사항들이 관리위원 허가사항으로 신청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임금교섭행위

관리인의 임금교섭행위는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임금의 지급수준은 채무자의 수익성과 자금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종전 실무례를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종업원들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합의한 뒤 법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준칙 제10호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에서는 관리인이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 수준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근로자 측과 합의를 할 때에도 합의예정안을 법원에 사전 보고하고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계획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에는 인건비의 지급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한, 원칙적으로 임금의 인상은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인건비의 지급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임금인상을 허가신청할 경우에는 ① 최근 3년간 회생계획상의 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이익 달성 정도, ② 최근 5년간 직급별 임금인상률, ③ 과거 상여금 지급률(단체협약 내용 및 실제지급률), ④ 인상 전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첨부함이 타당하다.

(3) 사례

이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생채권자 등 목록 변경·정정
- 회사 본점 이전
- 단체협약 변경서 체결
- 취업규칙 개정
- 임금 협약 체결 연봉제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위한 외부감사계약 체결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
- 일본 합작 법인 설립

17.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재판부 허가사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규모 회사에 있어서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즈음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자금 지출이 수반되면서 단순 반복되는 허가 대상 행위를 특정하고, 각 허가 대상 행위별로 한도 금액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한 후 허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가. 사례

실제 발생했던 허가대상 행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임직원 급여, 연차수당 및 퇴직정산금 대금 지급
- 하도급·용역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
- 원자재구입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기업경영을 위한 운영 자금 지급
- 공사수급계약(신규, 변경)체결 및 보증서 등 제공 행위
- 아파트 분양 및 분양권 매매계약 동의
- 발주처 사업비 인출 동의

나. 제외 대상 행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는 재판부 허가사항으로 포괄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유의사항

포괄허가대상행위는 CRO 또는 감사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하고, CRO 또는 감사의 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또한 포괄허가에 의하여 지출한 자금내역 및 체결한 계약서는 다음 달 월간보고서에 포괄허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이행내역을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절 접대비 관련 허가신청 및 보고

1. 접대비 예산 편성 허가신청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초마다 전년도 접대비 예산 집행실적을 보고하고 신년의 접대비 예산을 편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대

비 예산 편성지침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접대비 예산편성 지침

-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 원칙적으로 사용인별(임원별·부서별), 비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 예외적으로 위와 같이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접대비 관리 및 사용방법

관리인은 접대비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임원이 사용한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기부금 등)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접대비 사용방법은 법인카드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을 취할 경우 적절한 사전 내지 사후 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1만 원 이하의 금액을 사용하였을 시는 영수증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3.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

접대비 사용실적은 채무자의 감사(감사가 없는 회생회사는 관리인)가 확인하고, 관리인은 법원에 그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접대비 사용 실적 보고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21>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방법

- 매분기 보고서 제출 시 임원별·부서별 사용실적은 따로 항을 만들어 보고한다.
- 접대비와 구별되는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기부금 등은 따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제7절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1. 급여 지급 허가신청

급여 지급에 대한 허가사항은 보전처분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재판부 허가사항, 개시결정 후에는 관리위원 위임사항에 속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임원(비등기 임원 포함)의 급여는 일단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이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형식적으로는 임원이더라도 처리하는 업무의 실질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지급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허가신청서에는 급여지급 대상기간과 지급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인원수 및 금액(총급여액, 공제액, 실지급여)을 기재하며, 전월과 금월을 비교하면서 급여액의 차이 요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급여지급 전후의 채무자의 자금보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양식 36].

2. 직원 채용 허가신청

직원 채용에 대한 허가사항은 보전처분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재판부 허가사항, 개시결정 후에는 관리위원 위임사항에 속한다.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의 신규채용은 최소화함이 타당하나, 회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에는 신규채용 예정 직원의 성명, 근무예정부서, 직급, 담당업무, 연봉 등을 기재하고, 이력서와 급여수준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퇴사직원이 없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이나 조사보고서상의 인건비 한도내 인지를 소명하여야 한다[양식 37].

3.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

원자재 구입 허가사항 역시 보전처분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재판부 허가사항, 개시결정 후에는 관리위원 위임사항에 속한다.

자재 구매업무(업체선정 및 구입가격)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구매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에 의해 구매 대상 업체를 선정하되, 수의계약에 의한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독과점 품목, 발주처에서 대상 업체 지정, 구매조건 유리 등)를 명확히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또한 구입대상 자재비용의 발생시기 또는 기간을 명시하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지급청구서, 각종 계약서 등)를 첨부하도록 한다[양식 38].

4.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는 재판부 허가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아 자금을 빌려야 한다. 또한 차재는 법원 허가사항으로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므로(제179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2호), 그러한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허가신청을 하도록 한다.

허가신청서에는 차입금액, 용도, 이자율, 상환방법을 상세히 기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안)과 이해관계인 의견조회를 위한 공익채권자 명부를 첨부한다[양식 39].

5.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허가신청 사항(정관변경, 출자전환, 임원선임 등)

통상 회생계획에는 회생계획 인가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관 변경, 임원 퇴임 및 신규임원 선임,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으면, 즉시 위 사항들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는 모두 재판부 허가사항에 해당한다[양식 40~42].

회생계획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후 50일 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주식의 감사 및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을 신속히 마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허가를 신청한다[양식 44]. 주주총회 개최에 관하여는 제2편 제9장 제5절 참조.

6.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조사기간 내에 이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특별조사기일에서 시부인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일이 촉박하여 채권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거칠 수 없거나, 증빙자료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단 이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다시 조사한 결과 그 채권을 시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를 철회하여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행한 이의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한다[양식 43].

이의철회 및 정정허가신청 시에는 이의철회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인의 보고업무

제1절 개요

관리인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93조). 실무상 법원과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회생계획 수행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경영실태와 회생계획 수행상황을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업무, 재산상황 및 그 동향에 대한 구두 설명이나 서면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한편 실무상 관리인은 위와 같이 법원이 보고할 사항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도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 예로는 회생채권의 소멸이나 변동에 관한 보고,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사임 보고(사임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의 결과 보고 등이 있는데, 종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사항에 대한 결과나 회생계획 수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실무상 회생계획 수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관리인에게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출할 보고서의 내용과 제출요령을 정한 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또한 준칙 제9호 ‘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을 제정하여 채무자의 자회사 현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준칙 제8~9호).

제2절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1. 보고서의 종류

관리인이 법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로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의 3가지 종류가 있다. 2/4분기보고서는 제목을 '반기보고서'로 붙이고, 4/4분기보고서는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단, 매 분기 말의 월간보고서(3, 6, 9, 12월의 월간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분기의 표시는 채무자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는 1, 2, 3월이, 3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4, 5, 6월이, 6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7, 8, 9월이, 9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10, 11, 12월이 1/4분기가 된다.

2. 보고서를 제출할 자

월간·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 포함)는 보전처분 이후 단계의 채무자가 제출하고,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다만 보전처분 이후 단계의 채무자가 개시결정을 받지 않은 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가 아니라 4/4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되, 그 내용은 1/4분기, 3/4분기보고서의 작성요령에 따른다.

3. 보고서의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각종 보고서의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재판부는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및 보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생계획이 인가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 수행상태, 영업상황, 경영실태, 자금사정, 관리인의 업무수행 성실도 등을 종합하여 월간보고서를 격월간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1/4분기 및 3/4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표 22〉 각종 보고서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구 분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채무자 현황 및 연간 보고서
제출횟수	매월 1회	분기별 1회 (4/4분기 제외)	매년 1회
제출기한	익월 20일까지	▷ 1/4, 3/4분기 -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4 분기 -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4. 보고서의 제출방법

보고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해당 파일을 주심판사와 주무 관리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

5. 보고 방법

보고의 방법은 각종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받거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직후에 담당 재판부 주심판사와 상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보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절 각종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각종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은 [준칙 제8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절 각종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각종 보고서별로 누락하거나, 흔히 잘못 작성하기 쉬운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월간보고서

가. 입금실적과 자금수입의 구분

‘매출실적과 입금실적’에 있는 ‘입금실적’은 매출액 중 입금된 금액을 기재하고, ‘자금수지표’에 있는 ‘수입’은 영업외수익 등을 포함한 전체 자금수입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똑같은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금수지표’에서는 수입내역을 매출채권 회수금액과 영업외수익으로 인한 수입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매출실적과 입금실적’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자금수지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의한다. 실무상 관리인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일으키는 부분에 해당한다.

다.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은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및 ‘자금수지표’에 반영하지 않고(다만, 자금수지표에 주석으로 별도 표기한다), 실제로 입금된 경우에 비로소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중 ‘입금실적’에, ‘자금수지표’ 중 ‘수입금액’에 반영한다.

라. 12월 월간보고서의 사업계획서 및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이행 상황표

12월 월간보고서에 ‘사업계획서’와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이행상황

표'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즉 회계연도 마지막 달의 월간보고서에는 신 회계연도의 월별 매출목표 및 자금수지계획과 분기별 손익목표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회생계획상 당해연도 변제분에 대한 이행상황을 기재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이행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허가사항 이행 여부 기재

월간보고서에는 당월 허가사항내역 및 허가금액의 당월 지출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허가 시점과 지출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당해 월간보고서만으로는 당초 허가된 금액과 그에 기한 실제 지출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물론 그 지출금액이 언제 허가된 금액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인은 월간보고서에 기재된 '허가사항 지출내역'에서, ① 그 표 우측 말미에 '비고'란을 두어 그곳에 당해 지출금액에 관한 '허가일자, 문서번호, 허가내용, 허가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② 당초 허가된 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註)를 달아 그 원인을 상세히 기재하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그 차액을 향후 지출할 예정이라면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종전에 제출된 월간보고서와의 불일치

월간보고서 중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자금수지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이 차례로 모두 기재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 실무상 종전에 제출된 월간보고서와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자금수지표'의 기재사항이 다르게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제출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 회생계획과 실적의 비교

인가 후 회사의 경우 매출, 입금, 이월잔액 등 항목에서 자체 목표가 아닌 회생계획 대비 달성 정도를 표시하여,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분기보고서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2. 분기보고서

가. 손익계산서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손익계산서에도 ‘회생계획’ 및 ‘회생계획 대비 달성률’을 누락하는 경우가 잦은바,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판매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기재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회생계획 수행상황 등

실적과 회생계획상의 예정치 사이에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註)를 달아 그 사유를 기재하고, 대차대조표의 각 항목 중 전기에 비하여 큰 변동이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도 각기 주(註)를 달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다. 접대비 사용현황

분기보고서에는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되는 접대비 한도액), 실제 지출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월간보고서와의 차이점

월간보고서와 달리, 분기보고서에는 주요 부문(품목)별 매출실적표, 주요 부문(품목)별 생산실적표,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및 수출대금결제현황표(수출부문이 있는 경우), 수주실적표(건설, 조선 등 주문생산부문이 있는 경우), 분기 대차대조표, 분기 손익계산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 현황표, 공익채권현황표, 접대비사용현황표, 사업현장명세표(건설업자의 경우)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마. 회계감사기관의 반기검토의견서

반기보고서에는 회계감사기관의 반기검토의견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

다.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연간보고서를 가결산 결과에 따라 작성하였다면 연간보고서에 가결산 수치임을 적절히 표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결산보고서와 함께 가결산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연간보고서의 수치와 달라진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현황 및 연간 보고서

채무자 현황 및 연간 보고서 역시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연간보고서를 가결산 결과에 따라 작성하였다면 연간보고서에 가결산 수치임을 적절히 표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결산보고서와 함께 가결산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연간보고서의 수치와 달라진 부분을 명시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애초부터 가급적 회계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절차의 번잡을 덜 수 있음에 주의한다.

제5절 허위보고의 경우

실무상 관리인이 법원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 발생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었다.

- ① 법원의 허가 없이 이미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마치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새롭게 회생채권 변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채무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실제 사용 명목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 ③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변제한 후, 법원에는 변제허가내용에 따라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고한 경우

이러한 관리인의 허위보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제648조 제2항), 관리인의 해임사유에도 해당함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제83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6절 관리인 평정에의 사용

실무상 채무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정기일을 실시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채무자에 대하여는 적어도 2달에 1회 이상씩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중요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므로 따로 평정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평정기일에서는 주로 관리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정기적인 보고서의 내용과 그동안 채무자에 관하여 발생된 주요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상태와 관리인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각종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보고서가 궁극적으로 관리인에 대한 평가에 사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제 4 편

관리인의 책임과
법원의 감독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제1장 관리인의 민·형사책임

제2장 법원의 감독

제1장 관리인의 민·형사책임

제1절 개요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의 각종 허가신청과 보고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므로, 관리인은 그 결정에 맞추어 각종 허가신청업무와 보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 등의 목록과 시부인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책무를 부담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착수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후부터 종료 시까지 법원이 명하거나 법률에 정해진 각종 책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때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관리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절 손해배상책임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82조).

관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① 관리인이 취임 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재산이 일실된 경우, ②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에 시부인을 잘못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이다.

제3절 형사책임

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45조 제1항).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48조 제1항).

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48조 제2항).

채권자협회의 자료 제공 청구에 대하여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49조 제1호).

제2장 법원의 감독

제1절 개요

법원의 관리인에 대한 감독권은 ① 관리인의 해임, ② 관리인의 각종 행위에 대한 허가, ③ 법원선임 감사의 감사실시, ④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실시, ⑤ 채권자협회의의 실사청구 등을 통하여 행사된다.

제2절 관리인의 해임

법원은 관리인에게 아래 <표 23>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 심문절차를 거쳐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제83조 제2항).

관리인은 법원의 해임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제83조 제4항), 일단 해임결정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표 23> 관리인의 해임사유

해임사유	상세내용·예시
제74조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	-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대표이사 등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것이 기존 대표이사의 관리인 선임 후 발견된 때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 관리인이 회생절차 진행 도중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특정인의 편의를 보아 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때 -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허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해에 치중하는 경우 - 관리인이 회생계획 수립이나 그 수행 가능성 검토와 관련하여 조사위원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조사위원 보수 이외에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 합리적 이유 없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영업이익을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거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위 기재에 상당할 정도의 임무 해태가 있는 경우

제3절 법원선임 감사의 감사 실시

1. 감사의 업무수행

감사는 채무자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계장부 기타 채무자의 내부 서류를 열람하고 영업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감사는 엄정하고 객관성 있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① 법원의 허가 없는 자금의 조성 및 지출이 있는지 여부, ② 회계계정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③ 부당한 수입감소 또는 지출증가가 있는지 여부, ④ 채무자 조직의 능률성, ⑤ 채무자 내부에 파벌 또는 이익집단,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의 존부, ⑥ 노동생산성의 저하, 근로 분위기의 해이 기타 채무자 운영에 있어 부정적 요인의 존부, ⑦ 준칙 제9호 '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요령' 소정의 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⑧ 관리인이 조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점검·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감사의 보고업무

가. 감사의견서 제출

감사는 관리인의 분기보고서 제출 시 별도로 감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의견서에는 채무자의 업무처리 과정에 상법 제413조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명기하여야 하고, 특히 ① 회계 및 자금관계 보고내용의 적부, ② 당해 분기 감사실적의 개요, ③ 자회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특이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법원 명령사항 보고

감사는 상법 제412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외에 법원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다. 즉시 대면보고

감사는 ① 이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이 관련된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 ② 채무자 내부의 특이한 사정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 ③ 채무자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아니한 사항, ④ 급속을 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통상적인 체계를 거쳐서 보고하기에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원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이사 등과 감사의 상호 협조의무**가. 관리인의 협조의무**

관리인은 감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결재하는 서류를 모두 결재 전 또는 결재 후 지체 없이 감사의 공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회계장부 기타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관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이사의 협조의무

이사는 채무자 내부에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거나 채무자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2조의2).

다. 감사의 협조의무·비밀준수의무

감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관리인의 직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장부, 공람서류 기타 감사를 위하여 제공된 문서와 자료는 신속히 열람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감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도 아니 된다.
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준칙 제4호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참조.

제4절 외부감사인의 감사 실시

1. 개요

회생절차가 개시된 모든 채무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적절하고 책임 있는 외부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영세한 소규모 법인인 경우 등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관리인의 회계감사계약 체결 허가신청

가.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의 개시 후 4월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부감사인과 채무자에 대한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장기 회계감사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거나 기타 사유로 당해 연도에 별도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위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의 지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4월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외부감사인을 지정 요청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지정된 외부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당해 채무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기업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외부감사인 선정방식과 절차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외부회계감사의 선정자격

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 및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해 채무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만한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3년 이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외부감사인은 회생계획 인가 회계연도부터 3년간, 당해 채무자의 조사위원직을 수행하였던 외부감사인은 회생계획 인가 회계연도 익년부터 3년간 당해 채무자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동일한 외부감사인과는 3개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기간 연속하여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다. 회계감사계약 체결 허가신청

관리인은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외부감사인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준칙 제5호)의 별지 양식 참조.

관리인은 외부감사인의 서약서를 첨부하고 외부감사인 회계감사계약의 내용, 최근 3년간의 외부회계감사 또는 경영컨설팅을 한 회계법인내역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외부회계감사계약 체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관리인은 반기 또는 기말마다 외부회계감사의 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부회계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관리인이 제출하는 반기·연간보고서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제5절 채권자협회의 실시청구 등

채권자협회는 ①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회생 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재산 및 영업상태에 대한 실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59조).

또한 채권자협회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그 밖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규칙 제42조 제1항), 변호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 전 또는 제공받은 후,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비용 및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협회 또는 변호사 등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규칙 제42조 제4항).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및 보수를 결정한다(규칙 제42조 제6항).

부 록 I

각종 양식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진행일정표

일정	비고
접수	
배당, 주무 관리위원 내정	
감독행정청 등 통지(사무과)	법40①(감독행정청, 금감위, 세무서등)
보전처분의견조회	법43①(관리위원회, 기한 즉시)
보전처분	법43②(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포괄적 금지명령	법45(보전처분 전제)
비용예납명령	법39
채권자협의회 구성	법20①, 규칙34①(관리위원회가 신청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1주일 이내) (중소기업 경우 예외 가능)
대표자심문기일 지정	법41
대표자심문	법41(필요적)
현장검증	
개시 및 관리인선임에 관한 의견조회	법50(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선임 의견조회	법87(관리위원회)
개시결정(관리인 선임)	법49(신청일로부터 1월 내)
조사위원 선임	법87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계약	
목록제출기간	법50(개시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실무상 개시일부터 2~3주 전후)
채권신고기간	법50(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실무상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2~3주 전후)
채권조사기간	법50(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실무상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2~3주 전후)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법91, 92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법87(실무상 개시일로부터 2~3개월)
보고 집회 또는 주요사항통지, 관계인설명회, 기타 적절한 조치	법98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법50(조사기간 말일부터 4월 이내)
심리 및 결의 집회 기일지정결정	법224, 232
심리 및 결의 집회(특별조사기일)	법239(개시일부터 1년 이내, 6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인 감 신 고 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80px; height: 80px; margin: 0 auto;"></div> <p>(법인인감도장날인)</p>	상 호: 주식회사 0000 본 점: 서울 00구 00동 00-00 (인감대지 첨부란) 관리인 000
	. . . 제출

위와 같이 인감을 신고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신고인 (상호) 주식회사 0000
 (본점) 서울 00구 00동 00-00
 관리인 000
 주소 00시 00구 00동 000아파트 000동 000호


(개인인감)
(법인인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주)


1. 신고인란에는 인감대지의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와 인감제출연월일 제외)을 기재하고 인감제출자가 상호사용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인란의 날인은 인감제출자가 지배인인 경우와 인감을 제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으로 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지배인이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인감을 제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신고서' 옆에 '(제제출)'이라고 부기하여야 합니다.

인 감 대 지

 (법인인감도장날인)	상 호: 주식회사 0000 본 점: 서울 00구 00동 00-00 관리인 000
	. . . 제출

 (법인인감도장날인)	상 호: 주식회사 0000 본 점: 서울 00구 00동 00-00 관리인 000
	. . . 제출

 (법인인감도장날인)	상 호: 주식회사 0000 본 점: 서울 00구 00동 00-00 관리인 000
	. . . 제출

 (법인인감도장날인)	상 호: 주식회사 0000 본 점: 서울 00구 00동 00-00 관리인 000
	. . . 제출

부록 I 각종 양식

재판부	
주심판사	재판장

○○○ 주식회사

재판부 보고사항
법원용

우)○○○-○○○ 서울 ○○구 ○○동 ○-○/☎ 02-○○○-○○○○/팩스 02-○○○-○○○○

문서번호: 회생 제20○○ - ○○○호 담당 ○○팀 ○○○(02-000-0000)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참 조: 관리위원 ○○○ 위원님

제 목: 법률상관리인 인장 조제보고

1. 폐사는 귀원으로부터 20○○년 ○○월 ○○일자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아래와 같이 관리인 인장을 조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아 래 -

1. 관리인: ○○○
2. 관리인 인장 조제내역: 첨부 참조

(첨부)	1. 법인인장 조제내역 및 책임각서	○부
	2. 회수한 법인인감내역	○부
	3. 인감신고서	○부
	4. 인감대지	○부
	5. 별지목록	○부

채무자 ○○ 주식회사
 관리인 대표이사 ○ ○ ○

법인인장 조제내역 및 책임각서와 회수한 법인인감내역

① 법인인장 조제내역

구분	인장	사용부서	용도	관리책임자	
				정	부
법인인장	인장	관리인실	법원제출문서 등 주요사항 일반상거래용 금융기관용	관리인 김갑동	과장 이을순
				서명	서명

② 인장에 대한 책임각서

인장에 대한 책임각서					
<p>제목: 법인사용인장에 대한 관리책임의 건</p> <p>폐시는 년 월 일 시부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리인 법인, 사용인장을 조제하고 사용함에 있어 본 인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고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겠습니다.</p>					
구분	인장	사용부서	용도	관리책임자	
				정	부
법인인장	인장	관리인실	법원제출문서 등 주요사항 일반상거래용 금융기관용	관리인 김갑동	과장 이을순
				서명	서명

③ 회수한 법인인장 내역

구분	인장번호	인장	사용부서	용도	관리책임자
법인인감		인장	본사	회사 주요사항	관리인 김갑동
사용인감		인장	관리팀	은행용 / 대관업무 등	서명

* 추가할 사용인감이 있는 경우 용도구분하여 내역에 포함하면 됩니다.

* 인장조제 및 인감신고시 필요서류는

- 법인인장 조제내역 및 책임각서와 회수한 법인인장내역
: 법인인장 조제내역 1부, 책임각서 1부, 회수한 법인인장내역 1부
- 관리인인감신고서: 인감신고서 1부, 인감대지 1부, 관리인인감증명서 1부, 관리인 주민등록초본 1부, 관리인 선임등기에 필요한 별지목록 1부

별 지 목 록

구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원인
대표이사/ 법률상 관리인	○○○	○○시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	20○○. ○. ○. 관리인불선임결정

○○ 주식회사

우)○○○-○○○ 서울 ○○구 ○○동 ○-○/☎ 02-○○○-○○○○○/팩스 02-○○○-○○○○○

문서번호 ○○회합○○ 제20○○ - ○○○호
 수 신 채무자 ○○ 주식회사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제 목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안내

1. 귀사(하)의 무공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당사는 20○○년 ○월 ○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하고 채권신고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라며(당사전담반 ☎ ○○○-○○○○○으로 전화요망), 회생채권 신고서 등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양식 - 자주 사용하는 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http://seoul.scourt.go.kr>).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등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상단 '공고'란에 공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권신고자의 범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가능한 자
2. 채권 신고기간: 20○○년 ○월 ○일~20○○년 ○월 ○일(0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공휴일에는 신고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 신고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 우편제출 시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 접수증 동봉 시는 반송용 봉투(예: 회송용 민원우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우표첨부)
4. 신고 및 이의 시 유의사항: 첨부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참조
5. 채권신고방법 및 사전에 당사와 협의가 요망되는 사항은 **당사 전담반 및 거래 지점(부서)**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많은 채권자로 인해 절차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사오니, 채권신고 및 채권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전담반으로 먼저 전화하시기 바라며, 법원담당자에는 당사전담반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에 대해 문의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 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관계인집회 통지서	1부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1부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서	1부
	4.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접수증	1부
	5. 위임장	1부

채무자 ○○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 ○

통 지 서

사 건 2000회합00 회생
채 무 자 00 주식회사 (주된 사무소 : 서울 00구 00동 0-0)
법률상 관리인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0. 0. 0 14: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또한 다음과 같이 관계인집회기일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1.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2000. 0. 0. 15:00
2.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

2000 . 0. 0.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0 0 0

< 유 의 사 항 >

1.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2000회합0)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이 출석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채권자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4. 관계인집회 시 출석 확인을 위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집회 시작 30분 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공고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권신고자의 범위: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거나 주주·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2. 채권신고기간: 20○○. 00. 00. ~ 20○○. 00. 00. (09:00~18:00 / 12:00~13:00는 점심시간이오니 그 외 시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서류의 종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서 2부
증빙서류 및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작성) 2부
금융거래정보(주식보유수) 이용 동의서(주주에 한함) 2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접수증 1부
4. 신고서 작성요령
* 모든 신고서류와 증거서류는 1부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서: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1부 작성
 - 거래명판 및 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란에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신고는 채권자의 채권금액 전부를 신고하시고 아래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금액 전부 · 약정이자의 계산은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것과 개시결정일 이후의 것을 구분하여 작성
의결권의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 행사금액을 기재(통상 채권의 금액과 같음)
채권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팩시밀리 번호 포함) 및 전자우편주소 기재
채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회생채권: 채권발생의 시기, 발생원인, 이자의 약정 유무, 이자율, 변제기 등 · 회생담보권: 담보권의 목적물, 담보권의 내용 등 · 주식·출자지분: 주식·출자지분의 종류와 수(주권번호 기재 요) 또는 그 수액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당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 당사자,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확정여부를 기재
소송 계속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관할법원, 소송 당사자,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채권 신고 시 첨부한 증빙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기재

2) 증빙서류 및 위임장, 신고접수증의 종류 및 작성요령

종류	내용	부수	비고
채권에 대한 증빙서류 (계약서 등)	차입증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어음(전자어음보유확인서)의 '원본확인필'한 사본 2부 - 어음의 경우 최종소지지만 채권신고 가능 - 물품납품계약의 경우 거래명세표 및 인수증사본 첨부할 것 - 채권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사본 첨부할 것 - 전부명령의 경우 법원결정문 사본 첨부할 것	1부	기타 경우는 채무자회사에 문의
인감증명서	채권자가 개인이면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1부	
소명자료 (등기, 등록증)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1부	
제출자 자료 (신분증, 위임장)	채권자 본인 직접신고 시 신분증사본 대리인이 신고 시 위임장(인감날인)제출	1부	
신고접수증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기재	1부	반송용 우편 동봉 시 송달

5. 제출신고서류의 순서

1) 법인의 경우 ① 채권신고접수증 ② 회생채권 등 신고서 ③ 회생채권 등 신고내역서(예시참조) ④ 채권 증빙서류(계약서 등 사본) ⑤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⑥ 법인등기부등본 ⑦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필요)	2) 개인(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① 채권신고접수증 ② 회생채권 등 신고서 ③ 회생채권 등 신고내역서(예시참조) ④ 채권 증빙서류(계약서 등 사본) ⑤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⑦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필요) 또는 신분증 사본(본인 신고 시)
---	--

※ 주주의 경우는 금융거래정보(주식보유수) 이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원본확인필'된 사본을 제출하세요(원본제출하지 마세요).

6. 협조 및 유의사항

- 1)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한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하는 회생채권 등이 위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일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나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금액·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고 있는 권리 전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은 관리인에 의하여 신고기간 이전에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이해관계인은 채권 신고기간 동안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채권신고서류 배부처: (당사전담반 ☎ 000-0000으로 전화요망)

8. 채권신고 장소 안내

- 1) 신고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 2)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3) 교통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법원·검찰청) 11번 출구 하차
- 4)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9. 조사기간 및 이의절차 안내

- 1) 조사기간: 2000년 0월 0일 ~ 2000년 0월 0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공고란 중 '회생(회단·회합)' 부분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이의절차: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대상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이의 대상인 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중국판결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입 장

사건번호: 20○○회합○○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관 리 인: ○○○

수입자의 성 명: ()

주 소: ()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의 열람,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의 신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등에 대한 이의서의 제출,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수입자에게 위임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위 입 자 주 소: ()

성 명: () (인)

채권신고번호: (번)

※ 신고위임받은 대리인이 신고접수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다른 대리인이 집회 참석 시 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채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

채무자: ○○주식회사 (단위: 원, 주)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회생담보권	10	150,000,000,000	(담보권 중 40,000,000,000원은 회생채권으로 기재함)
회생채권	회생채권	450,000,000,000	
	담보권 중 회생채권 인정액	40,000,000,000	
	소 계	490,000,000,000	
합 계	510	640,000,000	
조세채권	2	1,000,000,000	조사대상 아님
주식·출자지분	5	300,000	조사대상 아님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총괄표

(단위: 원, 주)

목록번호	담보권자	주소	담보권 종류 및 목적물	가치평가 및 배분	채권내용	담보권 인정액	이경권 인정액	회생채권 인정액	우선권	비 고
담보권 1-1	(주)스은행 대표이사 ○○○		근저당권 청원시 00동 000의 지상 0.00㎡에 60세대 채권최고액: 2,000,000,000 실정순위: 1순위 (결정일 2004. 6. 1.)	총가액 25억 신순위 배분액 0 담 배분액 20억 배분 후 잔액 5억	주채무 1. 원금 2. 이자 보증채무 1. 원금 2. 이자	1,400,000,000 300,000,000	1,400,000,000 300,000,000			* 2000. 0. 0. 자 회생담보권 신고번호 5로 실로
1-2			주식 전권 00(주)반생 주식 수량: 100,000주 (결정일 2005. 3. 1.)	개시결정일 당시 시가로 평가	보증채무 1. 원금 2. 이자	200,000,000 40,000,000	200,000,000 40,000,000	300,000,000 20,000,000		* 2000. 0. 0. 자 회생담보권 신고번호 5로 실로
담보권2	00리스금융(주) 대표이사 ○○○		리스채권 청원시 00동 소재 00 단지 근저당권류 20점 (결정일 2004. 8. 1.)	잔존가치로 평가	주채무 1. 리스금 2. 연체이자 3. 규정손해금					
담보권3	00투자신탁(주) 대표이사 ○○○		어음 인도담보 00(주)반생의 어음 액면: 000,000원	실정가치로 평가	주채무 1. 원금 2. 이자	800,000,000 200,000,000	800,000,000 200,000,000			
담보권4	(주)00은행 대표이사 ○○○		근저당권 서울 00구 00동 00의 0 지상 2층 건물 채권최고액: 1,000,000,000 실정순위: 2순위 (결정일 2005. 1. 5.)	총가액 20억 신순위 배분액 15억 담 배분액 5억 배분 후 잔액 0	주채무 1. 원금 2. 이자	700,000,000 150,000,000	300,000,000 150,000,000			
담보권5	(주)00은행 대표이사 ○○○		근저당권 서울 00구 00동 00의 0 대 0.0㎡ 채권최고액: 2,000,000,000 실정순위: 5순위 (결정일 2005. 1. 5.)	총가액 25억 신순위 배분액 20억 담 배분액 0 배분 후 잔액 0	주채무 1. 원금 2. 이자	600,000,000 100,000,000	600,000,000 100,000,000			
소 계										
합 계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사 건	20○○회합○○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
회생 담보권자	성명·명칭	△△은행 주식회사	
	주 소	서울 ○○구 ○○동 ○○	
	전화번호	(02) 530-○○○○	e-mail def1234@xxxx.co.kr
목록 번호	담보권 1-1	신고 번호	
담보권의 내용·원인	1. (원인) 2004. 5. 1.자로 운전자금 대출 (내용) • 원금 200,000,000원 •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30,000,000원(2005. ○. ○.부 터 연 10%) • 개시결정일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원인) 2004. 8. 1.자 일반 대출 (내용) • 원금 300,000,000원 •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40,000,000원(2005. ○. ○.부 터 연 10%) • 개시결정일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담보권의 목적·가액	목 적	서울 ○○구 ○○동 대 ○○○m ² 및 지상 5층 건물	
	가 액	감정가액 400,000,000원	
회생담보권 인정액	금 400,000,000원		
의결권 액	금 400,000,000원		
목록 번호	담보권 1-2	신고 번호	
담보권의 내용·원인	2003. 6. 1.자 전세 보증금 100,000,000원		
담보권의 목적·가액	목 적	서울 ○○구 ○○동 ○○-○○아파트 제○○동 제○○호	
	가 액	감정가액 150,000,000원	
회생담보권 인정액	금 100,000,000원		
의결권 액	금 100,000,000원		
회생채무자 이외의 채무자(담보권 1-1)	성 명	홍 ○ ○	주 소 인천 ○○구 ○○동 ○○
	전화번호	(032)400-XXXX	e-mail
집행권원·중국판결 유무	(담보권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 ○○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 원고: △△은행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		
소송계속 여부			
비 고	• 담보권 1-1 중 회생담보권 인정액 초과분 170,000,000원 및 담보 권 1-1 및 1-2 중 개시결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각 회생채권 으로 인정		

〈부동산 담보물 배분표〉

담보권자: ○○은행 (단위: 원)

담보물 소재지	토지면적/건물면적	담보설정현황			가치 평가액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순위	설정일자	채권자		실정금액	배분액	실정금액	배분액	실정금액	배분액	실정금액	배분액	실정금액		배분액
서울 ○○구 ○○동 1,460㎡ 75		1	05. 3. 21.	○○은행	43억	30억	30억	13억	4억(주1)	9억	△△은행	30억	9억	0		
		2	05. 4. 20.	X X 은행		8억	4억(주1)	9억	△△은행	30억	9억	0				
		3	06. 2. 20.	△△은행	43억	실정자	실정금액	배분액	배분잔액							
		4	06. 3. 10.	□□은행		□□은행	5억	0	0							

※ (주 1) 공동담보가 있으므로 나머지 4억 원은 다른 공동담보에서 배분됨.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보 물건별로 배분표를 작성해 나가면 됨.

〈유가증권 등 담보물 배분표〉

담보권자: ○○은행 (단위: 원)

담보 목적물	주수/구좌	평가액	목적 기재액		비고
			배분금액	배분 후 잔액	
한국 ○○ 빙송 주식	40,000주	230,123,220	230,123,220	0	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인
○○ 유동화 채권		350,000,000	0	0	
○○공제조합 출자증권	200좌	49,470,750	49,470,750	0	
○○피이엔스 주식	50,000주	0(주 2)	0	0	지분잠식으로 실사기치 0

※ (주 2) 담보가치가 '0'이지만 나중에 유상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안에 이에 대비한 규정(예: 매각 시 대금을 당해 주식을 보유하였던 채권자의 회생채권변제에 사용하기로 하는 규정)이 필요함.

회생채권자의 목록 총괄표

채무자: ○○○○주식회사							(단위: 원)
목록 번호	채 권 자	주 소	채권내용	채 권 액	의결권 인정액	우선권	비 고
채권1-1	(주)△은행 대표이사 ○○○	서울 ○○구 ○○동 ○○	주채무 1. 원금 2. 이자 보증채무 1. 원금 2. 이자				• 2000. 0. 0.자 회생채권 신고(번호 3) 로 실행
채권1-2			주채무 (사채보증)				
채권 2	대한주택보증(주) 대표이사 ○○○	서울 ○○구 ○○동 ○○	장래의 구상권				
채권 3	○○○ (△공영사)	서울 ○○구 ○○동 ○○	약속어음금				• 2000. 0. 0.자 회생채권 신고(번호 5) 로 실행
채권 4	○○○ ○○○	광명시 ○○동 ○○의 ○	1. 소유권이전등기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2. 손해배상예정액	(목적물 가액) ○○원 (손해배상액)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소송 계속 중
소 계							
합 계							

회생채권자의 목록

사 건	20○○회합○○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
회생 채권자	성명·명칭	○○은행 주식회사	
	주 소	서울 ○○구 ○○동 ○○	
	전화번호	(02) 530-○○○○	e-mail abc123@xxxx.co.kr
목록 번호	채권 1-1	신고 번호	
회생채권의 내용·원인	(원인) 2003. 5. 1.자 일반 자금 대출 (내용) • 원금 100,000,000원 •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10,000,000원(2005. ○. ○.부터 연 12%) • 개시결정일부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우선권 유무			
의결권 액	금 110,000,000원		
목록 번호	채권 1-2	신고 번호	
회생채권의 내용·원인	(원인) 2004. 6. 1.자 제○회 회사채지급보증 (내용) • 원금 500,000,000원 •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50,000,000원(2005. ○. ○.부터 연 12%) • 개시결정일부부터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우선권 유무			
의결권 액	금 550,000,000원		
목록 번호	채권 1-3	신고 번호	
회생채권의 내용·원인	(원인) 2004. 8. 1.자 당좌대출 (내용) • 원금 400,000,000원 •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40,000,000원(2005. ○. ○.부터 연 12%) • 개시결정일부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우선권 유무			
의결권 액	금 440,000,000원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	(채권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 ○. 선고 2005가단 ○○ 대여금 판결 원고: ○○은행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		
소송계속 여부	(채권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 ○○대여금 원고: ○○은행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		
비 고	• 채권 1-3은 2005가단 ○○ 청구금액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임.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

채무자: ○○○○주식회사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주주·지분권자	주 소	주식·출자분의 종류	주식의 수· 출자분의 액수	의결권의 수·액수	비 고
1							
2							
3							
4							
	1						
	2						
		소 계					
		합 계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사 건	20○○회합○○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
목록 번호	주식 1	신고번호	
주주· 지분권자	성명·명칭	○○ 주식회사	
	주 소	서울 ○○구 ○○동 ○○	
	전화번호	(02) 500-XXXX	e-mail xyz456@XXXX.com
주식·출자지분의 종류와 수·액수	1. 보통주식 1,000주(액면: 5,000원) 2. 우선주식 500주(액면: 5,000원)		
목록 번호	주식 2	신고 번호	
주주· 지분권자	성명·명칭	○○ 주식회사	
	주 소	서울 ○○구 ○○동 ○○	
	전화번호	(02) 510-XXXX	
주식·출자지분의 종류와 수·액수	1. 보통주식 2,000주(액면: 5,000원) 2. 우선주식 1,000주(액면: 5,000원)		
집행권원· 종국판결 유무			
소송계속 여부			
비 고			

벌금·조세 등의 목록 총괄표

(단위: 원)

채무자: ○○○○주식회사		채 권 자	주 소	채권내용	액 수	비 고
신고 번호	목록 번호					
1		대한민국(○세무서)	서울 00구 00동 00	법인세 1. 본세 2. 가산금 3. 중가산금		부과일: 2000. 0. 0. 납기일: 2000. 0. 0. 소송진행 중(서울행정법원 2000구합00)
2		서울특별시	서울 00구 00동 00	지방세 1. 차등세 2. 농특세		부과일: 2000. 0. 0. 납기일: 2000. 0. 0.
3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과천시 00구 00동 00	과징금		부과일: 2000. 0. 0. 납기일: 2000. 0. 0.
4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청)	서울 00구 00동 00	벌금		부과일: 2000. 0. 0. 납기일: 2000. 0. 0.
5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00구 00동 00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일: 2000. 0. 0. 납기일: 2000. 0. 0. 공약채권
6		대한민국(○세관)	인천 00구 00동 00	관세		부과일: 2000. 0. 0. 납기일: 2000. 0. 0.
소 계						
합 계						

벌금·조세 등의 목록

사 건	20○○회합○○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
청구권자	성 명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장)	
	주 소	서울 ○○구 ○○동 ○○	
	전화번호	(02) 530-○○○○	e-mail abc234@xxxx.co.kr
목록 번호	조세 등 1-1	신고 번호	
청구권의 원인·내용	(원인) 20○○. ○○. ○○. 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 • 부과된 세액 금○○○원 • 가산금 ○○○원		
목록 번호	조세 등 1-2	신고 번호	
청구권의 원인·내용	(원인) 20○○. ○. ○. 자 2004년 귀속 소득세 부과처분 (내용) • 부과된 세액 금○○○원 • 가산금 ○○○원		
청구권자	성 명	대한민국(소관: ◇◇지방검찰청)	
	주 소	서울 ◇◇구 ◇◇동 ◇◇	
	전화번호	(02) 530-○○○○	e-mail abc5679@xxxx.co.kr
목록 번호	조세 등 2	신고 번호	
청구권의 원인·내용	(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 ○. ○. 자 2006고약○○호 ○○사건 (내용) 벌금 ○○○원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			
행정심판·소송계속 여부			
비 고			

회생 (채 권
담보권) 신고서
주식·출자지분

사 건: 20○○회합○○ 회생 (○○ 주식회사)

20 년 월 일 신고

회생 채권자

회생 담보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인)

주주·지분권자

주소: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위 대 리 인 성명: (인)

주소: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중

- 별첨 : 1.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내역서 1부
2. 신고인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신고 대리인의 위임장
4. 신고서 및 신고내역서 사본 1부. 끝.

접수번호	
------	--

회생채권 신고내역서

사 건	20○○회합○○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
회생 채권자	성명·명칭	○○은행 주식회사	
	주 소	서울 ○○구 ○○동 ○○	
	전화번호	(02) 530-○○○○	e-mail abc@xxxx.co.kr
목록 번호	채권 1-1	신고 번호	채권 (4)-1
회생채권의 원인·내용	(원인) 2003. 5. 1.자 일반 자금 대출 (내용) • 원금 120,000,000원 •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12,000,000원(2005. ○. ○.부터 연 12%) • 개시결정일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우선권 유무			
의결권 액	금 132,000,000원		
목록 번호	채권 1-2	신고 번호	채권 (4)-2
회생채권의 원인·내용	(원인) 2004. 6. 1.자 제○회 회사채 지급보증의 구상금 (내용) • 원금 500,000,000원 •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65,000,000원(2005. ○. ○.부터 연 12%) • 개시결정일부터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우선권 유무			
의결권 액	금 565,000,000원		
집행권원·중국판결 유무			
소송계속 여부			
비 고			

※ ‘신고번호’란 중 ()부분은 접수 순서에 따라 법원이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회생담보권 신고내역서

사 건	20○○회합○○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
회생 담보권자	성명·명칭	△△은행 주식회사	
	주 소	서울 ○○구 ○○동 ○○	
	전화번호	(02) 530-○○○○	e-mail def1234@xxxx.co.kr
목록 번호	담보권 1-1	신고 번호	담보권 ()-1
회생담보권의 내용·원인	1. (원인) 2004. 5. 1.자 운전자금 대출 (내용) • 원금 200,000,000원 •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30,000,000원(2005. ○. ○.부터 연 10%) • 개시결정일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원인) 2004. 8. 1.자 일반 대출 (내용) • 원금 300,000,000원 •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40,000,000원(2005. ○. ○.부터 연 10%) • 개시결정일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회생담보권의 목적·가액	목 적	서울 ○○구 ○○동 대 ○○○m ² 및 지상 5층 건물	
	가 액	감정가액 400,000,000원	
회생담보권 인정액	금 400,000,000원		
의결권 액	금 400,000,000원		
목록 번호	담보권 1-2	신고 번호	담보권 ()-2
담보권의 내용·원인	2003. 6. 1.자 전세 보증금 100,000,000원		
담보권의 목적·가액	목 적	서울 ○○구 ○○동 ○○-○○아파트 제○동 제○호	
	가 액	감정가액 150,000,000원	
회생담보권 인정액	금 100,000,000원		
의결권 액	금 100,000,000원		
회생채무자 이외의 채무재(담보권 1-1)	성 명	홍 ○ ○	주 소 인천 ○○구 ○○동 ○○○○
	전화번호	(032)400-XXXX	e-mail.
집행권원·중국판결 유무			
소송계속 여부			
비 고			

※ ‘신고번호’란 중 ()부분은 접수 순서에 따라 법원이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주주·출자지분 신고내역서

사 건		20○○회합○○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
주주· 지분권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		
	주 소	서울 ◇◇구 ◇◇동 ◇◇		
	전화번호	(02) 500-XXXX	e-mail	788def@XXX.com
목록 번호		주식 1	신고 번호	주식 (8)
주식·출자지분의 종류와 수·주권번호		1. 보통주식 총 1,500주(액면: 5,000원), 주권번호 ○○번 2. 우선주식 총 500주(액면: 5,000원), 주권번호 ○○번		
비 고				

※ ‘신고번호’란 중 ()부분은 접수 순서에 따라 법원이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회생 (채 권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신고 접수증	
사 건 번 호	20○○회합○○ 회생정리
채 무 자	○○주식회사
신 고 권 리 의 종 류	회생(채권,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접 수 번 호	
채 권 자 성 명	
위 대 리 인	
채 권 액	일금 원정(₩)

※ 이 접수증은 법원에 출석 시 항상 지참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 명의 변경 신고서

사건번호: 20○○회합○○ 회생
채무자:
채권자:
신고 시의 채권금액: 금 원(₩)
양도인의 채권신고번호: 신고번호 번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 양도 양수가 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아 래 -

1. 양도 양수 금액: 총채권액 금 원 중 금 원(₩)
2. 양도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시밀리: 전자우편 주소:
3. 양수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시밀리: 전자우편 주소:

신고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별첨: 1. 채권양수도 계약서 사본 1부
 2. 채권양도 통지서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위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시·부인의 일반기준

1.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개념

가. 회생담보권(제141조)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회사가 물상보증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내의 것.

나. 회생채권(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공통사항에 대한 기준

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신고는 부인함

(기산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 ○○. ○○.)

나. 증빙자료 미비

- 1) 증빙자료 미비는 회사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채권으로 부인하고, 증빙자료로 첨부된 계약서, 약정서, 세금계산서 등의 내용과 신고한 채권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부인함. 또한 이자지급 약정 없는 채권의 지급이자 신고액도 부인함(단, 회사에서 채권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인함).
- 2) 채권 신고 시 제출된 증빙자료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채권신고는 부인함.

- 다. 채권양도양수에 의한 채권 신고는 양도자의 채권이 회생회사 채무액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한 경우 시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인함.
- 라. 회생회사(관리인)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 또는 상계하여 소멸한 채권신고는 부인함.
- 마. 회생회사를 상대로 소송계류 중인 신고채권은 미확정채권이므로 부인함(단, 다툼이 없는 경우는 시인함).
- 바.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00. 00. 00.) 이후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회생담보권 부인 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되 의결권은 부인함(제141조 제1항 단서, 제191조 제3호).
- 사.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00. 00. 00.) 이전의 원인에 의한 임차보증금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함. 다만 전세권 등 담보 설정된 보증금 중 해당 부동산의 담보평가 기준 내의 금액은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함.
- 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00. 00. 00.) 전일까지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따라 발생한 금융이자는 약정에 따른 이자만 시인함.
- 자. 이중으로 신고된 채권은 주채권자, 어음 소지인 등 최종권리자의 신고채권만 시인하고, 그 이외의 자가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채권은 부인함.

3. 특정사항에 대한 기준

- 가. 회생담보권은 담보가액 평가 기준 내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초과 부분은 회생담보권 부인 후 회생채권으로 시인함.
- 나.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한 시부인
 - 1) 주채권자와 장래의 구상권자가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 주채권자의 채권신고만 시인하고, 장래의 구상권자의 채권신고는 부인함.
 - 2)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고 장래의 구상권자만 신고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의 채권신고를 시인할 경우 채권자의 추완신고에 따라

이중 시인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장래의 구상권자의 채권신고를 부인함.

다. 보증보험 관련 채무

- 1) 보증보험회사가 전액 신고한 채권 또는 채권액 중 보증기간이 만료된 부분, 일부 상환된 부분, 자료의 미비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 등은 부인함.
- 2) 보증보험채무의 기한이 미도래된 경우에는 우발채무로 시인하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음.

4.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기준

- 가. 관리인은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등 사이의 평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따라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함.
- 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는 부인함.
- 다.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부인함.
- 라.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는 부인함.
- 마. 회사 부인권 행사 기준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의 ‘지급의 정지’ 기준일은 2000. 00. 00.로 함. (끝)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 총괄표

채무자: ○○주식회사 (단위: 원, 주)

구분	건수	신고액·목록 기재액	시인액	부인액	비고
회생담보권 (추완)	10	200,000,000,000	150,000,000,000	50,000,000,000	(회생채권 시인액: 40,000,000,000원)
소계	11	210,000,000,000	160,000,000,000	50,000,000,000	
회생채권 (추완)	500	750,000,000,000	450,000,000,000	300,000,000,000	
소계	50	50,000,000,000	45,000,000,000	5,000,000,000	
소계	550	800,000,000,000	495,000,000,000	305,000,000,000	
회생담보권 중 회생채권 시인액			40,000,000,000	△40,000,000,000	
합계	561	1,010,000,000,000	695,000,000,000	315,000,000,000	

조세·벌금 등	2	1,000,000,000			시부인 대상 어님
주식·출자지분	5	300,000			시부인 대상 어님

회생담보권 시·부인명세서

채무자: ○○○○주식회사

(단위: 원)

신고 번호	담보권자	주소	담보권 종류 및 목적물	가치평가 및 배분	채권내용	신고액· 목록기재액	시인액	부인액	의결권 인정액	회생채권 시인액	사유인 사유	우선권	비 고
1	담10 (주)○○은행 대표이사 ○○○	근자담권 청원시 000동 000의 지상 000㎡에 60세대 채권최고액: 2,000,000,000 생장순위: 1순위 (생장일 2004. 6. 1.)	총 평가액 20억 선순위 배분액 0 담 배분액 20억 배분 후 잔액 5억	주채무 1. 원금 2. 이자 보증채무 1. 원금 2. 이자	800,000,000 200,000,000						회생채권으로 시인 유일채무로 등록 수 채무자: ○○○		• 2000. 0. 0.차 신고 목록 필요
(5)	회생담보권 5번 에서 이기	주식 채권 ○○(주) 박생 주식 수량: 1,000,000주 (생장일 2005. 3. 1.)	개시결정일 당시 시가로 평가	보증채무 1. 원금 2. 이자							1. 주식의 실질가치가 없으므로 담보 2. 주채권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부인		• 2000. 0. 0.차 신고 목록 필요
2	담11 ○○리스크(영주) 대표이사 ○○○	리스채권 청원시 000동 수계 00 호중 부차기계를 20점 (물건인도일 2004. 8. 1.)	잔존가치로 평가	주채무 1. 리스료 2. 영채이자 3. 부상손해금									
3	○○투자신탁(주) 대표이사 ○○○	어음 양도담보 ○○(주) 박생의 어음 액면: 0.000,000원	실질가치로 평가	주채무 1. 원금 2. 이자	800,000,000 200,000,000			0 0	0 0	800,000,000 200,000,000	담보가액 초과로 회생채권으로 시인		
4	채3 (주)○○은행 대표이사 ○○○	근자담권 서울 ○○○구 ○○○동 000의 지상 288㎡ 건물 채권최고액: 1,000,000,000 생장순위: 1순위 (생장일 2005. 1. 5.)	총 평가액 20억 선순위 배분액 15억 담 배분액 5억 배분 후 잔액 0	주채무 1. 원금 2. 이자	700,000,000 150,000,000	500,000,000		200,000,000 150,000,000	500,000,000	200,000,000 150,000,000	담보가액 초과로 회생채권으로 시인		• 2000. 0. 0.차 신고 목록 필요
5	△△은행	접수번호(번호)로 이기											
6	(주)○○은행 대표이사 ○○○	근자담권 서울 ○○○구 ○○○동 000의 지상 000㎡ 채권최고액: 2,000,000,000 생장순위: 1순위 (생장일 2005. 1. 5.)	총 평가액 20억 선순위 배분액 20억 담 배분액 0 배분 후 잔액 5억	주채무 1. 원금 2. 이자	600,000,000 100,000,000			0 0	0 0	600,000,000 100,000,000	비 채100조 채항 채3총액 잉여액 채3담보항금 회생채권으로 시인		
소 계													
합 계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

채무자: 0000주식회사 (단위: 원)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채 권 자	주 소	채권내용	목록기재 신고액	시인액	부인액	의결권 인정액	시·부인 사유	유선권	비 고
1	채권4	(주)△△은행 대표이사 000	서울 00구 00동 00	주채무 1. 원금 2. 이자 보증채무 1. 원금 2. 이자					시인하되, 우발채무로 분류 (주 채무자: 00 주식회사)		2000.0.0자 신고 목록 번호
(5)		회생채권 5번에서 이기		주채무 (사채보증)					법 제128조에 의거 부인 (주 채권자 채권 00원으로 신고)		
2		(주)0000 대표이사 000	서울 00구 00동 00	물품대금 1. 외상매입금 2. 약속어음					1. 외상매입금 부분 중 00원은 이미 2005. 6. 1. 변제하였으므로 부인 2. 약속어음 부분은 증거불부족 (이들원본 미제시)로 부인		
3		대한주택보증(주) 대표이사 000	서울 00구 00동 00	장래의 구상권					우발채무로 채권액 시인하고 의결권 전부 부인		
4	채권5	000 (△△공업사)	서울 00구 00동 00	약속어음금							2000.0.0자 신고 목록 번호
5		(주)△△은행		접수번호 1번으로 이기							
6		000	광명시 00동 00동 00	1. 소유권 이전등기 (서울 00구 00동 00 △△아파트 0동 0호) 2. 손해배상청구액	(목적물 지역) (손해배상액)				소속 중이므로 다툼이 없는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부인 (서울중앙지법판결 2000가합0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소 계											
합 계											

벌금·조세 등의 목록·징수 명세서

채무자: ○○○○주식회사						(단위: 원)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채권자	주소	채권내용	액수	비고
1		대한민국(○○세무서)	서울 ○○구 ○○동 ○○	법인세 1. 본세 2. 가산금 3. 중가산금		부과일: 2000. 0. 0. 납기일: 2000. 0. 0. 소송진행 중(서울행정법원 2000구합○○)
2		서울특별시	서울 ○○구 ○○동 ○○	지방세 1. 취득세 2. 농특세		부과일: 2000. 0. 0. 납기일: 2000. 0. 0.
3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과천시 ○○구 ○○동 ○○	과징금		부과일: 2000. 0. 0. 납기일: 2000. 0. 0.
4		대한민국 (서울중외무역진흥청)	서울 ○○구 ○○동 ○○	벌금		부과일: 2000. 0. 0. 납기일: 2000. 0. 0.
	1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구 ○○동 ○○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일: 2000. 0. 0. 납기일: 2000. 0. 0. 공약채권
	2	대한민국(○○세관)	인천 ○○구 ○○동 ○○	관세		부과일: 2000. 0. 0. 납기일: 2000. 0. 0.
		소계				
		합계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명세서

채무자: 0000주식회사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주주·지분권자	주 소	주식·출자지분의 종류	주식의 수· 출자지분의 액수	의결권의 수·액수	비 고
1							
2							
3							
4							
	1						
	2						
		소 계					
		합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사건 20○○회합○○ 회생

관 리 인 보 고 서

20○○. ○. ○.

채무자 ○○○ 주식회사

관리인 ○ ○ ○

안녕하십니까?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관계인집회에 참석해 주신 채권단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금번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목표를 대전제로 하고 채권자 여러분의 권익을 도모하면서 형평과 공정의 원칙하에 작성하였으며,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에서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회생계획안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조사기일까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 시부인 결과 확정된 본 채무자의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원, 회생채권 ○○○원으로 합계 ○○○원입니다.

다음은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중략]

마지막으로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이익배당 및 주주총회(사원총회)는 본 회생계획안이 종료될 때까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감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요지에 관하여 보고 드렸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회생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여 주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

지금까지 본 회생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채무자의 회생을 전제로 작성된 본 회생계획안이 채무자의 사정으로 채권자 여러분께 만족할 만한 수준의 회생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동향 및 조기 경영정상화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 본 회생계획안이 예정대로 확정되고 수행될 경우 채무자는 반드시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향후 채무자는 영업력 강화, 생산성 향상, 감축경영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시행하여 매출 및 이익을 극대화하여 채무변제는 물론 사업의 성장·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임 장

사건번호: 20○○회합○○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관 리 인: ○○○
수 임 자: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그 속행기일에서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기 수입자에게 위임합니다.

20○○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
성 명: () (인)
채권신고번호: 목록번호 번
신고번호 번

※ 별첨: 인감증명서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사 체 무 건 자
2000회합00
0000주식회사

출석 현황 및 의결표

2000년 0월 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파산부

목 차

○ 회생담보권 현황	1
○ 출석현황 및 의결표(회생담보권-위임장 미제출자)	2
○ 출석현황 및 의결표(회생담보권-위임장 제출자)	5
○ 회생채권 현황	6
○ 출석현황 및 의결표(회생채권-위임장 미제출자)	7
○ 출석현황 및 의결표(회생채권-위임장 제출자)	18
○ 미확정 회생채권자 출석현황표	25
○ 조세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출석현황표	30

○ 회생담보권 현황

구 분	금액(원)	건 수	비율(%)	비 고
의결권 총액	98,765,432,109	47건	100.0%	
가결요건	74,074,074,082	-	75.0%	의결권 총액의 3/4
의결권 위임액	12,345,678,901	6건	12.4%	

출석현황 및 의결표

회생담보권(위임장 미제출자)		(의결권 단위: 원)																	
		순번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채권자	확정채권자	의결권 이외액	의결금액	구성 비율 (%)	출석현황				의결내용		수행 여부			
성명	날인									성명	날인	찬성	반대	찬성	반대				
1	4			(주)O은행	90,000,000		90,000,000	0.9											
2	11	25		OOO(주)	2,520,380,020		2,520,380,020	2.5											
3	15																		
4	19																		
5	22																		
6			2																
39	40																		
40	추담1																		
41	추담2																		
소 계																			
합 계							86,419,753,208	86,419,753,208	87.5										

출석현황 및 의결표

회생담보권(위임장 제출자)		(의결권 단위: 원)													
								출석현황			의결내용				
								신고 순번	목록 번호	채권자	확정채권자	의결권 이외액	의결권액	구성 비율 (%)	본인 성명
1	7	000	970,266,000	970,266,000	0.9	0	000	인	0						
2	11	000	1,109,248,000	1,109,248,000	1.1	0	000	인	0						
3							000	인	0						
4							000	인	0						
5							000	인	0						
6							000	인	0						
소 계			12,345,678,901	12,345,678,901	12.4										
합 계			12,345,678,901	12,345,678,901	12.4										

(이하 회생채권자·미확정채권자·벌금·조세채권·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현황 및 의결표는 생략)

출석현황 및 의결표

회생채권		(의결권 단위: 원)																	
		신고 순번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채권자	확정채권자	의결권 이외액	의결권액	구성 비율 (%)	출석현황				의결내용		속행 여부			
										보 성	인 명	대 리 인 성	인 명	찬 성	반 대	찬 성	반 대		
1	76		가재관	18,298,050	18,298,050	0.001													
2	1102		강두원	(이하 생략)															
3	217		강영철																
4	1575		강영철																
5	1576		강옥분																
6	추완 169		강용준																
7	50		강재영																
8	추완 156		강춘자																
9	280		강호갑																
10	139		(주)인암																
		소		계															

재판부	
주심판사	재판장

재판부 허가사항
법원용

○○ 주식회사

우)100-110 서울 ○○구 ○○동 ○○-○○ / 전화 (02)000-00000, FAX (02)000-0000

문서번호: ○○회생 제20○○ - ○○호 담당 ○○팀 ○○○(02-000-0000)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제 목: 회생채권 변제 허가신청

1. 폐사는 20○○. ○. ○○.일자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폐사에 대한 회생채권자 중 회생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사의 생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고 있거나 폐사에게 꼭 필요한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3. 위 회생채권자들에 대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기 아니하는 경우 폐사가 회생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생채권의 일부에 대한 변제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목적: 원재료 정상 공급 및 용역 정상 제공에 의한 원활한 회생 추진
2. 변제할 회생채권의 명세

(단위: 백만 원)

채권자명	회생채권액	변제할 액수	변제사유	채무 발생시기
○○(주)	100	25	특허품인 원재료 공급중단	
(주)△△	80	20	용역 제공 거부	

- 첨부서류: 1. 회생채권 조기 변제 요청현황 및 계획 1부
 2. 채권자협의회 의견서 1부. 끝.

서울 ○○구 ○○동 00-00
 ○ ○ 주 식 회 사
 관 리 인 ○ ○ ○

사건번호 20○○회합○○ 회생

1. 문서번호: ○○회생 제20○○-○○호
2. 제 목: 회생채권 변제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20○○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재 판 장 판 사 ○ ○ ○

판 사 ○ ○ ○

판 사 ○ ○ ○

영 수 증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 ○ 귀하

사 건: 20○○회합○ 회생
문 서 번 호: ○○회생 제20○○-○○호
제 목: 회생채권 변제 허가신청

위 서류는 20○○년 ○월 ○일에 틀림 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년 ○월 ○일

서울 ○○구 ○○동 00-00
○ ○ 주 식 회 사
관 리 인 ○ ○ ○

재관부 허가사항
회 사 용

○○ 주식회사

우)100-110 서울 ○○구 ○○동 ○○-○○ / 전화 (02)000-00000, FAX (02)000-0000

문서번호: ○○회생 제20○○ - ○○호 담당 ○○팀 ○○○(02-000-0000)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제 목: 회생채권 변제 허가신청

결	담당	팀장	본부장	관리인
제				

1. 폐사는 20○○. ○월 ○○.일자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폐사에 대한 회생채권자 중 회생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사의 생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고 있거나 폐사에게 꼭 필요한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3. 위 회생채권자들에 대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기 아니하는 경우 폐사가 회생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생채권의 일부에 대한 변제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목적: 원재료 정상 공급 및 용역 정상 제공에 의한 원활한 회생 추진
2. 변제할 회생채권의 명세

(단위: 백만 원)

채권자명	회생채권액	변제할 액수	변제사유	채무 발생시기
○○(주)	100	25	특허품인 원재료 공급중단	
(주)△△	80	20	용역 제공 거부	

- 첨부서류: 1. 회생채권 조기 변제 요청현황 및 계획 1부
2. 채권자협의회 의견서 1부. 끝.

서울 ○○구 ○○동 00-00
○○주식회사
관 리 인 ○ ○ ○

부록 I 각종 양식

사건번호 20○○회합○○ 회생

1. 문서번호: ○○회생 제20○○-○○호
2. 제 목: 회생채권 변제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20○○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재 판 장 판 사 ○ ○ ○

판 사 ○ ○ ○

판 사 ○ ○ ○

채권가압류결정 취소명령신청서

사 건: 2000회합0 회생
신 청 인: 0000(주) 관리인 000
 서울 00구 00동 000-0
채 권 자: 000 주식회사
 서울 00구 00동 00-0
 대표이사 000 지배인 000
제 3 채 무 자: 00 공사
 00시 00구 00동 00
 대표자 사장 00

- 신 청 취 지 -

채무자(신청인)와 채권자 사이의 별지기재 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
원 2000카단000)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

1. 채무자는 귀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0. 00. 00. 귀
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같은 날 귀원으로부터 관리인을 000으로 하는 관리
인 선임결정을 받았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
자인 000공사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지난 20

○○. ○○. ○○ 채권가압류결정(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 카단 ○○)을 받았습니다.

3.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압류한 금원(금 107,826,840)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모두 취소되면 제3채무자가 유보하고 있는 공사기성금을 수령하여 채무자의 공익채권변제 등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사업의 지속비용에 충당하고자 하오며, 향후 계속 발생하는 공사대금청구 채권을 채무자가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 또한 진행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4. 이에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가압류 절차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후 수금 가능 금액
2. 수금액 사용계획
3. 채권압류 결정문 사본 1부
4. 채권압류 현황 및 지급보류 현황 각 1부. 끝.

20○○. ○○. ○○.

채무자 ○○○○주식회사 관리인 ○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 파산부 귀중

가압류채권의 표시

금 107,826,840원

채무자 '○○○○(주)'가 제3채무자 '○○○○공사'의 '○○ 주공아파트 B-OBL'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아야 할 기성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부록 I 각종 양식

관리위원	
허 가	불허가

관리위원 허가위임 법원용

○○ 주식회사

우)100-110 서울 ○○구 ○○동 ○○-○○ / 전화 (02)000-00000, FAX (02)000-0000

문서번호: ○○회생 제20○○ - ○○호 담당 ○○팀 ○○○(02-000-0000)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제 목: 20○○년 ○월분 급여 지급 허가신청서

1. 폐사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아래와 같이 20○○년 ○월분 급여를 지급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급여 및 산정기간: 20○○년 ○월분(20○○. ○. 21. ~ 20○○. ○. 20.)
2. 지급예정일: 20○○. ○. ○.
3. 총급여액: ○○○액

구분	금 월		전 월	
	인원	총급여액	인원	총급여액
임원				
직원				
합계				

4. 본건 지급 전후 보유자금

구분	보유자금 (20○○. ○. ○○.)	급여 지급	지급 후 보유자금	비 고
가용자금				

- 첨부서류: 1. 회사 내부 지급결의서 사본 1부
 2. 20○○년 ○월분 직원 급여대장 사본 1부. 끝.

서울 ○○구 ○○동 00-00
 ○ ○ 주 식 회 사
 관 리 인 ○ ○ ○

관리위원	
허 가	불허가

관리위원 허가위임 법원용

○○ 주식회사

우)100-110 서울 ○○구 ○○동 ○○-○○ / 전화 (02)000-00000, FAX (02)000-0000

문서번호: ○○회생 제20○○ - ○○호 담당 ○○팀 ○○○(02-000-0000)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제 목: 직원 채용 허가신청

1. 폐사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20○○년 ○월 ○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아래와 같이 20○○년 ○월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신규채용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퇴사

성명	직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사실	연봉

2. 입사

성명	직급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연봉	비고

3. 채용일자: 법원 허가일

4. 고용형태: 정규직

- 첨부서류: 1. 20○○년 ○월분 급여대장 사본 1부
 2. 20○○. ○. ○.자 직원명부 사본 1부
 3. 신규채용 직원의 이력서 2부. 끝.

서울 ○○구 ○○동 00-00
 ○ ○ 주 식 회 사
 관 리 인 ○ ○ ○

부록 I 각종 양식

관리위원	
허 가	불허가

관리위원 허가위임 법원용

○○ 주식회사

우)100-110 서울 ○○구 ○○동 ○○-○○ / 전화 (02)000-00000, FAX (02)000-0000

문서번호: ○○회생 제20○○ - ○○호 담당 ○○팀 ○○○(02-000-0000)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제 목: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

1. 폐사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의 공동 가동 필수품목인 원자재 물품 구입을 아래와 같이 발주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입허가 원자재 PP 7411 원사는 고속 방사용으로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물성을 맞추어 생산을 해주기 때문에 작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사용하던 제품으로 생산을 하여야 불량률 줄일 수 있으며 품질도 안정적으로 바이어의 조건에 맞출 수 있습니다.
4. 구입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8개사가 있으며, 그중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아래의 3개사에 견적을 받아 비교한 후 (주)○○○유화의 제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주)○○○유화(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
- (주)□□□(서울 강남구 신사동 ○○○)
- (주)◇◇◇(서울 성동구 ○○○)

5. 위 3개사의 견적내용은 아래 [견적비교표]와 같습니다.

[견적비교표]

품명	수량 (M/T)	입찰사항						비고
		(주)○○○유화		(주)□□□		(주)◇◇◇		
		단가 (M/T당/원)	입찰금액 (원)	단가 (M/T당/원)	입찰금액 (원)	단가 (M/T당/원)	입찰금액 (원)	
PP H7411	6	1,410,000	8,460,000	1,450,000	8,700,000	1,440,000	8,640,000	
PP H7412	6	1,410,000	8,460,000	1,450,000	8,700,000	1,440,000	8,640,000	
합계	12		16,920,000		17,400,000		17,280,000	

관리위원	
허 가	불허가

관리위원 허가위임 법원용

○○ 주식회사

우)100-110 서울 ○○구 ○○동 ○○-○○ / 전화 (02)000-00000, FAX (02)000-0000

문서번호: ○○회생 제20○○ - ○○○호 담당 ○○팀 ○○○(02-000-0000)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제 목: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

1. 폐사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폐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현재 현금시재가 부족하여 운영비를 차입하여 사
 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가능한 차입선인 ○○○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차입금액: ○○○원
2. 용도: 임직원 급여 및 필요 자재구입과 운영비 지급
3. 이자율: 연 ○%
4. 상환방법:

- 첨부서류: 1. 차입자금 사용계획 1부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안) 1부
 3. 공익채권자 명부(채권자, 채권액, 전화번호, 팩스번호) 1부. 끝.

서울 ○○구 ○○동 00-00
 ○ ○ 주 식 회 사
 관 리 인 ○ ○ ○

관리위원	
허 가	불허가

관리위원 허가위임 법원용

○○ 주식회사

우)100-110 서울 ○○구 ○○동 ○○-○○ / 전화 (02)000-00000, FAX (02)000-0000

문서번호: ○○회생 제20○○ - ○○○호 담당 ○○팀 ○○○(02-000-0000)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제 목: 정관의 변경 허가신청

1. 폐사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귀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 회생계획안 제12장(정관의 변경)의 내용에 근거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사의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조 항	변경 전	변경 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5조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94,000주로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주 로 한다.
신주인수권	신설 제17조		제17조 신주인수권 1.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들은 각자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인수권 을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 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M&A를 추진하여 유상증자에 성공할 경우와 회생담보권 및 회 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회생계획 기간 중에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첨부서류: 1. 변경 전 정관 사본 1부

2. 정관 변경 목록 1부. 끝.

서울 ○○구 ○○동 00-00

○ ○ 주 식 회 사

관 리 인 ○ ○ ○

재판부	
주심판사	재판장

재판부 허가사항
법원용

○○ 주식회사

우)○○○-○○○ 서울 ○○구 ○○동 ○-○/☎ 02-○○○-○○○○/팩스 02-○○○-○○○○

문서번호: 회생 제20○○ - ○○○호 담당 ○○팀 ○○○(02-000-0000)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참 조: 관리위원 ○○○
제 목: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허가신청

1. 폐사는 20○○년 ○○월 ○○일자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폐사는 위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 제10장(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의 내용에 근거하여 주주의 권리변경(주식병합, 출자전환, 주식재병합)에 의한 신주발행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가. 주식병합의 방법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 300,000주(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5,000원)는 기명식 보통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한다. 단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무상소각한다.

나.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20○○년 ○월 ○일(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에 발생한다.

다. 주식병합 후의 납입자본금(단위: 주, 천 원)

구 분	주식병합 전		자본감소(주식병합)		주식병합 후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합 계	300,000	1,500,000	150,000	750,000	150,000	750,000

2.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주권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며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한다.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1주의 액면금액: 5,000원

다. 주식의 발행가액: 보통주 1주당 금 5,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다음날 (20○년 ○월 ○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단,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는 대지급이 발생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된 경우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마. 출자전환 후 자본금(단위: 주, 천 원)

구 분	출자전환 전		출자전환		출자전환 후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합 계	150,000	750,000	1,056,999	5,284,995	1,206,999	6,034,995

3.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가. 주식 재병합의 방법

전 기존주식의 병합과 전 회생채권의 일부 채권액 출자전환 후 회사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단 주식 재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한다.

나.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다음 날(20 〇〇년 〇월 〇일)

다. 주식 재병합 후 자본금

(단위: 주, 천 원)

구 분	주식재병합 전		자본감소(주식재병합)		주식재병합 후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합 계	1,206,999	6,034,995	965,590	4,827,950	241,392	1,206,960

- 별첨: 1. 주식병합 전후의 자본금 변동현황 1부
 2. 출자전환 대상채권 및 출자전환 후 자본금 변동현황 1부
 3. 주식 재병합 전후의 자본금 변동현황 1부. 끝.

채무자 〇〇 주식회사
 관리인 대표이사 〇 〇 〇

재 관 장	
허 가	불허가

재관부 허가사항
법원용

○○ 주식회사

우)100-110 서울 ○○구 ○○동 ○○-○○ / 전화 (02)000-00000, FAX (02)000-0000

문서번호: 회생 제20○○ - ○○호 담당 ○○팀 ○○○(02-000-0000)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제 목: 임원퇴임 및 신규임원선임 허가신청

1. 폐사는 20○○년 ○○월 ○○일자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폐사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현 임원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으로 전원 퇴임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기존 임원해임 및 신규 임원선임을 신청하오니 검토 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임원해임

가. 해임 내역

순번	직 위	성 명	주 소	담당업무	해임일자	비고
1					20○○. ○○.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					20○○. ○○.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3					20○○. ○○.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4					20○○. ○○.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비등기 임 원
5					20○○. ○○.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6					20○○. ○○.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비등기 임 원

나. 해임사유

-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현재의 전 임원 해임함.
- 회생계획안 '제14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1항'에 회생회사의 현 임원은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신규 임원선임

가. 선임 내역

순번	직 위	성 명	주 소	담당업무	임 기	비고
1	대표이사				법원의 선임허가일로부터 2000. 00. 00.까지	
2	이 사				법원의 선임허가일로부터 2000. 00. 00.까지	중임 (상무)
3	이 사				법원의 선임허가일로부터 2000. 00. 00.까지	부장 보직

나. 선임사유

- 이사 000: 현재 상무이사 직위로 공무 및 회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선임
- 이사 111: 현재 부장 직위로 경영기획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법상 필요 이사 수 충족을 위해 선임

다. 선임 임원의 보수 및 처우

- 이사 000: 급여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무이사직급으로서의 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위 호칭은 현재와 같이 상무이사로 함.
- 이사 111: 급여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장직급으로서의 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위 호칭은 현재와 같이 부장으로 함.

- 첨부서류: 1. 회생계획안의 해당 조항 제14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본 1부
 2. 사직서 6부
 3. 선임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끝

서울 00구 00동 00-00
 0 0 주 식 회 사
 관 리 인 0 0 0

재 관 장	
허 가	불허가

재관부 허가사항
법원용

○○ 주식회사

우)100-110 서울 ○○구 ○○동 ○○-○○ / 전화 (02)000-00000, FAX (02)000-0000

문서번호: 회생 제20○○ - ○○호 담당 ○○팀 ○○○(02-000-0000)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제 목: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

1. 폐사는 20○○년 ○○월 ○○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년 ○○월 ○○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폐사는 20○○. ○○. ○○. 제출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기간 시·부인 명세표에 대하여 담보권관련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인한 회생담보권의 일부를 이의철회하고, 같은 금액만큼 회생채권 시인액을 정정하여 감소시키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철회 및 정정 내용

가. 회생담보권 이의철회

(단위: 원)

구 분			조사기간 시부인 내용			이의 철회	이의철회 후 시부인 결과	
신고 번호	채권자명	채권 내용	신고액	시인액	부인액		시인액	부인액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법적 절차비용						
합 계								

나. 위 가.에서 회생담보권 이의철회에 따른 회생채권 시·부인액의 정정

(단위: 원)

구 분			정정 전 회생채권 시부인			정정액	정정 전 회생채권 시부인	
신고 번호	채권자명	채권 내용	신고액	시인액	부인액		시인액	부인액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법적 절차비용						
합 계								

2. 이의 철회 및 정정 허가 신청사유

첨부서류:

서울 ○○구 ○○동 00-00
○ ○ 주 식 회 사
관 리 인 ○ ○ ○

재판장	
허가	불허가

재판부 허가사항 법원용

○○주식회사

우)100-110 서울 ○○구 ○○동 ○○-○○ / 전화 (02)000-00000, FAX (02)000-0000

문서번호: 회생 제20○○ - ○○○호 담당 ○○팀 ○○○(02-000-0000)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

제 목: 주주총회 개최 허가신청

1. 폐사는 20○○. ○. ○○.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폐사는 귀원으로부터 인가 받은 회생계획 제13장(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내용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주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 ○. ○○. 10:00

나. 장소: 서울시 ○○구 ○○동 ○○○-○○, 본점 회의실 101호

2. 안건

회생계획 제13장 제2항에 근거한 대표이사, 이사의 해임 및 선임

가. 해임 대상자

순번	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담당업무	보수(연봉)	비 고
1	이사/대표이사					
2	이사					전무
2	이사					상무

나. 선임 대상자

순번	선임될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약 력	보수(연봉)	비 고
1	이사/대표이사					(주)○○은행 (대표채권자)
2	이사					상동
2	이사					상동

부록 I 각종 양식

- 첨부서류: 1. 회생계획 중 해당 제13장(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선임 대상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끝.

서울 ○○구 ○○동 00-00
○ ○ 주 식 회 사
관 리 인 ○ ○ ○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¹⁾는 회생절차와 관련한 조언 및 협력, 자금수지상황의 점검,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금수지상황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이하 '을'이라 한다)를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의 내용)²⁾

'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갑'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조언('을'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내용을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회생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포함)
2. '갑'의 자금수지상황에 대한 점검
3.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갑'의 자금수지상황 보고(정기보고는 매 주고 하고,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³⁾
4. 기타 '갑'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는 사항

제2조(보수)

제1조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월 ○○○원으로 하고, '갑'은 '을'에게 보수 이외에 일체의 수당이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을'의 의무)

-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별첨 구조조정담당임원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기타 '갑'의 영업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갑'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로 표기함.
- 2)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1조 제2호 및 제6호의 '갑'을 '채무자 주식회사 □□□□'로 표기함.
- 3) 보고 시기는 매주, 격주 등 회사의 현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월간보고서 제출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6주를 넘어서는 곤란함.
- 4)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본항의 '갑'을 '채무자 주식회사 □□□□'로 표기함

제4조(‘갑’의 의무)

- ①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비품, 인력, 기타 지원을 하고, 필요경비를 부담한다.
- ②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장부, 매출전표, 기타 서류 등(재고상품 등 동산 포함)을 열람, 복사,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 후 ‘갑’이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 1. 회생계획 인가 전 호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날
 - 2.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후에 ‘갑’⁵⁾의 감사를 선임한 날

제6조(계약의 해지)

-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을 보관한다.

계약서 별첨: 구조조정담당임원 윤리강령 1부 끝.

2011년 월 일

갑⁶⁾: 주식회사 ○○○○

주소

대표이사 ○○○○ 직인날인

을: 성명 ○○

주소

자필서명⁷⁾

- 5)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갑’을 ‘채무자 주식회사 □□□□’로 표기함
- 6)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당사자는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이므로, 위와 같이 표기하고 관리인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7) 설정된 구조조정담당임원 윤리강령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고려하여 날인 대신 자필서명으로 함.

〈별첨〉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윤리강령

1. 목적

본 윤리강령은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본 윤리강령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기본윤리

- 가.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목적에 따른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과 채무자의 회생에 기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나. 구조조정담당임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역할에 맞는 명예를 유지한다.
- 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공사(公私)의 구별을 엄격히 하며 채무자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라.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직무와 무관하게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4. 직무수행

- 가.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 나.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권한 내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한다.
- 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요청할 수 없고,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그와 같은 업무를 요청받은 경우 그 업무수행을 거부한다.

5. 사적 이익추구행위 금지

구조조정담당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가.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무수행상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형태를 불문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구조조정담당임원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받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
- 다.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사이에 임대차,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개인적인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 라.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증권, 부동산 기타 자산의 매매 등 부당한 거래행위
- 마. 기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사적 이익추구행위

6. 정보유출행위 금지

- 가.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나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나.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영업비밀이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나 해당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끝.

채무자 ○○○의 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업무협약서

채무자 ○○○은 2011. ○○.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1. ○○. ○○.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 ○○○은 회생계획에 따라 제○차연도(2011년)에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2011. ○○. ○○.까지 모두 (조기)¹⁾ 변제하였고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은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채무자 ○○○에 대한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이하 ‘을’이라 함)은 채무자 ○○○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2011. ○○. ○○.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본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합니다.

- 다 음 -

1. 채권자협의회 구성

채권자협의회는 아래의 채권자들로 구성되며,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채권자를 △△△으로 한다.

순번	채권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1					
2					
⋮					

2. 감사의 추천권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 채무자의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3. 회생절차 종결 이후의 변제

채무자는 회생절차 종결 후 남은 회생계획 기간 동안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되,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을 포함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들이 조기 변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충당순서와 조기 변제 할인율에 따라 조기 변제를 할 수 있다.

1) 조기 변제 아닌, 변제기일에 변제한 경우는 생략.

4.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보고 등

가. 분기별 보고

채무자는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출하였던 분기보고서에 준하여 매분기에 채무자의 영업현황 및 자금사항, 회생계획의 수행현황 기타 부수사항에 관한 보고서(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보고하기로 한다. 다만 보고 기한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분기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4/4분기는 회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하기로 한다.

나. 고액 자금 지출 시 보고

채무자가 000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 전에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다. 영업용 중요자산 처분 시 사전 동의

채무자가 영업에 필요한 중요 자산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의 채권액 총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기타 보고

채무자는 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도 필요한 경우 채권자협의회회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로 한다.

5. 채권자협의회회의 의견 제시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와 영업 및 자금수지, 경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대표채권자의 신의성실의무

‘갑’은 채권자협의회회의 대표자로서 신의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7. 협약의 효력

본 업무협약은 협약체결 후 ‘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채무자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2011. ○○. ○○.

갑: 채무자 ○○○의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 ◇◇◇

을: 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

부 록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회생실무준칙 제1호]

관리인 등의 선임·해임·감독 기준

2006. 4. 1. 시행

2010. 11. 1. 개정

1. 목 적

이 준칙은 법인 채무자(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의 업무 수행권 및 관리처분권을 갖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 관하여 그 선임·불선임 및 해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을 유도하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감독 및 포상기준을 밝힘으로써 회생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

2. 기존 경영자 관리인

가. 의 의

기존 경영자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채무자의 대표자를 말하고, 기존 경영자 관리인이라 함은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당해 관리인을 말한다.

나. 선임 원칙과 기준

- (1)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전 사이에 채무자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 (2) 채무자에 관하여 법 제74조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이사, 지배인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다. 선임 절차

- (1)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위 심문절차에는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등 주요 채권자도 참석하여 관리인 선임 및 회생절차 개시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2) 위 심문절차가 종료한 후 신속하게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한다.
- (3) 채무자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와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결과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의 존재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다.

라. 수

- (1) 채무자에게 공동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은 1인을 선임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 (2) 아래의 경우에는 수인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을 고려할 수 있다.
 - ① 채무자의 업무적 특성상 2개 이상의 전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② 채무자 내부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기존 경영자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상호간의 업무분장을 정할 수 있다.

마. 임 기

- (1)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기제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 (2)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선임 후 채무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사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바. 해 임

- (1)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후 법 제8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 관리인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 (2) 법 제83조 제2항 제3호의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① 관리인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영업이익을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때
 - ② 관리인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영업이익을 총 3회 달성하지 못한 때

3. 제3자 관리인

가. 의 의

제3자 관리인이라 함은 법원이 제2항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이외의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당해 관리인을 말한다.

나. 선임 원칙 및 기준

- (1) 제3자 관리인은 채무자에 관하여 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거나 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 선임한다.
- (2) 제3자 관리인의 선정은 전문경영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수행의 경력 또는 소양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 (3)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를 인수한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그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참작한다.
- (4) 법인보다는 자연인을 우선하여 제3자 관리인으로 선정한다.

다. 선임방법 및 절차

- (1) 법원은 각종 경제단체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널리 경영능력 등을 구비한 전문인력을 물색하여 미리 적임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가 제3자 관리인 선정 때 활용한다.
- (2) 법원은 판사 3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복수의 후보자에 대한 구두 면접을 실시한 후 최다 득점자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최다득점자가 제3자 관리인 선임을 거절하는 경우, 최다득점자에게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 (3)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① 기존 제3자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해당 채무자의 제3자 관리인으로 재선임하는 경우
 -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제3자 관리인, 감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3자 관리인, 감사로서의 자질과 경륜, 경영능력, 청렴성 등이 인정된 자를 선임하는 경우
 - ③ 다른 채무자의 제3자 관리인 및 감사 면접에 응하였으나 선임되지 않은 자로서, 해당 면접과정에서 자질과 경륜, 경영능력, 청렴성 등이 인정된 자를 선임하는 경우
 - ④ 기존에 확보된 관리인 적임자 명단에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적절한 후보가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위 (3)의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주요 채권자, 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자, 관련 행정부처, 기타 적절한 기관에게 추천을 의뢰하거나 공개모집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추천을 의뢰할 때에는 “관리인 추천에 유의할 사항(양식 1)”을 첨부한다.

- (5) 면접위원은 면접이 종료된 후 제3자 관리인 후보자에 대한 채점이 기재된 면접표를 파산부 기획법관에게 송부한다.

라. 의견조회

법원은 선정한 후보자에 관하여 이력서를 첨부하여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을 조회하고 그 의견을 참작하여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마. 수

- (1) 제3자 관리인은 1인을 선임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2) 아래의 경우에는 수인의 제3자 관리인 선임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채무자의 업무적 특성상 2개 이상의 전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3자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상호간의 업무분장을 정할 수 있다.

바. 임 기

- (1) 제3자 관리인은 임기를 정하여 선임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체제를 확립한다. 다만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자를 인수하거나 실질적인 지배 지분을 확보한 제3자나 그가 추천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제3자 관리인의 임기는 선임일부터 2년으로 하되, 채무자의 결산기, 실적평가에 필요한 기간, 법원의 업무량,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한다.
(3)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선임된 제3자 관리인의 임기는 회생계획인가일 또는 회생계획인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 때까지)로 하며,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위 (2)에 의하여 새로이 임기를 정한다.

- (4) 제3자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법 제83조 제2항 각 호의 해임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재선임한다.
- (5) 제3자 관리인을 재선임함에 있어서도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에게 그 의견을 조회한다.

사. 해 임

제3자 관리인의 해임에 관하여는 제2항 바.호를 준용한다.

4. 법 제74조 제3항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가. 의 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라 함은, 법원이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의 기준 및 절차

- (1) 관리인 불선임 여부는, 중소기업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① 채무자 및 채권자협의회 의견
 - ② 자산, 부채, 자본금의 규모
 - ③ 채무자에 대한 주식·출자지분의 분포
 - ④ 채무자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결정에 대한 경험 및 적합성
- (2) 제 2 항 다.호의 규정은 법원이 관리인 불선임결정을 할 경우에 준용한다.

다. 채무자의 대표자의 선정절차 및 기준

- (1)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의 단계에서는, 채무자 내부의 주주총회결의·사원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등 통상적인 대

표자 선임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대표자를 선정한다.

- (2) 회생계획 인가 후의 단계에서는, 법 제20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3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선정한 자, 회생계획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또는 회생계획에서 유임할 것으로 정한 자가 채무자의 대표자가 된다.
- (3) 채무자의 대표자의 선정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일반의 이익에 합치하여야 한다.

라. 수

- (1) 회생계획 인가 후의 단계에서 여럿의 대표자에게 채무자를 대표하게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을 정하여야 한다.
- (2) 위 (1)의 경우 여럿의 대표자 상호간에 그 업무분장을 정할 수 있다.

마. 임 기

- (1)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의 단계에서 채무자 내부의 통상적인 대표자 선임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회생계획 인가 후 단계에서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대표자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1년을 넘지 못한다.
- (3) 채무자의 대표자는 연임할 수 있다.

바. 해 임

- (1)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의 단계에서는, 채무자 내부의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등 통상적인 대표자 선임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대표자를 해임한다.
- (2) 회생계획 인가 후의 단계에서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대표자를 해임한다.

사. 관리인의 선임

법원이 법 제74조 제3항의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한 후 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한 업무의 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새로 선임된 관리인이 그 권한을 가진다.

5. 보 수

가. 적용 범위

아래 나.호, 다.호의 각 규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3자 관리인,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이하 '관리인 등'이라고 한다)에게 모두 적용된다.

나. 보수 기준

- (1) 관리인 등의 보수는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 중 당해 업종 경영자의 보수실태를 참작하고 기존의 보수체계와 채무자의 재정상태, 관리인 등의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리인 등의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관리인 등이 퇴직하는 때에는 위 (1)의 보수와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의 액수는 채무자의 퇴직금 규정, 재직기간, 관리인 등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 퇴직 사유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특별보상금 기준

- (1) 법원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 채무자의 규모와 재정상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인 등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관리인 등이 그의 경영 수완에 의하여 회생계획이 예정한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때
 - ② 관리인 등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당해 관리인 등의 최초 취임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된 때
 - ③ 관리인 등이 능동적으로 신규 자본을 물색·유입하거나 다른 우량기업과 인수·합병을 이룩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기여를 한 때
- (2) 위 (1)의 특별보상금은 채무자의 규모와 재정상황,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3억 원을 한도로 정하되, 이에 갈음하여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스톡 옵션)를 부여할 수 있다.

6. 관리인대리

- 가. 관리인대리는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선임을 허가한다.
- 나.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로 하여금 즉시 그 사유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 다. 관리인대리에 대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제4항 나.호 및 다.호를 준용한다.

7. 선임증·증명서의 수여

- 가. 채무자의 관리인에게는 선임을 증명하는 선임증을,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는 업무의 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수여한다.
- 나. 관리인 등에게 선임증·증명서를 수여할 때에는 성실한 책무 수행을 당부한다.
- 다. 선임증·증명서를 수여할 때에는 가급적 채무자의 주요 간부를 참석하게 하여 관리인 등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고 체감하게 한다.

8. 개인 채무자에 대한 준용

위 규정들은 성질에 반하지 않은 한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9. 보전관리인에 대한 준용

위 규정들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전관리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부칙, 2010. 11. 1.〉

1. 이 준칙은 2010. 1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양식] 생략

[회생실무준칙 제4호]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2006. 4. 1. 시행

2010. 11. 1. 개정

1. 목 적

이 준칙은 법인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 감사제도의 실효를 기함으로써 채무자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임시기

법원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감사를 선임한다.

3. 선임원칙 및 방법

가. 선임기준

법원은 채권자협회의 의견을 들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엄정한 직무수행을 기할 자질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감사로 선임한다.

- ① 채무자의 업종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에 전문적 경험이나 식견이 있는 사람
- ② 회계업무 또는 감사업무에 상당한 경험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선임방법

「관리인 등의 선임·해임·감독 기준」(회생실무준칙 제1호) 제3항 다.호의 규정은 감사의 선임방법으로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자 관리인”은 “감사”로 본다.

4. 겸임금지

감사는 채무자의 관리인, 관리인대리,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5. 공동감사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업종, 영업력, 영업규모, 감사의 필요성 및 그 정도 등을 참작하여 1인을 여럿의 채무자의 감사로 선임할 수 있다.

6. 임 기

가. 감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나.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길어도 3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7. 선 서 서

감사는 그 직에 취임함에 있어 [별지 양식]에 의한 선서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감사의 조사·보고의무

감사는 상법 제412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외에 법원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9. 감사의 업무수행

가. 업무수행 요령

- (1) 감사는 채무자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계장부 기타 채무자의 내부 서류를 열람하고 영업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2) 채무자는 감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고,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서류를 모두 그 결재 전 또는 결재 후 지체 없이 감사의 공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 (3)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회계 장부 기타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관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2조 참조).

나. 중점 감사 사항

감사는 엄정하고 객관성 있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① 법원의 허가 없는 자금의 조성 및 지출 여부
- ② 회계계정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 ③ 부당한 수입감소 또는 지출증가가 있는지 여부
- ④ 채무자 조직의 능률성
- ⑤ 채무자 내부에 파벌 또는 이익집단,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의 존재
- ⑥ 노동생산성의 저하, 근로 분위기의 해이 기타 채무자 운영에 있어 부정적 요인의 존재
- ⑦ 당원 회생실무준칙 제9호(“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요령”) 제2항 소정의 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상법 제412조의4 참조)
- ⑧ 관리인이 조사를 요구한 사항

10. 감사 의견서

가. 감사는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분기별 보고시에, 이와 별도로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감사의견서에는 채무자의 업무처리 과정에 상법 제413조에 규

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명기하여야 하고,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회계 및 자금관계 보고내용의 적부
- ② 당해 분기 감사실적의 개요
- ③ 자회사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특이 사항

11. 하명사항 조사 및 대면보고

가. 하명사항 조사·보고

감사는 상법 제412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외에 법원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나. 대면보고

- (1) 아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사는 그가 알게 된 내용을 지체 없이 법원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이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이 관련된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
 - ② 채무자 내부의 특이한 사정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
 - ③ 채무자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아니한 사항
 - ④ 급속을 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통상적인 체계를 거쳐서 보고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 (2) 법원은 채무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소환하여 직접 보고하게 한다.

1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채무자 내부에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거나 채무자에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2조의2 참조).

13. 경영침해 금지

- 가. 감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관리인의 직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감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장부, 공람서류 기타 감사를 위하여 제공된 문서와 자료는 신속히 열람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14. 비밀준수의무

감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선관주의의무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懈怠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임직원의 비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감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법 제414조).

〈부칙, 2010. 11. 1.〉

- 1. 이 준칙은 2010. 1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양식] 생략

[회생실무준칙 제5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준칙

2006. 4. 1. 시행

1. 목 적

이 준칙은 법인 채무자로 하여금 매년 의무적으로 적절하고 책임 있는 외부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감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법인 채무자의 재정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여 회생계획 수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를 거두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준칙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모든 법인 채무자(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채무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영세한 소규모 법인, 비영리 법인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본 준칙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3.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가.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의 개시 후 4월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부감사인과 채무자에 대한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장기 회계감사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거나 기타 사유로 당해 연도에 별도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위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외감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의 지정을 받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개시 후 4월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외부감사인을 지정요청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외감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지정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지정된 외부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호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당해 채무자가 외감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외부감사인 선정방식과 절차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외부 회계감사 면제

채무자가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후 4월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외부 회계감사 면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외부감사인의 선정자격

- 가. 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 및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해 채무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만한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나.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3년 이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외부감사인은 회생계획 인가 회계연도부터 3년간, 당해 채무자의 조사위원직을 수행하였던 외부감사인은 회생계획 인가 회계연도 익년부터 3년간 당해 채무자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 다. 동일한 외부감사인과는 3개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기간 연속하여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서약서의 제출

- 가.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지 양식 1]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관리인은 이 서약서를 계약체결 허가신청서에 첨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1항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회생계획 조항

회생계획의 심리·결의 전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별지 양식 2]의 조항을 회생계획에 삽입하게 한다.

[양식 1]

서 약 서

본인은 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직접 회계감사명령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며,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계상의 부실이나 분식결산의 결과를 밝혀내지 못한 때에는 법원이 내리는 어떠한 문책도 이의 없이 승복할 것임을 이 각서로써 서약합니다.

2008. . . .

감사인 ○ ○ ○

[양식 2]

회생계획에 삽입할 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조항

채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

[회생실무준칙 제6호]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

2006. 4. 1. 제정
2007. 1. 28. 개정
2008. 1. 22. 개정

1.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은 법인 채무자(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이하 ‘요허가금액’이라 한다)의 하한은 채무자의 연간 매출액에 따른 [별표 1]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자산 총액, 허가신청의 빈도, 업종과 규모가 유사한 다른 채무자의 요허가금액 현황,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여부 기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가감한 금액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금액은 미리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3. 회생계획 인가 전에 있는 채무자의 요허가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간매출액 100억 이하인 채무자는 500만 원으로, 연간 매출액 100억 초과인 채무자는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인가 후에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허가기준금액을 재조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요허가금액은 채무자의 영업상황에 따라 그 적정 여부를 매년 재검토한다.

[별표 1] 연간 매출액에 따른 요허가금액의 기준

연간 매출액(원)	기준액(원)
100억 이하	5,000,000
500억 이하	10,000,000
500억 ~ 1,000억	20,000,000
1,000억 ~ 5,000억	30,000,000
5,000억 초과	50,000,000

[회생실무준칙 제7호]

채무자의 평정기일

2006. 4. 1. 시행

1. 이 준칙은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상황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점검, 관찰함으로써 그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일관성 있는 절차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평정기일은 적어도 2달에 1회 이상 채무자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한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전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협의하고 따로 평정기일을 정하지 아니한다.
3. 평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다.
 - 가. 민사사건의 합의절차와 비슷한 방식에 의해 채무자별로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침을 토의한다.
 - 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위원이나 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보고서와 경영실적 등을 통해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을 경영·관리·기타의 각 부분별로 계량적으로 평가한다.
 - 라. 평정결과 채무자의 현황에 해명을 요하거나 보고가 미진한 사항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인, 해당 간부 등을 소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평정의 자료와 결과는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축적하여 회생절차의 일관성이 유지되게 한다.

[회생실무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

2006. 4. 1. 시행
2010. 7. 12. 개정

1. 보고서의 종류

- 가. 채무자가 법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는 월간보고서, 분기 보고서,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3가지 종류로 하고,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도 지체 없이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 나. 2/4분기보고서는 제목을 “반기보고서”로 붙이고, 4/4분기보고서는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단, 매 분기 말의 월간보고서(3, 6, 9, 12월의 월간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 다. 분기의 표시는 채무자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는 1, 2, 3월이, 3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4, 5, 6월이, 6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7, 8, 9월이, 9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10, 11, 12월이 1/4분기가 된다.

2. 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횟수

- 가. 월간보고서는 그 다음달 20일까지,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결산기가 연 말인 채무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매년 3월 31일까지), 분기보고서(1/4분기, 3/4분기보고서)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기(2/4분기)보고서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결산기가 연

말인 채무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1/4분기 보고서는 4월 30일, 반기보고서는 8월 31일, 3/4분기는 10월 31일까지에 제출한다.

- 나. 해당 재판부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 수행 상태, 영업상황, 경영실태, 자금사정, 관리인의 업무수행 성실도 등을 종합하여 월간보고서를 격월간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1/4분기 및 3/4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3. 보고서를 제출할 채무자

- 가. 월간·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 포함)는 보전처분 이후 단계의 채무자가 제출하고,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는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한하여 제출한다(다만 보전처분 이후 단계의 채무자가 개시결정을 받지 않은 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가 아니라 4/4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되, 그 내용은 1/4분기, 3/4분기보고서의 작성요령에 따른다).
- 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는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를 제출한다.
- 다. 제2항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개인 채무자,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 전후를 묻지 않고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작성·제출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보고서의 제출방법과 부수

- 가. 월간보고서: “Excel”이나 “훈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후 4부(법원용, 재판장용, 주심판사용, 관리위원용)를 출력하여 파산과에 접수시키고, 해당 File을 주심판사에게 E-Mail로 송부한다.
- 나. 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 포함)와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Excel”이나 “훈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후 4부(법원용, 재판장용, 주심

판사용, 관리위원용)를 출력하여 파산과에 접수시키고, 해당 File을 주심판사에게 E-Mail로 송부한다.

- 다. File을 주심판사에게 E-Mail로 송부함에 있어서는 E-Mail의 제목만으로 어느 채무자가 보낸 무슨 파일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파일명은 우선 채무자 이름을 다른 채무자와 구분할 수 있도록 2, 3자로 줄여 표기하고 연도와 월 또는 분기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보고서의 작성요령

가. 월간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①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 [별지 1]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양식으로 작성
 - 부가가치세는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에서 제외할 것
- 양식 하단의 「그 달까지의 누계」칸에는 당월까지의 실적·회생계획의 누계와 그 달성률을 표기
- 회생계획상 연간 목표액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출, 입금액을 월간 목표액으로 배분함에 있어서는 회생계획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월별 목표액 비율에 따라 배분

② 자금수지표:

- [별지 2] 「자금수지표(총괄)」 및 [별지 2-1] 「자금수지실적명세」 양식으로 작성
- [별지 2] 「자금수지표(총괄)」을 작성함에 있어 회생계획상 연간 목표액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입, 지출액을 월간 목표액으로 배분함에 있어서는 회생계획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월별 목표액 비율에 따라 배분. 단 지출에는 회생계획상 변제예정 월에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의 변제 예정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작성

- ③ 어음·수표발행현황과 자금수지표(어음수표를 발행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어음수표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는 제목만 기재하고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
 - 별지 3 「어음·수표발행현황과 자금수지표」 양식으로 작성
- ④ 당해 월에 발생한 주요 사항
 - 그 달에 발생한 주요 회생계획수행상황(회생계획의 변제계획, 자산 처분계획 중 수행한 것, 수행하지 못한 것 등), 인원 및 영업, 노사관계 중 특이사항, 기타 보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재
- ⑤ 허가사항내역:
 - 허가사항 총괄표
 - 법원 허가사항 명세
 - 관리위원 허가사항 명세
- ⑥ 허가금액 이하 지출내역
- ⑦ 허가금액 이상 지출내역 [허가금액을 초과하기는 하나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사전허가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의 지출내역을 의미함]
- ⑧ 채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제9호(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요령) 소정의 자회사(이하 '자회사'라고만 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회사에 관한 주요 사항의 변동
- ⑨ 공익채권 현황표: [별지 4 (예시) 「공익채권 현황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금융기관 공익채권, 상거래 공익채권, 제세공과금 공익채권, 기타 공익채권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
 - 개시결정일(회생계획 인가 전 회사) 또는 회생계획 인가일(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 기준, 전년도 말, 직전 분기 말, 직전 월 말과 대비

- 증감내역과 그 원인분석
- 보유 매출채권의 합계액 기재

⑩ 시재보유 현황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시재보유 현황을 현금, 예금, 어음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채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 관한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내역서를 첨부할 것
[회계연도 마지막 달의 월간보고서에는 위 기재사항 이외에 신회계연도의 월별 매출목표 및 자금수지계획, 분기별 손익목표(전년 실적 및 회생계획과 비교)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회생계획상 당해 연도 변제분에 대한 이행상황을 기재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이행상황표」를 첨부할 것. 사업계획서는 별도 파일로 제출]

나. 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1/4분기보고서 및 3/4분기보고서)

(1) 기재사항의 주요 목차

- ① 인원현황
- ② 영업현황
 - ㉠ 매출 및 입금실적,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종합의견과 전망 및 대책
- ③ 회생계획 수행현황
 -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변제현황, ㉡ 부동산 매각, ㉢ 신주발행, ㉣ 기타
- ④ 보고사항
 -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현황표, ㉡ 향후 1년간 변제할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금액, ㉢ 공익채권 현황표, ㉣ 신규자본유치 및 M&A를 위한 조치사항 및 실적, ㉤ 어음·수표 발행현황, ㉥ 가압류, 가처분, 소송현황, ㉦ 접대비 사용현황, ㉧ 사업현장 명세(건설채무자의 경우), ㉨ 기타 당기에 발생한 특이사항

(2) 기재요령

(가) 일반적인 기재요령

- 아래와 같이 각 기재 항목별로 제시하는 작성요령과 작성양식에 따라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보고서를 작성한다(당해 채무자에 해당사항이 없는 기재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제목은 기재하고 “해당 없음” 표시를 할 것).
- 제시하고 있는 작성양식 중 “[별지](예시)”로 표현하고 있는 양식은 채무자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예시)”로 표현하고 있지 아니한 [별지 양식]은 그 양식 그대로 작성한다. 다만 “(예시)”로 표현하고 있지 아니한 [별지 양식] 가운데 그와 같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 현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데 미흡한 면이 있다면, 채무자 현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양식을 자체 개발하여 작성할 수 있다(다만 제시한 양식의 기재사항은 누락되지 말아야 함).
- 기재항목에 대하여 법원이 특별히 제시하고 있는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실정에 맞게 양식을 만들어 보고한다.
- 각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적과 회생계획상의 예정치 사이에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註)를 달아 그 사유를 기재한다. 또한 대차대조표의 각 항목 중 전기에 비하여 큰 변동이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도 각기 주(註)를 달아 그 사유를 기재한다. 위와 같은 각 주(註)의 설명은 법원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것이어야 한다.
- 매출, 입금, 수주, 자금수지 등 회생계획상 연간 목표액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을 월간(또는 분기) 목표액으로 배분함에 있어서는 회생계획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월별 목표액 비율에 따라 배분.
- 손익항목의 매출원가율, 관관비율 등 회생계획상 연간 매출액 대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분기의 회생계획 목표액을 정함에

있어 그 매출액 대비율을 임의로 변경시키지 말고 연간기준 매출액 대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

-위의 기재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관리인의 판단하에 의미 있는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 권장함(예컨대, 재무제표상의 특이사항에 관한 설명, 시설투자·기술투자계획 및 실적, 인적 자원의 관리계획 및 실적, 노사화합방안, 채권회수계획 및 실적, 기타 회생계획완수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각종 장단기 혁신계획(Innovation)과 실적 등).

(나) 구체적인 기재요령

① 인원현황:

- 직급별, 본사·공장(현장)별/지역별 등으로 적절히 구분하여 작성
- 전년도 말과 직전 분기 말과 증감대비, 변동사항이 있으면 비교란에 간단히 이유를 기재

② 영업현황

○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별지 1] 양식으로 총괄표 작성

- 과거 실적, 회생계획은 1년분을 모두 기재하고 올해 실적은 다달이 기재해 나감
- 반드시 회생계획과 대비할 것(회생계획에 월별 또는 분기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기재방법: 회생계획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월별 또는 분기별 목표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표시할 것).
- 달성률은 전년 및 회생계획과 대비한 실적의 비율을 %로 기재(예컨대, 10%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110%, 10% 미달한 경우에는 90%로 기재/종전의 증감률 개념으로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부가가치세는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에서 제외할 것
- [별지 5] (예시)를 참고하여 주요 부문(품목)별 매출실적표 작성
 -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각 부문(품목)별 비중 표시
- [별지 6] (예시)를 참고하여 주요 부문(품목)별 생산실적표 작성(제조업의 경우)
 - 전년도 같은 분기와 직전 분기 말과 대비하고 공장가동률 표시
- 수출부문이 있는 경우, [별지 7] (예시), [별지 8] (예시)을 참고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수출대금 결제현황표를 작성
- 수주실적표
 - 건설, 조선, 기타 주문생산부문이 있는 경우 수주실적표 작성(양식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작성)
 - 수주실적표도 위 “매출실적” 작성요령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거 실적, 회생계획표의 수주계획을 기재하고 상호 대비
 - 건설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의 경우 현장명, 발주처, 수주금액(계약변경분 포함하되 계약변경분임을 부기), 공사기간 등을 기재
- 분기 대차대조표:
 - [별지 9] (예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전년도 말, 직전 분기 말과 대비하여 증감을 표시하고 증감원인을 기재
 - 대차대조표는 요약대차대조표 및 상세대차대조표를 모두 작성하되 증감비교는 요약대차대조표 항목만 하여도 무방함.
- 분기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는 [별지 10., 11., 12.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① 해당 분기 손익계산서(요약)

② 1/4분기~해당 분기 손익계산서(요약)

③ 1/4분기~해당 분기 손익계산서(상세) 3개의 손익계산서를 작성 첨부

(물론 1/4분기보고서의 경우는 ② 1/4분기~해당 분기 손익계산서(요약)가 불필요함)

-위 2개의 요약 손익계산서(①, ②)에 대하여는 반드시 회생 계획(회생계획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분기로 나눈 금액), 전년도 같은 기간 2개 수치와 대비하여 항목별 달성률(※증감률이 아님)을 표시하고, 상세 손익계산서는 그냥 통상적인 결산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요약 손익계산서에는 각 항목이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원가율, 매출총이익률, 판매비율,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등)을 표기할 것.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재무회계)를 작성하되, 별도로 관리회계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와 대비하고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은 비교란에 그 내역을 기재한다[별지 10-1., 11-1. 양식]. 관리회계에 따른 손익계산서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대손상각(경상적인 것을 제외한다), 채무면제이익, 재해손실 등 채무자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이 당해 분기에 특수하게 발생한 손익항목을 제외한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위 항목 외에 추가로 관리회계에 따른 손익내역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내역과 달리 작성하려면 이를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비교란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요약손익계산서(누계)의 하단 또는 다음 장에 각 회계연도 개시 후부터 당해 분기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보상비율을

기재(이자보상비율은 이자비용 및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출하되, 그 이자비용에는 지급이자, 할인료, 사채이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지급이자에는 공익채권에 대한 이자뿐 아니라 회생채권에 대한 발생이자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함. 다만 현가할인차금상각 및 채무면제이익은 제외하고 산정)

○ 종합의견과 전망 및 대책

-영업현황(매출, 손익, 자금현황)에 대한 자체분석, 향후 영업전망, 만회대책 등을 기재

-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상의 추정손익, 추정자금수지, 변제계획을 명실상부하게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특히 “회생계획”과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원인과 대책),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동향과 해당 채무자의 영업현황(매출구조, 손익구조, 수출비중의 변화 등)에 대한 분석, 나아가 채무자가 잔여 회생계획상의 손익, 자금수지, 변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예컨대, 매출증대, 손익개선, 매출 또는 손익구조의 개편, 조직정비, 노사화합, 시설투자, 기타 회생계획완수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각종 장단기 혁신계획(Innovation)과 이를 위한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기재하기 바람.

③ 회생계획 수행현황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변제현황

-[별지 13]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현황」 양식에 따라 회생계획상 당해 분기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회생채무 내역을 기재하고 그 변제현황을 기재

-미변제금액(과거분 포함)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확한 세부내역(채권자 이름/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여부/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내역/원래 변제기/연체 시 적용하기로 한 회생계획상의 연체이자율 및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액), 지체사유(채권자미수령의 경우도 이러한 사유를 기재), 향후 변제계획 및 대책 등을 별도 표로 상세히 기재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재는 미변제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매 분기보고서마다 기재할 것.

-[별지 13]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현황」양식 중 “변제실적-전분기까지 요변제액”은 바로 전분기의 요변제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결정 후부터 전분기까지 요변제액 총액을 말하는 것임, “변제실적-미변제액”은 인가결정 후부터 전분기까지의 요변제액 중 미변제된 채권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변제실적-조기변제액”은 당분기를 포함한 향후 요변제액에서 미리 변제된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 부동산매각, 신주발행, 기타

-부동산매각, 신주발행, 기타 회생계획상 당해 분기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수행현황기재,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향후 수행계획 및 대책을 기재(미수행의 경우에 기재하는 향후 수행계획 및 대책은 미수행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매 분기보고서마다 기재)

-향후 1년 내에 수행하여야 할 부동산매각(회생계획상 이미 매각을 하였어야 할 부동산 포함), 신주발행, 기타 회생계획상의 이행예정사항과 그 이행전망(① 회생계획상 매각시기, 매각예정금액, ② 매각 불이행 시 처리방법 - 연체이자 적용 여부, 매각위임이나 공매위임 등의 조치가 강제되어 있는지 여부 등, ③ 매각 추진 경과, ④ 향후 이행 전망, 매각 불이행 시 자금운용대책 등의 요령으로 기재)

-회생계획상의 자산매각계획과 채무변제계획의 관계(실제 매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계획상의 매각예정연도에 예상매각대금 상당의 금액을 회생담보권자에게 무조건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매각된 경우에만 그 매각대금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변제조항(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에 따라 변제하면 되는 것인지, 또한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회생계획상 자금수지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④ 보고사항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종합변제실적 및 변제계획표:

-[별지 14] 「회생담보권·회생채권 종합변제실적 및 변제계획표」 양식에 따라 매 보고서마다 작성(※변제시기 또는 변제금액이 가변적인 보증채무는 본 표에서는 제외하고 별도 표로 처리)

㉑ 실변제대상채권액: 인가 당시 확정된 원금, 개시전이자 중 권리변경 후의 금액(즉, 면제 또는 출자전환된 채권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고, 개시 후 이자는 인가 당시 예상하여 적용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즉, 회생계획상의 개시 후 이자 금액)을 기재

㉒ 변제실적: 채무자의 변제행위(상계 포함)로 인한 부분만 기재, 일부 금액을 조기변제하면서 나머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변제실적에 반영시킬 것, 조기변제한 경우의 연도 표시는 당초 회생계획상의 변제연도에 의함(즉, 회생계획상 2010년도에 변제예정이던 채무를 2008년에 변제하였으면 변제실적란에 2010년도 칸을 만들어 변제금액을 기재)

㉓ 변동: 인가 이후 보고서작성기준일까지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의 패소로 인한 증가분, 환율·이자율

변경으로 인한 증감분, 구상권 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로 인한 감소분, 원금의 조기변제로 인한 개시 후 이자 자연 감소분 등 위 ⑥변제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변동금액을 기재하고, 각 변동항목에 대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

④ 채권잔액: ㉠ - ㉡ - ㉢

㉢ 변제계획: 원칙적으로 장래의 도래분만 기재하나, 지나간 연도 중에 미변제금액(채권자미수령 포함)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해당 연도칸을 만들어 미변제잔액을 기재

○ 향후 1년간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금액

-[별지 15] 「향후 1년간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금액」 양식에 따라 변제기 순서에 따라 표로 작성(※ 정확한 변제기일을 기재하고, 기존의 미변제금액도 향후 1년간 변제하여야 할 채권금액으로 포함시키되 이 부분에 대한 변제기 표시는 원래 변제하였어야 할 변제기를 기재할 것)하고, 그 변제전망(변제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하고 책임 있는 의견) 및 변제재원(○○부동산매각대금 ○○억 원, ○○주식매각대금 ○억 원, 증자대금 ○억 원, 영업수익금 ○억 원 등 회생계획상의 예상변제재원과 실제 예상변제재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16] 「보증채무 현실화현황 및 종합변제계획표」 양식에 따라 매 보고서마다 작성

-변제시기 또는 변제금액이 가변적인 보증채무(회생계획상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기로 하되,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등의 사유 발생시 채무자가 …… 변제한다.”는 식으로 규정된 채무를 의미하며, 주로 대출금 연대보증채무를 지칭)에 대하여는 별도로 표 작성

㉠ 인가 당시 보증채무액: 인가 당시의 보증채무 원금, 개시

진 이자 중 권리변경 후의 금액(즉, 면제 또는 출자전환된 채권을 차감한 금액) 및 회생계획상 지급하기로 한 개시 후 이자(결국 현실화되어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보증채무액)를 기재

- ㉞ 변제실적: 위 보증채무 중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이미 변제(상계 포함)한 부분을 기재, 일부 금액을 조기변제하면서 나머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변제실적에 반영시킬 것, 조기변제한 경우의 연도 표시는 당초 회생계획상의 변제연도에 의함(즉, 회생계획상 2010년도에 변제예정이던 채무를 2008년에 변제하였으면 변제실적란에 2010년도 칸을 만들어 변제금액을 기재)
 - ㉟ 변동: 인가 이후 보고서작성 기준일까지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의 패소로 인한 증가분, 환율·이자율 변경으로 인한 증감분,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한 감소분 등 위 ㉞변제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변동금액을 기재하고, 각 변동항목에 대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
 - ㊱ 채권 잔액: 계: ㉞ - ㉟ - ㉟ = 우발 + 현실화, 우발: 채권 잔액 중 아직 현실화되지 아니한 금액, 현실화: 채권 잔액 중 이미 현실화된 금액
 - ㊲ 변제계획: 원칙적으로 장래의 도래분만 기재하나, 지나간 연도 중에 미변제금액(채권자 미수령 포함)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해당 연도 칸을 만들어 미변제잔액을 기재
- 공익채권 현황표: [별지 17] (예시) 「공익채권 현황」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금융기관 공익채권, 상거래 공익채권, 기타 공익채권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
 - 전년도 말, 직전 분기 말과 대비

- 증감내역과 그 원인분석
- 신규자본유치 및 M&A를 위한 조치사항 및 실적
- 어음, 수표 발행현황: [별지 18] (예시) 「어음, 수표 발행현황」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
 - 당좌개설은행 표기
- 가압류, 가처분, 소송현황: [별지 19]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
 - 가압류, 가처분 외에 계류중인 소송(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 포함)도 기재
 - 채무자가 신청인(원고)이든, 피신청인(피고)이든 불문하고 기재
 - 가압류, 가처분은 해당 분기에 있었던 것만 기재하고, 소송은 현재 계류중인 것 모두 기재
- 접대비 사용현황: [별지 20]과 같은 양식으로 기재
 - 반드시 위 내용 외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되는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하고, 실제 지출액이 이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재할 것
- 사업현장명세:
 - 건설채무자의 경우에 [별지 21] 「사업현장명세」 양식에 따라 작성
 - 미분양아파트 현황도 별도로 기재
- 기타 사항: 기간(분기, 반기, 연) 중 채무자에 있었던 중요사항 또는 특이사항 기재
- 자회사에 관한 주요 사항의 변동, 자회사의 상세손익계산서 (그 요령은 채무자에 대한 것과 같다)
 - ※ 분기보고서 작성시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가결산 수치를 토대로 가결산 수치임을 적절히 표시하여 제출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되, 추후 결산이 완료되면 과거 분기보고서 중 결산완료시 달라진 부분을 명기한 수정보고서를 제출할 것

다. 반기보고서(2/4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2/4분기보고서(회계연도의 중간보고서)는 “반기보고서”로 표기
-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은 위 분기보고서에 준함
- 반기보고서와 별도로 2/4분기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음
- 반기보고서는 반기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감사기관의 반기검토의견서 또한 나오는 대로 법원에 제출(상장기업 등 반기검토보고서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 ※ 반기보고서 작성시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가결산 수치를 토대로 가결산 수치임을 적절히 표시하여 제출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되, 추후 결산이 완료되면 과거 반기보고서 중 결산완료시 달라진 부분을 명기한 수정보고서를 제출할 것

라.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① 채무자의 개요
 - 설립연월일, 설립자, 채무자연혁, 본·지점 및 공장 소재지
 - 계열기업인 경우 소속 그룹명 및 그 현황, 소속일자, 계열기업이 된 사정(과거 계열기업이었던 경우는 과거 소속 그룹명, 계열분리일자, 계열분리된 경위)
 - 주요 업종, 생산품, 주요 판매처
 - 업계순위(매출실적, 생산시설의 규모, 시장점유율 등에 따른 업계 순위)와 주요 경쟁업체
 - 채무자 기관·부서 도표(담당자 표시)
 - 임원 현황 및 직책, 보수, 최근 5년간 임원 수의 변동추이(감사를 두고 있는지 여부, 있다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실질적인 감사인지 아니면 명목상의 감사인지 여부와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재), 보고서 말미에 임원이력서 첨부
 - 직원 현황(총수 및 사업별·직급별 현황), 최근 5년간 직원 수의

변동추이

-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른 주요 원인(파탄원인, 부도일자)
- 회생절차 신청경과(신청대리인, 신청일, 보전처분일, 개시일, 회생계획안 최초제출일, 회생계획 인가일, 계획변경일,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유무 등)
- 법원허가금액(최종증액결정일자) 및 허가대상행위, 보고서 말미에 법원의 결정문 사본 첨부
- 결산기준일
- 외부회계감사
 - ㉠ 회계법인명
 - ㉡ 회계법인 선정에 관하여 당원의 허가를 받은 일자, 허가서의 문서번호, 회계감사보수
 - ㉢ 지난 10년간 채무자를 외부감사한 회계법인의 이름 및 감사의 견(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적정 이외의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 기재)
 - ㉣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유
- 회생절차상의 조사위원
- 법률 및 회계, 세무, 노무자문에 관한 사항
- 경영고문, 자문역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정식임원 이외의 고문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성명, 선임경위와 선임일자, 보수, 사무실·차량·기사·비서 제공 여부
- ②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 관하여
 - 성명(한자) 및 인적 사항
 - 이력서
 - 선임일자(보전관리인으로든 관리인으로든 최초 선임된 일자를 기재, 관리인 불선임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일자 및 관리인 불선임결정 일자를 모두 기재), 재선임된 경우 재선임일자 및 임기, 보고서

말미에 최종 선임결정문 사본 첨부

- 현재 보수(법원이 결정해 준 본봉/상여금 또는 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만일 채무자의 사정상 반납하고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별도로 표시), 최초 선임일 이후 보수변동내역, 보고서 말미에 최종 보수결정문 사본 첨부
- 선임 전의 채무자와의 관계(직책), 관리인 등이 된 사정(법 제7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에 의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법원 직권 또는 채권자 추천에 의한 제3자 관리인)
- 전임 보전관리인 및 관리인 등의 성명, 재임기간
- 관리인대리가 있는 경우, 위 관리인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할 것

③ 자본과 관련하여

- 회생계획이 아직 인가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경우: 현재 납입자본금, 발행주식 수, 주식소유관계(총주식수 5% 이상 소유하는 주주명단 및 그 소유비율, 취득일자), 주식의 담보제공상황
- 회생계획이 인가된 채무자의 경우: 회생계획상 주주, 주식에 관한 조항
 - ㉓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대한 소각 여부, 그 비율, 이행결과
 - ㉔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납입자본금, 발행주식 수 및 그에 대한 소각 또는 병합 여부, 그 비율, 이행결과(등기부상 주식사항)
 - ㉕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출자전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포함) 여부 및 그 결과
 - ㉖ 현재 납입자본금, 발행주식 수, 주식소유관계(총주식 수 5% 이상 소유하는 주주명단 및 그 소유비율, 취득일자), 주식의 담보제공상황
 - ㉗ 회생계획상 향후 신주발행 일정
- 주권발행 여부, 상장(장외등록)법인 여부, 주당 액면가, 최근 주

식시세(또는 거래가격) 및 지난 1년간 주식시세 변동상황의 개요

- ④ 전년도(4/4분기 포함) 영업현황
 -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은 위 분기보고서에 준하여 작성
 - 대차대조표
 -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은 위 분기보고서에 준하여 작성
 - 손익계산서
 -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은 위 분기보고서에 준하여 작성
 - 자금수지표
 - 회생계획,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항목별 증감을 표시
 - 자금수지표 양식은 [별지 22] 「자금수지표(총괄)」, [별지 22-1] (예시) 「회생계획상의 추정 자금수지 내역과 당해 연도의 실제 자금수지 내역 비교표」, [별지 22-2] 「자금수지실적명세」에 따름
 - 종합의견과 전망 및 대책
 - 전년도 영업현황(매출, 손익, 자금현황)에 대한 자체분석
 - 가압류, 가처분, 소송현황
 -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은 위 분기보고서에 준하여 작성
 - 접대비 사용현황
 -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은 위 분기보고서에 준하여 작성
- ⑤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최근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할 것)
 - 신청 당시, 개시 당시, 인가 당시, 최근 자산 및 부채총액
 - 지난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 ※ 외부회계감사결과(또는 인가 전 채무자로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대차대조표인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할 것(아래 손익계산서도 동일)
 - 인가 당시 확정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액수 및 최근의 회생채

- 권, 회생담보권 잔액(원금 및 개시 전 이자, 보증채권 및 장래의 구상권 등으로 구별하여 표 작성)
- 인가 당시 및 최근의 공익채권액(금융기관채무, 상거래채무 기타 등으로 구별)
 - 최근 총채무액(회생채무와 공익채무 총계)
 - 어음·수표의 발행 여부(거래재개 일자, 당좌계정이 개설된 은행 지점 기재) 및 지난 2년간 월별 어음·수표 발행현황(매수 및 금액)
- ⑥ 영업 및 자금수지와 관련하여
- 회생계획기간 중의 추정손익계산서(회생계획안의 추정손익계산서)
 - 지난 5년간의 요약비교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
 - 금년도 사업계획
 - ㉠ 금년 업계동향
 - ㉡ 금년 채무자의 영업전략
 - ㉢ 금년 손익계획 및 자금수지계획(회생계획과 대비하여 월별·분기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의 목표치 및 연간 합계액을 기재)
 - ㉣ 수주부문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건설채무자 등) 인가연도 이후부터 작년까지의 수주실적(회생계획, 자체목표와 대비할 것) 및 금년 수주계획(회생계획 및 자체목표)
 - ㉤ 금년 사업계획의 달성 및 향후 회생계획의 완수를 위하여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예컨대, 조직정비, 판매조직개편, 우수인력유치, 보수체계정비, 신규투자, 고수익 영업부문의 강화, 특정공장의 폐쇄나 이전, 현지법인의 철수, 원가율이나 판관비의 절감, 노

사화합, 증자, 자산매각, 부동산개발, 신제품개발, 미수채권회수 등등)

-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⑦ 회생계획상의 변제계획과 관련하여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요약표 및 변제기일
 - 회생계획안에 따른 연도별·채권별·항목별(원금, 이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대상금액(회생계획안상의 종합변제계획표에 기초)과 실제 변제상황(실변제금액, 미변제금액, 미변제사유를 기재하고 향후 변제대책을 자세히 기재)
 - 회생계획상의 자산매각계획(매각예정자산내역, 매각예정시기, 매각예정가, 실제매각 여부)
 - 회생계획상의 자산매각계획과 채무변제계획의 관계(회생계획상의 매각예정연도에 예상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생담보권자에게 실제 매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매각된 경우에만 그 매각대금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변제조항(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에 따라 변제하면 되는 것인지, 또한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회생계획상 자금수지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 ※ 개시단계 채무자인 경우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과 채권자와의 협의내용, 향후 계획안 통과 일정을 기재
- ⑧ 노사관계에 대하여
 - 노동조합의 유무
 - 노조원의 수(전체 노조가입가능직원 수 중 실제가입자의 비율 표기), 노동조합이 속한 상급 노동단체
 - 최근 노사관계의 동향(특히, 최근 5년간 쟁의행위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경과 기재)
 - 최근 5년간 임금인상의 추이(만일 반납하는 상여금 등이 있다면, 그 규모)

- 올해 임금단체협약의 시기 및 전망
- 기타 노사관계와 관련한 특이사항
- ⑨ 기 타
 - 신규자본유치 및 M&A를 위하여 취한 조치사항 및 실적
 - 개시신청 당시 및 현재의 주거래은행(지점 표시,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구성원 및 대표채권자
 - 잔존 채권금액의 다액 순으로 10대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주소·전화·팩스번호·담당부서·담당자)
 - 구 사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채무자와의 현 관계(말고 있는 직책이 있다면 그 직책, 보수, 지원현황)
 - 기타 중요사항 및 법원에 건의할 사항
- ⑩ 감사의 의견(회생실무준칙 제4호)
 - 채무자의 업무처리 과정에 상법 제413조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명기
 - 회계 및 자금관계 보고내용의 적부, 당해 분기 감사 실적의 개요, 자회사에 관한 사항, 기타 특이 사항
- ⑪ 자회사 현황보고서 첨부(회생실무준칙 제9호)
 - 자회사의 개요
 - 설립연월일, 설립자, 채무자연혁, 자회사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본·지점 및 공장소재지
 - 주요 업종, 생산품, 주요 판매처
 - 임원 현황, 임기 및 직책, 선임 전 채무자와의 관계, 보수(임원 이력서 첨부)
 - 직원 현황(총수 및 사업별·직급별 현황)
 - 채무자의 경영 관여 정도
 - 자본에 관한 사항
 - 현재 납입자본금, 발행주식 수, 주식소유관계(총주식 수 5% 이

- 상 소유하는 주주명단 및 그 소유비율)
 - 주권발행 여부, 상장(장외등록)법인 여부, 주당 액면가, 최근 주
식시세(또는 거래가격) 및 지난 1년간 주식시세 변동상황의 개요
 - 자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위 각 사항에 대응하는 사항
-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최근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 기준)
 - 최근 5년간의 채권·채무 총액의 추이
 - 최근 5년간의 비교 대차대조표
 - 자회사의 주요 재산목록
- 영업에 관한 사항
 - 최근 5년간의 요약 비교 손익계산서(매출액 중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당
기순이익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부기할 것)
 - 직전 회계연도의 상세 손익계산서(각 항목의 매출액에 대한 백
분율을 부기함과 아울러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에 따른 각 손익
상황을 비교할 것)
 - 차기 회계연도 손익계획 및 사업전망
- 채무자와 자회사와의 관계
 - 상호간의 영업 거래현황
 - 상호간의 금전대차 기타 채권·채무 내역
 - 회생계획 인가 당시와 전년도 및 당년도의 상호간의 채권·채무
총액의 추이
 - 상호 보증관계
 - 최근 5년간 채무자가 받은 이익배당의 내용
 - 자회사 매각계획의 유무 기타 자회사에 대한 향후 운용방침과
그 경과
- 기타 중요한 사항(채무자가 다른 회사의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그 내역과 사유 등

※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의 각종 수치는 가급적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를 것. 만약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면 가결산 결과에 의하여도 무방하나, 해당부분에 가결산 수치임을 적절히 표시하고,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회계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와 함께 법원에 수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가결산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연간보고서의 수치와 달라진 부분을 지적할 것.

〈부칙, 2010. 7. 12.〉

1. 이 준칙은 2010. 7. 12.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매출실적과 입금실적

(단위: 원)

구 분	매 출 실 적					입 금 실 적				
	전년	2010년		달성률		전년	2010년		달성율	
	실적	회생 계획	실적	전년 대비	회생계획 대비	실적	회생 계획	실적	전년 대비	회생계획 대비
1 / 4 분 기	1월									
	2월									
	3월									
	소계									
2 / 4 분 기	1월									
	2월									
	3월									
	소계									
3 / 4 분 기	1월									
	2월									
	3월									
	소계									
4 / 4 분 기	1월									
	2월									
	3월									
	소계									
그달까지의 누계										
합계										

- ※ 주: 1. 부가가치세는 매출실적 및 입금실적에서 제외할 것(‘자금수지표(총괄)’와 상이한 점에 유의할 것)
 2. 받을어음은 입금실적에서 제외할 것(실제 입금 시 반영)
 3. 달성률은 전년 및 회생계획과 대비한 실적의 비율을 %로 기재(예컨대, 10%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110%, 10% 미달한 경우에는 90%로 기재. / 이하에서 ‘달성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표기하고, ‘증감률’이라고 표현한 것은 +10%, -10% 식으로 기재하고, 단순히 ‘증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차액을 기재)

별지 2.

자금수지표(총괄)

(2010. . . .부터 2010. . . .까지)

(단위: 원)

기간 별	구분	회생계획			실 적			달성률	비 고
		수입	지출	이월잔 (자금수지)	수입	지출	이월잔 (자금수지)		
전기	이월잔								
1/4 분기	1월								
	2월								
	3월								
	소계								
2/4 분기	1월								
	2월								
	3월								
	소계								
3/4 분기	1월								
	2월								
	3월								
	소계								
4/4 분기	1월								
	2월								
	3월								
	소계								
그달까지의 누계									
합계									

- ※ 주: 1. 부가가치세는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에 포함할 것('매출실적'과 '입금실적'과 상이한 점에 유의할 것)
 2. 전기 이월잔의 수입, 지출은 공란으로 하고 이월잔만을 기재할 것.
 3. 매월의 이월잔 란에는 그 달의 실제 이월잔고를 기재하고, 소계, 누계 및 합계의 이월잔란에는 그때까지의 수입합계액과 지출합계액의 차액, 즉 자금수지실적을 기재할 것.

별지 2-1.

자금수지실적명세

(2010. . .부터 2010. . .까지)

(단위: 원)

구 분	전월실적	당월실적	전월대비 증감	비 고
전월이월잔				
수 입 계				
지 출 계				
수입지출차				
차기이월잔				

- ※ 주: 1. 부가가치세는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에 포함할 것("매출실적과 입금실적"과 상이한 점에 유의할 것)
 2. 전기 대비 증감요인분석: 원인규명하고 대책을 설명할 것
 3. 이월잔액 중 구속성예금액 및 이를 공제한 가용시재액을 주석으로 별도 표기
 4. 받을어음은 주석으로 별도 표기하고, 위 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할 것(실제 입금 시 반영)

별지 3.

어음·수표발행현황과 자금수지표

① 어음·수표발행현황

(단위: 원)

월별	전월 말 잔액		당월 만기도래분		당월 발행분		당월말잔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② 당월 말 잔액의 월별 만기도래액

(단위: 원)

월 별	건 수	금 액	비 고
○ 월			
○ 월			
○ 월			
○ 월			
계			

(뒷장에 계속)

(앞장에서 계속)

③ 자금수지표

(단위: 원)

구 분	전월실적	당월계획	당월실적	전월대비 증감	익월예상	비 고
전월이월잔						
수 입 계						
지 출 계						
수입지출차						
차기이월잔						

※ 주: 1. 전월대비 증감요인분석: 원인규명하고 대책을 설명할 것
 2. 이월잔액 중 구속성 예금액 및 이를 공제한 가용시재액을 주석으로 별도 표기
 3. 받을어음은 주석으로 별도 표기하고, 위 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할 것(실제 입금 시 반영)

별지 4.(예시)

공익채권 현황

(2010. . . . 현재)

(단위: 백만 원)

구분	개시결정일 (또는 인가일) (. . .) 기준	전년도말	전분기말	전월말	당월말	개시결정일 (또는 인가일) 대 비 증감	전년도말 대 비 증감	전분기말 대 비 증감	전 월 말 대 비 증감
은행									
보험회사									
금융기관 공익채권 계									
어음채무									
매입채무									
상거래 공익채권 계									
조세									
건강보험료									
제세공과금 공익채권 계									
미지급 급여									
개인 차입금									
기타 공익채권 계									
합계									
보유 매출채권 계									

※ 주: 1. “개시결정일(또는 인가일) (. . .) 기준”란에는, 회생계획 인가 전 회사는 ‘개시결정일’ 기준 공익채권 현황을, 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일’ 기준 공익채권 현황을 기재할 것
 2. 증감내역과 원인을 분석하여 별지에 설명 요

별지 5.(예시)

주요 부문(품목)별 매출실적

(2010. . . 현재)

(단위: 원)

품목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비고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A부문 (품목)	수출											
	내수											
	소계											
B부문 (품목)	수출											
	내수											
	소계											
C부문 (품목)	수출											
	내수											
	소계											
기타												
합 계												

※ 주: 1. 비중은 전체 매출실적에 대한 품목별 매출비율을 %로 비교
 2. 합계는 1/4분기~해당분기 누계의 실적과 비중을 표시

별지 6.(예시)

주요 부문(품목)별 생산실적

(2010. . . 현재)

(단위: 원)

부문 (품목) 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비고
	실 적	전분기 대비 증감률	실 적	전분기 대비 증감률	실 적	전분기 대비 증감률	실 적	전분기 대비 증감률	실 적	전분기 동기간 대비 증감률	
A											
B											
C											
D											
기 타											
합 계											

- ※ 주: 1. 비고란에 당분기 공장가동률을 표시하고 전분기와 차이가 있을 경우 원인을 분석 설명할 것
 2. 전분기 대비는 전분기 대비 당분기의 증감금액을 %로 표시할 것(증감을 개념)
 3. 합계는 1/4분기 ~ 해당분기 누계를 전년도 같은 기간의 금액과 대비하여 증감률로 표시

별지 7.(예시)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2010. . . 현재)

(단위: 원)

분기별 품목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금액	수량	전분기 대비 증감률	금액	수량	전분기 대비 증감률	금액	수량	전분기 대비 증감률	금액	수량	전분기 대비 증감률	금액	수량	전분기 동기 대비 증감률
A															
B															
C															
D															
기 타															
합 계															

- ※ 주: 1. 전분기 대비는 전분기 대비 당분기의 증감 금액/수량을 %로 표시할 것(증감을 개념)
 2. 합계는 1/4분기 ~ 해당분기 누계를 전년도 같은 기간의 금액/수량과 대비하여 증감률로 표시

별지 8.(예시)

수출대금 결제현황

(2010. . . 현재)

(단위: 원 또는 달러)

수출형태	수출실적			계약잔액			비 고
	결제액	미결제액	합 계	전분기말 계약잔액	금기중 계약액	금기말 계약잔액	
L/C							
D/A							
D/P							
기 타							
합 계							

별지 9.(예시)

대차대조표

(2010. . . 현재)

(단위: 백만 원)

과 목	전년도 말	2010.3.31.	2010.6.30.	전년도말 대비증감	직전분기말 대비증감	비 고
자 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						
(2) 재고자산						
1.						
.....						
II. 고정자산						
(1) 투자자산						
1.						
.....						
(2) 유형자산						
1.						
.....						
(3) 무형자산						
1.						
.....						
(4) 이연자산						
1.						
.....						
자 산 총 계						
부 채						
I. 유동부채						
1.						
.....						
II. 고정부채						
1.						
.....						
부 채 총 계						
자 본 금						
I. 자본금						
II. 결손금						
1.						
.....						
III. 자본조정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총계						

※ 주: 1. 전년도말, 직전분기말 대비 증감은 단순히 증감액을 표시(증감비율이 아님)

별지 10.

요약 손익계산서(3/4분기)

(2010. . . 현재)

(단위: 백만 원)

구분 과목	전년도 3/4분기 실적		2010년 3/4분기 손익현황						비고
	금액	비율	회생계획		실적		달성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년동기 대비	회생계획 대비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관리비									
V. 영업이익									
VI. 영업외수익									
VII. 영업외비용									
VIII. 경상이익									
IX. 특별이익									
X. 특별손실									
XI. 법인세 등									
XII. 당기순이익									

별지 10-1.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상 손익계산서 대비표(3/4분기)

(2010. . . 현재)

(단위: 백만 원)

구분 과목	회생계획		재무회계상 손익			관리회계상 손익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회생계획 대비 달성률	금액	비율	회생계획 대비 달성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별지 11.

요약 손익계산서(1/4분기~3/4분기 누계)

(2010. . . 현재)

(단위: 백만 원)

구분 과목	전년도 누계 실적		2010년 1/4분기 ~ 3/4분기 손익 현황						비고
	금액	비율	회생계획		실적		달성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년동기 대비	회생계획 대비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관리비									
V. 영업이익									
VI. 영업외수익									
VII. 영업외비용									
VIII. 경상이익									
IX. 특별이익									
X. 특별손실									
XI. 법인세 등									
XII. 당기순이익									

별지 11-1.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상 손익계산서 대비표(1/4~3/4분기 누계)

(2010. . . 현재)

(단위: 백만 원)

구분 과목	회생계획		재무회계상 손익			관리회계상 손익			비 고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회생계획 대비 달성률	금 액	비 율	회생계획 대비 달성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별지 12.

손익계산서(1/4분기 ~ 3/4분기 누계)

(2010. . . 현재) (단위: 백만 원)

계정과목	구분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이익						
IV. 판매비와 관리비						
1. 임원급여						
2. 급료						
3. 퇴직급여충당금						
4. 상여금						
5. 복리후생비						
·						
·						
·						
·						
·						
·						
·						
V. 영업이익						
VI. 영업외수익						
1. 수입이자						
2. 수입배당금						
·						
·						
VII. 영업외비용						
1. 지급이자						
2.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						
·						
VIII. 경상이익						
IX. 특별이익						
1.						
X. 특별손실						
1.						
2.						
3.						
XI. 당기순이익						

별지 13.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변제현황

(2010. . . 현재) (단위: 백만 원)

구 분	인가일 기준 (...)	변 제 실 적				전분기 잔 액	당분기 변제실적				당분기 잔 액
		전분기까지 요변제액	미변제액	조 기 변제액	변제금액		요변제액	미변제액	조 기 변제액	변제금액	
제1금융 기 관	원금										
	이자										
제2금융 기 관	원금										
	이자										
보 증 기 관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상거래 채 권	원금										
	이자										
회생담보 권 계	원금										
	이자										
제1금융 기 관	원금										
	이자										
제2금융 기 관	원금										
	이자										
보 증 기 관	원금										
	이자										
상거래 채 권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회생채권 계	원금										
	이자										
총 계	원금										
	이자										

※ 주: 1. 미변제금액(과거분 포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참조)은 별도 <표>로 작성

별지 14.

희생담보권 · 희생채권 종합변제실적 및 변제계획표

(2010. . . 현재)

(단위: 백만 원)

구 분	실변제상태 채권액 (인가일:)	변 제 실 적			변동 (. . .)	채권잔액 (. . .)	변 제 계 획															
		준비년도 (2009)	1차년도 (2010)	소계			1차년도 (2010)	2차년도 (2011)	3차년도 (2012)	4차년도 (2013)	5차년도 (2014)	6차년도 (2015)	7차년도 (2016)	8차년도 (2017)	9차년도 (2018)	10차년도 (2019)						
회 생 담 보 권	금융 기관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00	소계																				
		원금																				
		개시 전 이자																				
	00	개시 후 이자																				
		소계																				
		원금																				
	합계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소계																				
회 생 채 권	00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00	소계																				
		원금																				
		개시 전 이자																				
합계	개시 후 이자																					
	소계																					
	원금																					
총 계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소계																					
	총계																					

별지 15.

향후 1년간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금액

(2010. . . 현재) (단위: 백만 원)

구 분	원금	전년도 미이행액	당 회계연도 변제대상				계	비 고	
			0/4분기	0/4분기	0/4분기	0/4분기			
회생 담보권	주채무	원금	27,460				27,460	부동산매각 조건	
		개시 후 이자	725			3,667	4,392		
		소계	28,185			3,667	31,852		
	보증채무	원금					21,645	21,645	
		개시 후 이자							
		소계					21,645	21,645	
	합계	원금	27,460				21,645	49,105	
		개시 후 이자	725				3,667	4,392	
		소계	28,185				25,312	53,497	
회생채권	금융기관	원금							
		개시 후 이자					5,638	5,638	
		소계					5,638	5,638	
	상거래우대		693				16,595	17,288	채권가입류 등
	상거래일반								
	계열법인								
	조세채권								
	합계	원금	693				16,595	17,288	
		개시 후 이자					5,638	5,638	
합계		693				22,233	22,926		
총계	원금	28,153				38,240	66,393		
	개시 후 이자	725				9,305	10,030		
	소계	28,878				47,545	76,423		

- ※ 주: 1. 폐사의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금 및 이자의 변제기일은 매년 12. 31.이고, 단 상거래 채권은 11. 30.임
2. 총변제액 76,423백만 원 중 27,460백만 원은 폐사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폐사가 2010년 말 영업수익금으로 변제할 채권은 48,963백만 원(2010년 미이행금 1,418백만 원 제외 시 47,545백만 원)인데, 현재 시제 및 영업수익금으로 변제 가능하리라고 예상
3. 미변제액 중 부동산 매각 권은 현재 회생담보권자인 ○○은행에서 법원경매를 통하여 매각을 진행 중이며 매각대금은 담보권 변제에 충당하고 미달할 경우 회생담보권 변제조건(8년간 균등분할: 2010년~2017년까지 상환) 적용.
4. 상거래우대채권 미변제액은 채권가입류 또는 채권자 미수령으로 지급보류하고 변제재원을 별도 예치하여 관리 중이며 가입류를 제외한 채권은 청구 시 주 1 회 지급하고 있음.

별지 16.

보증채무현실화 현황 및 종합변제계획표

(2010. . . . 현재) (단위: 백만 원)

구 분	인가 당시 보증채무액 (인가일)	변 제 실 적			변동	채권잔액 (2010. 9. 30.)			현실화된 보증채무의 변제계획					
		00년도 (2008)	00년도 (2009)	소계		계	우발	현실화	00년도 (2011)	00년도 (2012)	00년도 (2013)	00년도 (2014)	00년도 (2015)	
														원금
회 생 담 보 권 보 증 채 무	00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소계												
	00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소계												
	합계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합계												
회 생 채 권 보 증 채 무	00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소계												
	00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소계												
	합계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합계												
총계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총계													

별지 17.

공익채권 현황

(2010. . . . 현재)

(단위: 백만 원)

구분	개시결정일 (또는 인가일) (. . .) 기준	전년도 말	전 분기 말	당 분기 말	개시결정일 (또는 인가일) 대비 증감	전년도 말 대비 증감	전 분기 말 대비 증감	비 고
은행								
보험회사								
금융기관 공익채권 계								
어음채무								
매입채무								
상거래 공익채권 계								
조세								
건강보험료								
제세공과금 공익채권 계								
미지급 급여								
개인 차입금								
기타 공익채권 계								
합계								
보유 매출채권 계								

※ 주: 1. 증감내역과 원인을 분석하여 별지에 설명 요

별지 18.(예시)

어음·수표발행현황표

① 어음수표발행현황

(2010. . . 현재)

(단위: 원)

월별	전 분기말 잔액		당 분기 만기도래분		당 분기 발행분		당 분기 말 잔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월									
2월									
3월									
1/4분기 계									
4월									
5월									
6월									
2/4분기 계									
7월									
8월									
9월									
3/4분기 계									
10월									
11월									
12월									
4/4분기 계									
합계									

② 당 분기 말 잔액의 향후 월별 만기도래액

(2010. . . 현재)

(단위: 원)

월 별	건 수	금 액	비 고
○ 월			
○ 월			
○ 월			
○ 월			
계			

별지 19.

가압류, 가처분, 소송현황

(2010. . . 현재)

(단위: 원)

번호	신청인 (원고)	피신청인 (피고)	제3채무자	사건번호 및 사건명	신청(청구)금액	신청(수소) 법원	비고
1	○○○ 주식회사	○○○	○○○	2010카단1000 채권가압류	40,000,000	00지방법원	*사안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소송의 경우 소송 결과 기재
2	○○○ 주식회사	○○○	-	2010가합000 정리채권확장	50,000,000	00지방법원	〃

별지 20.

접대비 사용현황

(2010. . . 현재) (단위: 원)

월	2009년	2010년	증감대비	비 고
1월	10,514,760	4,444,500	-57.76%	
2월	9,401,900	10,046,920	6.86%	
3월				
1/4분기 소계				
4월				
5월				
6월				
2/4분기 소계				
7월				
8월				
9월				
3/4분기 소계				
10월				
11월				
12월				
4/4분기 소계				
합계				

- ※ 주: 1. 증감내역과 원인을 분석하여 설명
 2. 법인세법(법인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참조)상 손금으로 처리 되는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하고, 실제 지출액이 이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재 할 것

별지 21.

사업현장명세

(2010. . . 현재)

(단위: 원)

구분	현장명	도급액 (사업비)	공사진행현황				사업비 잔 액	비 고
			공사 진행률	기공사 수입금	공 사 미수금	계		
관수주 공 사	현장							
소 계	건							
민간수주 공 사	현장							
소 계	건							
재개발 · 재건축	현장							
소 계	건							
자체사업	현장							
소 계	건							
합 계	건							

별지 22.

자금수지표(총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단위: 원)

기간별	구분	회생계획			실 적			달성률	비 고
		수입	지출	이월잔	수입	지출	이월잔		
1/4 분기	1월								
	2월								
	3월								
	소계								
2/4 분기	4월								
	5월								
	6월								
	소계								
	누계								
3/4 분기	7월								
	8월								
	9월								
	소계								
	누계								
4/4 분기	10월								
	11월								
	12월								
	소계								
합 계									

※ 주: 1. 이월잔은 해당 월 및 분기 말 이월잔을 표시할 것.

별지 22-1.(예시)

회생계획상의 추정 자금수지 내역과 당해 연도의 실제 자금수지 내역 비교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단위: 원)

구 분		회생계획	실적	비 고	
전기 자금의 이월					
자 금 의 원 천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감가상각비				
	퇴직충당금				
	자산배각대금				
	임차보증금회수				
	합계				
자 금 의 유 입	고정자산투자				
	퇴직금 지급				
	임차보증금 반환				
	법인세 등				
	신규차입 이자				
	합 계				
채 무 상 환	회생 담보권	원금			
		이자			
		합계			
	회생 채권	원금			
		이자			
		합계			
	공익채권				
	기타				
	합계				
	차기 이월 자금				

※ 주: 1. 이 비교 내역표는 하나의 예시이며, 회생계획상의 자금수지 내역은 각 회사마다 형식과 내용이 다르므로 각 그 형식과 내용에 맞추어 작성할 것.

[회생실무준칙 제9호]

자회사(子會社)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2006. 4. 1. 시행

1. 이 준칙은 채무자의 자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영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준칙에서 자회사라고 함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해외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가. 채무자가 당해 회사 지분(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상법 제342조의2 참조)
 - 나. 채무자가 당해 회사 지분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 회사의 최대 지분 소유자인 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 다. 채무자가 당해 회사의 지분 소유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지분 소유자와 공동으로 당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3. 제2항 각 호의 지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 채무자의 자회사 및 관리인이 각자 소유하는 지분은 이를 모두 합산하여 채무자의 지분으로 본다.
4. 채무자가 다른 회사의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과 사유를 매년 채무자 현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채무자는 매년 채무자 현황보고를 제출할 때에 아래 사항을 명기한

자회사 현황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회사의 개요

- 설립연월일, 설립자, 채무자연혁, 자회사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본·지점 및 공장소재지
- 주요 업종, 생산품, 주요 판매처
- 임원 현황, 임기 및 직책, 선임 전 채무자와의 관계, 보수(임원 이력서 첨부)
- 직원 현황(총수 및 사업별·직급별 현황)
- 채무자의 경영 관여 정도

나. 자본에 관한 사항

- 현재 납입자본금, 발행주식 수, 주식소유관계(총주식 수 5% 이상 소유하는 주주명단 및 그 소유비율)
- 주권발행 여부, 상장(장외등록)법인 여부, 주당 액면가, 최근 주식 시세(또는 거래가격) 및 지난 1년간 주식시세 변동상황의 개요
- 자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위 각 사항에 대응하는 사항

다.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최근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 기준)

- 최근 5년간의 채권·채무 총액의 추이
- 최근 5년간의 비교 대차대조표
- 자회사의 주요 재산목록

라. 영업에 관한 사항

- 최근 5년간의 요약 비교 손익계산서(매출액 중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부기할 것)
- 직전 회계연도의 상세 손익계산서(각 항목의 매출액에 대한 백분율을 부기함과 아울러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에 따른 각 손익상황을 비교할 것)
- 차기 회계연도 손익계획 및 사업전망

마. 채무자와 자회사와의 관계

- 상호간의 영업 거래현황
- 상호간의 금전대차 기타 채권·채무 내역
- 회생계획 인가 당시와 전년도 및 당년도의 상호간의 채권·채무 총액의 추이
- 상호 보증관계
- 최근 5년간 채무자가 받은 이익배당의 내용
- 자회사 매각계획의 유무 기타 자회사에 대한 향후 운용방침과 그 경과

바. 기타 중요한 사항

6. 채무자는 자회사에 관한 주요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월간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특히 분기보고서에는 자회사의 손익계산서(당해 분기까지의 실적을 누계하여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에 따른 각 손익상황을 비교한 제5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상세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채무자가 주주총회의 결의, 임원의 구성 기타 자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주주 또는 경영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채무자의 보고서를 법원에 전자메일로 송부할 때에는 그에 첨부할 자회사의 보고서도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회생실무준칙 제10호]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2006. 4. 1. 시행

1. 목 적

이 준칙은 법인 채무자(이하 '채무자'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이 근로자 측과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 수준을 결정하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원 칙

채무자의 근로자들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회생 계획상의 추정 임금인상률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로 인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절 차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이하 '관리인' 등 이라고 한다)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 수준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근로자 측과 합의를 할 때에도 합의 예정안을 법원에 사전 보고하고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보고 자료

관리인 등이 위 3항에 따라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 수준 및 합의 예정안을 법원에 보고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과거 실적

- (1) 최근 3년간 회생계획상의 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이익 달성 정도
- (2) 최근 5년간 직급별 임금인상률
- (3) 과거 상여금 지급률(단체협약 내용 및 실제 지급률)
- (4) 인상 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나. 당해 연도 협상 과정 및 관리인 의견

- (1) 노동조합 유무, 노동조합 가입자의 수 및 비율, 상급노동단체, 최근 노사관계의 동향
- (2) 회생계획상 예정된 당해 연도 임금인상률·인건비총액·매출액 대비 인건비율
- (3) 당해 연도 임금인상 요구내용과 그 협상과정
- (4) 당해 연도 적정임금 기타 근로조건 수준 또는 합의 예정안·관리인 등의 의견

다. 인상 후 예상 자료

- (1) 직급별 1인당 연간 실수령 총액 기준, 인상 전 임금·인상 후 임금·인상액·인상률(연간 호봉승급분 포함)
- (2) 인상 전·인상 후 예상 인건비총액(제수당 및 퇴직금충당금 포함)·인건비부담증가율
- (3) 임금인상 후의 당해 연도의 추정 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이익 및 회생계획 달성률
- (4) 인상 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회생실무준칙 제1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2006. 4. 1. 시행

2014. 5. 27. 개정

1. 목 적

이 준칙은 채무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함과 아울러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M&A(주식교환, 유상증자,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양도 등)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M&A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절차 운영의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대상 및 관리인 등의 의무

- 가.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법원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이하 '제3자 매각'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이었던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제3자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 나. 제3자 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제3자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다. 채무자의 대표자이었던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제3자 관리인(이하 ‘관리인 등’이라고 한다)은 회생실무준칙 제12호(M&A 관련 홈페이지의 관리 요령)에 따라 채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3자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의 게시 및 안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라. 관리인 등은 제3자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인수예정자 선정 전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인수희망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특수관계인, 주주, 주주였던자 및 이와 관련 있는 자인지 여부
 - 2) 위 1)에 정한 자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원칙적인 제3자 매각 모델

제3자 매각은 다음과 같은 모델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채무자를 인수할 의향을 가진 자(이하 ‘인수희망자’라고 한다)는 관리인 등에게 구체적인 인수계획을 담은 인수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인 등은 인수희망자의 정당한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나. 관리인 등은 제3자 매각의 초기 단계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중개기관을 중간사로 선정할 수 있고,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계자문사, 법무자문사, 기술자문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다. 제3자 매각은 채무자의 적정한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하고, 유상증자 대금으로는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며, 인수자가 안정적인 범위의 채무자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인수자는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마. 법원은 매각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회생채무의 감면, 기존 주식의 소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는 인수대금이 채무자에게 완납되거나 그 완납이 담보되어야 한다.
- 바. 매각 계약에 기초하여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그 중 50%를 1년간 처분할 수 없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분이 금지된 신주의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되어야 한다.
- 사. 인수대금이 완납되면, 관리인 등은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회생채무의 변제 등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은 관리인 및 임직원의 개입 등 향후 채무자의 운영에 관하여 인수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 아. 관리인 등은 매각 절차 진행상황을 수시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자. 법원은 필요한 사항을 직접 협의하기 위하여 매각 주간사, 인수희망자, 인수자, 인수예정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주간사, 법무자문사, 기술자문사, 인수자, 인수예정자 등의 선정기준

- 가. 제3자 매각 추진 과정에서 주간사, 회계자문사, 법무자문사, 기술자문사 등(이하 '주간사 등'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업체 또는 인수희망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관리인 등이 공개적으로 용역제안서 또는 인수희망서를 제출받아 다음 나호, 다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용역제안서 또는 인수희망서에는 별지 양식의 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나. 주간사 등의 경우에는 우선, 그 업체의 수행·자문 실적, 참여 인원의 능력·경험, 추진 일정 등 제3자 매각 계획의 적정성, 인수희망자 확보 여부,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채무자·회생절차·제3

자 매각에 대한 이해도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평가한 다음, 순위가 우선인 수개 업체 중에서 순서대로 제5항에서 정하는 용역수수료를 기준으로 관리인 등이 수수료를 협의하여 최종 선임한다. 이때 채무자의 실정에 비추어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 주간사 등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최종 용역제안서를 제출받기 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다. 인수희망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유상증자 및 기타 인수대금의 규모, 그 조달 가능성, 인수희망자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인수 후 채무자를 실제로 경영·발전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수희망자를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로 선정한다.
- 라. 주간사 등은 인수희망자가 제2항 라호 1),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주간사 등은 인수희망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제2항 라호 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2) 인수희망자의 인수 목적 또는 인수 시도 과정 등이 회생절차를 남용하는 등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 3) 주간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 바. 주간사 등은 위 다호의 평가기준을 최종 인수희망서를 제출받기 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안내서 등에 “인수희망자에게 구 사주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인수희망자의 경우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 이상의 모든 과정은 법원과의 협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아. 법원은 인수희망자 또는 인수예정자가 위 마호의 1) 내지 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권자협의회,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감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의견 조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주간사의 용역수수료

- 가. 주간사의 용역에 대한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다음 나호, 다호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정하되, 채무자의 업종·내용·규모, 제3자 매각의 성사 가능성, 주간사의 업무의 난이도, 수행능력, 인수희망자 유치 및 인수대금 결정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6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주간사가 제4항 마호 1), 2)에 해당하는 인수희망자를 배제하기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매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나호가 정하는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나. 착수금은 용역계약 당시 채무자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
 - 1) 자산이 250억 원 미만인 경우 ⇒ 2,000만 원
 - 2) 자산이 2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2,500만 원
 - 3) 자산이 50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인 경우 ⇒ 3,000만 원
 - 4) 자산이 1,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경우 ⇒ 4,000만 원
 - 5) 자산이 3,000억 원 이상, 6,000억 원 미만인 경우 ⇒ 5,000만 원
 - 6) 자산이 6,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인 경우 ⇒ 6,000만 원
 - 7) 자산이 1조 원 이상, 1조 5,000억 원 미만인 경우 ⇒ 7,000만 원
 - 8) 자산이 1조 5,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경우 ⇒ 8,000만 원
 - 9) 자산이 2조 원 이상, 3조 원 미만인 경우 ⇒ 9,000만 원
 - 10) 자산이 3조 원 이상인 경우 ⇒ 1억 원

다. 성공보수는 유상증자대금의 전액 및 사채(社債, 전환사채 포함) 인수대금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이하 '유입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되, 성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아래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고, 당해 제3자 매각만으로는 회생절차를 종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기준 금액에서 3분의 1을 감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착수금 상당액은 지급할 성공보수에서 공제한다.

- 1) 유입자금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유입자금의 3%에 해당되는 금액
- 2) 유입자금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유입자금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에 1억 5,000만 원을 가산한 금액
- 3) 유입자금이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유입자금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에 2억 4,000만 원을 가산한 금액
- 4) 유입자금이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유입자금의 0.9%에 해당되는 금액에 3억 9,000만 원을 가산한 금액
- 5) 유입자금이 1,000억 원 이상, 2,0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유입자금의 0.4%에 해당되는 금액에 8억 9,000만 원을 가산한 금액
- 6) 유입자금이 2,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유입자금의 0.2%에 해당되는 금액에 12억 9,000만 원을 가산한 금액
- 7) 유입자금이 5,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인 경우 ⇒ 유입자금의 0.09%에 해당되는 금액에 18억 4,000만 원을 가산한 금액
- 8) 유입자금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 유입자금의 0.04%에 해당되는 금액에 23억 4,000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그 상한은 30억 원으로 한다.

6. 제3자 매각을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 대한 처우

가. 법원은 제3자 매각을 통하여 회생절차를 종결시키는 데에 크게 공헌한 관리인 등에 대하여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다른 채무자의

제3자 관리인으로 재선임할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나. 제3자 매각을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게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리인 등의 제3자 매각에 대한 적극성·기여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위 특별보상금은 3억 원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의 업종·내용·규모, 제3자 매각의 난이도, 관리인 등의 제3자 매각에 대한 적극성·기여도, 인수자의 상황, 인수조건, 회생절차 종결 여부, 잔여 임기 동안의 관리인 등의 보수 총액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 라. 채무자의 임직원이 자신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제3자 매각의 성공에 상당한 공헌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다호의 특별보상금을 관리인 등과 그 임직원에게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되도록 할 수 있다.

7. 회생절차 개시 전에 진행된 제3자 매각 절차의 승인에 관한 특칙

가. 회생절차에서의 승인

- 1) 관리인 등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추진된 제3자 매각절차를 회생절차에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 의견 등을 듣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제3자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 등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추진된 제3자 매각절차에서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자가 제2항 라호 1),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회생절차 개시 전에 추진된 제3자 매각절차에서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가 선정된 경우, 법원은 그 절차의 공정성 및 제시된 인수내용의 적정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 등에게 당해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가 제시한 인수내용을 비밀에 부친 채 조기에 새로운 인수예정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회생절차 개시 전에 추진된 제3자 매각절차에서 인수자 또는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새로운 인수예정자 선정절차에 다시 인수희망자로 참가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새로운 인수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4항 마호의 1) 내지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4) 위 2)의 새로운 인수예정자 선정절차에서 인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절차에서 제시된 인수내용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선정된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가 제시한 인수내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과 동등한 경우에는, 관리인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인수예정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선정된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할 수 있다. 관리인 등은 최종 인수예정자를 확정하면서 차순위 인수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순위 인수예정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 5) 관리인 등은 확정된 인수예정자와 사이에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예정자가 제시한 인수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 1)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진 제3자 매각계약의 내용에 기초하여 제3자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하거나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의 전달까지 이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 2) 위 1)의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1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4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조사기간 및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 3) 법원은 위 1)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이를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4) 채무자는 관리인 등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이 있은 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진 제3자 매각계약의 내용에 기초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할 수 있다.
 - 5) 관리인 등은 가호 1)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선정된 인수자의 지위가 그대로 인정되거나 가호 5)에 의하여 제3자 매각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의 내용에 기초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6) 관리인 등은 위 1)의 사전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철회할 수 있다.
 - 7) 법원은 여러 개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각 회생계획안의 장점을 살려 병합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제3자 매각을 추진하고 회생절차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제3자 매각 절차의 계속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다.
- 라.** 회생절차 개시 전에 공정한 제3자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매각 주관사 등에 의하여 평가된 채무자에 관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것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회생계획 인가 전 제3자 매각에 관한 특칙

가. 제3자 매각절차의 추진

- 1) 관리인 등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제3자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추진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허가함에 있어 채권자협의회 의견의 청취를 하여야 한다. 관리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각절차에 의한 인수예정자의 선정을 관리인 등의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 2) 매각 주간사의 선정
 - 가) 관리인 등은 제7항 가호 1)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추진된 제3자 매각절차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제4항 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선임된 매각 주간사를 회생계획 인가 전 제3자 매각절차의 매각 주간사로 인정할 수 있다.
 - 나) 관리인 등은 제4항 나호의 요건에 부합하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는 때에는 입찰절차 없이 매각 주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 3)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가) 관리인 등은 제3자 매각추진을 위한 공고를 하기 전에 적정한 인수내용으로 인수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제7항 가호 1)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추진된 제3자 매각절차에서 인수희망 의사표시를 한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내용을 비밀에 부친 채 그보다 더 나은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 조기에 인수예정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 등은 이 경우에도 제2항 라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를 허가함에 있어 채권자협의회 의견의 청취를 하여야 한다.
 - 나) 위 가)의 인수희망자는 같은 규정의 인수예정자 선정절차에서 인수희망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새로운 인수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관리인 등은 최종 인수예정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차순위 인수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순위 인수예정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4) 관리인 등은 확정된 인수예정자와 사이에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예정자가 제시한 인수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1) 관리인 등은 가호 4)에 의하여 제3자 매각계약이 성립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에 기초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여러 개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각 회생계획안의 장점을 살려 병합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9. 다른 M&A 절차에의 준용 및 영업양도에 관한 특칙

가.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제3자 매각 이외의 다른 M&A 절차에도 준용한다.

나.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영업양도

1) 관리인 등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추진된 영업 또는 사업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절차를 회생절차에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62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관리인 등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에 법 제62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를 추진할 수 있다.

〈부칙 2014. 5. 27.〉

1. 이 준칙은 2014. 5. 27.부터 시행한다.

[양식]

각 서

본인은 채무자 ○○○○ 주식회사의 제3자 매각을 위한 용역제안서(또는 인수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만약 본인이 최종 중간사(또는 회계자문사, 법무자문사, 기술자문사, 인수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 ○.

제출인:

(인)

[회생실무준칙 제12호]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

2006. 4. 1. 시행

2010. 1. 27. 개정

1. 목 적

이 준칙은 인터넷에 개설되는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 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신규자본 유치 및 M&A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회생실무준칙 제11호)이 적용되어 M&A가 추진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준칙을 적용한다. 다만, 회생실무준칙 제11호 제7항 가호 1)에 따라 제3자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삭제]

다. 다만 가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이하 ‘관리인 등’이라고 한다)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 제5항 및 제6항 나호·다호를 적용한다

3. 공 시

가. 관리인 등은 인터넷에 당해 채무자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적절한 난에 다음의 각 호의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① 채무자의 개요(명칭, 업종, 개시결정일, 계획인가일, 종업원 수, 본사 소재지, 공장현황 등)
- ② 자본과 관련된 사항(상장 여부, 주식 수, 액면가, 납입자본금, 수

권자본금, 출자전환 예정 내역)

- ③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요 자산, 특허권 등
- ④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관한 사항(채권 금액, 회생계획상 변제계획, 변제내역)
- ⑤ 채권자협의회 또는 채권단
- ⑥ M&A 접촉 안내(M&A 유인 홍보문, 담당자 부서 및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나. 가호의 자료의 자료를 공시함에는 그 기준일자(예: 2008. 10. 1. 현재)를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이미 M&A가 완료되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호의 자료 중 일부의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갱 신

- 가. 관리인 등은 각 분기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갱신하여야 한다.
- 나. 관리인 등은 분기별 보고서의 M&A 항목에 인터넷에 공시된 M&A 관련 사항의 점검 결과와 갱신 여부 및 갱신 내용을 명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관 리

-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 중 수석부장판사가 지정한 법관(이하 '수명법관'이라 한다)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회생회사 M&A 안내(이하 'M&A 안내'라 한다)"란에 대하여 사용자 권한이 주어진 파산과장을 통하여 게재사항을 관리한다.
- 나. M&A 안내에는 다음의 사항을 게재하고, 채무자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M&A 안내를 통해 채무자의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취득 가능한 정보: 업종, 상장 여부, 납입 자본금, 주주의 구성(대표주주),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채무자 연락처
- ② 조사보고서 제출 시 취득 가능한 정보: 조사보고서의 수정 후 재무제표 중 유동자산(당좌자산 총액, 재고자산 총액),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총액, 유형자산 총액, 무형자산 총액, 기타 비유동자산 총액), 유동부채총액, 비유동부채총액, 자본금, 결손금 총액
- ③ 회생계획 인가 시 취득 가능한 정보: 회생계획 인가일, 변경 전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 자본금 변경 내역
- ④ 기타: 관리인이 공개를 원하고, 주심법관이 허가한 사항

6. 시정조치

- 가. 주심법관은 소관 각 채무자 홈페이지의 M&A 관련 항목이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해당 채무자의 평정기일마다 이를 확인하고,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등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나. 주심법관은 소관 채무자 중 제2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채무자가 발생하거나, 제5항 나호의 규정에 의한 M&A 안내 기재사항의 발생·변동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수명법관과 파산과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사항을 기재 또는 갱신하게 한다.
- 다. 주심법관은 이 준칙이 적용되는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수명법관과 파산과장에게 통보하여 기재사항을 삭제하게 한다.

7. 보 고

관리인 등은 M&A 안내를 통하여 협의 제의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조치 및 의견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0. 1. 27.〉

1. 이 준칙은 2010. 1. 27.부터 시행한다.
2. 이 준칙 시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준칙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의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료를 공시하도록 하고, 제5항 나호에서 정한 사항을 M&A 안내에 게재한다.

[회생실무준칙 제14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2006. 4. 1. 시행

1. 목 적

이 준칙은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기종결이 적합한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촉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여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한다.

3. 수행가능성의 판단 시 고려 요소

가. 긍정적인 요소

-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 수준을 대폭 초과 달성하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상당한 정도로 초과 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경상이익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나. 부정적인 요소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익채권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노사쟁의, 기타 채무자 내부의 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간섭 등이 계속되어 채무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4. 조기종결의 운영 기준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제3항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위 가.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중 제3항 가.호의 요소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면서 제3항 나.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위 가.호 및 나.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회생계획 수행실적에 비추어 제3항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

- 가.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는 경우에 향후 채무자의 회생계획의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인에게 주요 채권자들의 협의체(이하 '채권자협의체'라고 한다)가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후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 나. (1) 채권자협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협회의 구성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그 구성원으로 정할 수 있다.
- 다. 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위 가.호의 권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협의체와 사이에 채권자협의체 내부의 구성과 운영 및 활동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라. 관리인은 회생계획에 위 다.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인집회의 결의 또는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채권자협의체의 활동 범위는 채무자에게 월간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협의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 및 중요 자산의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계획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 바. 채권자협의체는 채무자에게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판단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간섭하거나 시설 투자 및 인력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지출의 통제를 하는 등 채무자의 사업활동 및 경영권의 본질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생실무준칙 제15호]

간이조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준칙

2015. 5. 22. 시행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3조의7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간이조사위원(이하 '간이조사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조사위원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간이조사위원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간이조사위원 후보자 명단(이하 '후보자 명단'이라 한다)에 등재될 후보자의 선정
2. 후보자 명단에서의 삭제
3. 그 밖에 후보자 명단의 작성,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관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부장관사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관사
3.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⑤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명단의 작성) ① 후보자 명단에 등재될 수 있는 자는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 내지 7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마다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3인 이상을 후보자 명단 선발 심사위원으로 지정한다.
④ 심사위원은 후보자 명단에 등재되기를 지원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서류심사나 면접절차 또는 위 두 절차 모두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심의를 거쳐 간이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후보자 명단에 등재한다.

제4조(간이조사위원 선임 원칙) ① 법원은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전원에게 균등한 선임 기회가 부여되도록 한다.
② 법원은 후보자가 수행하고 있는 간이조사위원 업무의 과중도, 후보자와 해당 간이회생사건과의 이해관계 유무, 사건의 난이도,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성실도, 경험, 법원의 사건 관리·감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과 달리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후보자 명단에서의 삭제 및 간이조사위원의 변경)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언제든지 해당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직무를 위반하거나 간이회생절차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후보자가 간이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하여 간이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후보자가 간이조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후보자가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제3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명단이 새로 작성되면서 기존 후보자가 새로운 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원은 간이회생절차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위, 간이회생절차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후보자가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사건의 간이조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2015. 5. 22.〉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5. 5. 22.부터 시행한다.

[회생실무준칙 제16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에 관한 준칙

2015. 8. 1. 시행

1. 목 적

이 준칙은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8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통지

관리인이 법 제9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 제9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항(이하 ‘주요사항’이라 한다)의 요지를 통지함에 있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통지의 방법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주요사항 요지를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와 방법을 명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통지의 시기

관리인은 통지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상대방에게 통상 도달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1) 법원이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다만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전에 그 연장에 관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법원이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또는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전까지

다. 통지절차 착수의 사전보고

관리인은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통지내용, 예상되는 통지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통지의 상대방

- 1) 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채무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주요사항의 요지를 통지한다.
- 2)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에게 임의로 통지를 생략하거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통지의 내용

- 1) 관리인은 별지 1 '주요사항 요지 통지서 표지'에 법 제9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항의 요지를 기재한 보고서 및 법 제92조 제1항이 정한 관리인보고서 또는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요약본을 첨부하여 통지한다.
-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는 채무자의 주요 사업내용,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자산·부채,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산정한 경우에 한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시·부인 총괄내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사업현황 및 전망, M&A·영업양도 또는 주요한 자

산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내용 등을 통지한다.

- 4) 관리인은 주요사항 요지를 통지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바. 사후 보고

- 1) 관리인은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2 ‘주요사항 요지 통지 결과보고서’ 양식에 의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되, 늦어도 통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1)항의 보고는 통지절차를 이행한 기간, 통지한 내용, 통지현황, 통지하지 못한 상대방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통지한 내용이 2. 다항에 따른 사전 보고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만을 보고할 수 있다.

3. 관계인설명회

관리인이 법 제9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계인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설명회 개최의 시기와 장소

- 1)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시기까지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1회 또는 수회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 관리인이 설명회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관리인은 2)항의 허가를 얻은 후 별지 3 ‘관계인설명회 통지문’ 양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설명회의 일시와 장소, 설명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회생채권자 등 및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자.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되, 통지는 늦어도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4) 3)항의 통지를 발송한 후 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의 지정, 회생절차 폐지 기타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각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5) 3)항, 4)항의 통지는 서면·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의 발송, 모사전송, 구두 또는 유선에 의한 통지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홈페이지 게시, 중앙일간지 광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설명회의 진행

- 1) 설명회는 관리인이 주관한다. 다만 설명회를 동시에 여러 곳에서 개최하거나, 관리인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관리인을 대신하여 설명회를 주관할 자를 정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에게 2.마항이 정한 사항의 요지를 설명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 3) 회생채권자 등 및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대리인은 설명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 및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대리인이 아닌 자의 설명회 출석을 금지할 수 있다.
- 4) 관리인은 설명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영상녹화, 속기록의 작성·보존 등 설명회 종료 후에 설명회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후 보고

- 1) 관리인은 설명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4 ‘관계인설명회 개최 결과보고서’ 양식에 의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1)항의 보고는 설명회를 개최한 일시·장소, 설명회 일시·장소의 사전 통지현황 및 통지하지 못한 회생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 현황과 사유, 설명회 출석현황, 설명한 내용, 진행 순서에 따른 설명회 진행 경과, 회생채권자 등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부칙, 2015. 8. 1.〉

1. 이 준칙은 2015. 8. 1.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주요사항 요지 통지서 표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회합○○ 회생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

채무자 ○○ 주식회사 관리인 홍길동
서울 ○○구 ○○로 100

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회합○○ 회생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 ○○.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 고, 홍길동이 채무자의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채 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 한 사항,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조사 확정재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인보고서의 요지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 위 각 사항에 관한 의견 이 있으시면 직접 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1. 관리인보고서 1부.
- 2.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요약 1부. 끝.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채무자 ○○ 주식회사의 담당자 ○○○(전화 ○○○-○○○-○○○○, 팩스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 주요사항 요지 통지 결과보고서】

주심판사	재판장

○○ 주식회사

우 140-170 / 서울 ○○구 ○○로 ○○○ / 담당 김감동 / 전화 (02)1234-5678 / 팩스 (02)2234-5678

문서번호: ○○회생 제20○○-○○호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나)
제 목: 주요사항 요지 통지 결과보고

관리위원

1. 폐사는 20○○. ○.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관리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요사항 요지 통지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통지기간: 2015. ○○. ○○. ~ 2015. ○○. ○○.
2. 통지내용: 2015. ○○. ○○.자 법원 보고내용과 같음²⁾
3. 통지현황: 별첨 통지현황과 같음³⁾
4. 통지불이행 현황: 별첨 통지 불이행현황과 같음⁴⁾
5. 기타 통지 관련 특이사항: 별첨 기타 보고사항과 같음. 끝.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홍길동

C R O

- 2) 법원에 보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 달라진 내용과 사유를 별첨으로 기재.
- 3) 통지 총괄현황 및 개별현황을 기재. 총괄현황은 통지한 채권자 수, 주주 수를 통지 방법(우편송부, 이메일송부 등) 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개별현황은 통지 방법별 통지 상대방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통지 도달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도 기재.
- 4) 통지를 이행하지 못한 상대방과 사유를 기재.

【별지 3 관계인설명회 통지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회합○○ 회생

관계인설명회 안내장

이해관계인 귀하

채무자 ○○ 주식회사 관리인 홍길동
서울 ○○구 ○○로 ○○○

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회합○○ 회생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 ○○.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홍길동이 채무자의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 주식회사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지를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보고하기 위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20○○년 ○○월 ○○일 ○○시 ○○분
2. 장소: ○○회관 대강당

(별지 안내도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본인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채무자 ○○ 주식회사의 담당자 ○○○(전화 ○○○-○○○-○○○○, 팩스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4 관계인설명회 개최 결과보고서】

주심판사	재판장

○○ 주식회사

우 140-170 / 서울 ○○구 ○○로 ○○○ / 담당 김갑동 / 전화 (02)1234-5678 / 팩스 (02)2234-5678

문서번호: ○○회생 제20○○-○○호
시행일자: 20○○. ○○. ○○.
사 건: 20○○회합○○ 회생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파산부(나)
제 목: 관계인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관리위원

1. 폐사는 20○○. ○.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관리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다 음 ◇

1. 일시: 20○○년 ○○월 ○○일 ○○시 ○○분
2. 장소: ○○회관 대강당
3. 설명회 통지 현황: 별첨 설명회 통지현황과 같음⁵⁾
4. 설명회 출석 현황: 별첨 설명회 출석현황과 같음⁶⁾
5. 설명회 진행내용
가. 관리인의 설명내용
나. 출석자의 발언내용
6. 기타 필요사항. 끝.

○○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홍길동

C R O

5) 통지 상대방별 통지현황, 통지하지 못한 상대방 현황 및 그 사유를 기재.
6) 관리인, CRO, 조사위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출석현황(대리인 포함)을 기재.

관리인 직무 편람

2016년 1월 25일 인 쇄
2016년 1월 27일 발 행

비 매 품

발 행 법 원 도 서 관
인 쇄 성 문 인 쇄 사

02) 2272-7553

